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2018. 11.

■ 발간사

인구 고령화를 비롯하여 각종 사고, 약물남용 등 다양한 장애발생 위험요인의 증가에 의해서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기 장애 인구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장애의 개념이 의료적 개념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었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인식 변화와 함께 장애유형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과는 달리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장애인연금제도’(2011), ‘장애인활동지원법’(20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 ‘발달장애인지원법’(2014), ‘평생교육법’ 개정(2016)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기반조성 및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조사연구는 단순 복지를 넘어 학습참여에 대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주 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2016)을 계기로 제주지역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여건과 운영에 따른 현황 파악을 실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제주 지역사회가 진정한 포용사회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현장과 밀접한 실천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기반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조사연구를 통하여 제주지역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의 구체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제주지역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책임공유와 역할분담 및 협력거버넌스 구축에 유용한 정책판단 기준 및 실무지침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홍정순 박사를 비롯하여 자문위원님, 그리고 조사 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지역의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시설) 관계자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1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요 약】

제1장 서론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평생교육의 소외계층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진흥시켜 나가기 위해 「특수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조항을 조정·폐지하고 「평생교육법」 개정(2016. 5)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과 함께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의 현황을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기 위한 기초 조사·분석을 수행하였음

2. 조사 설계

○ 초점집단면담(FGI) 실시

- 양적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지역 15개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총 5차에 걸쳐 실무자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였음. 주요내용은 ① 장애인 기관(시설)에서의 평생교육 운영 여건,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반응 및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종류, ③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애로점, ④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및 발전방안으로 나누어 질의함

○ 설문조사 실시

- 개인의 경우, ①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참여 경험, ②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주요현황, ③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문항을 구성함
- 기관의 경우, ① 기관(시설) 일반현황, ② 평생교육 세부 프로그램 운영 현황, ③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문항을 구성함

조사 대상

- ▷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중 9개 장애유형의 1~4급 이내 해당자 15,966명 대상자 중 450명 (등록장애인 15개 장애유형 35,104명 대상 중 할당)
- ▷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103개) 중 요양원 및 공동가정생활 제외 73개

유효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장애인 469명 ▷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 61개 기관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장애인 개인 실태조사는 장애 유형별, 등급별 비례 할당 추출 ▷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실태는 전수조사
조사 방법	▷ 응답자 본인 또는 장애인 조력자, 해당기관별 방문조사
실시 일자	▷ 2018년 7월 ~ 10월

제2장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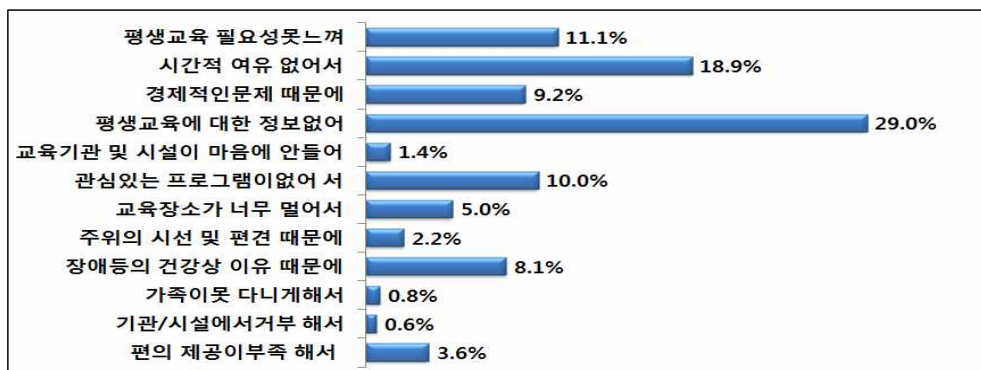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연구자들이 통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함
-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까지 포괄·확대해서 진행시켜 나가고자 함
- 제주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35,104명으로, 이 가운데 만 18세 이상 성인은 전체 96.4%인 33,830명임. 이 가운데 남성은 54.4%로서 여성보다 45.6%보다 8.8%p 높음(2017년 12월 기준)
 - 인구분포별로는 제주시는 23,190명(68.6%), 서귀포시는 10,640명(31.4%)이며, 4급~6급 장애등급이 61.6%에 해당함
 - 연령대로 65세 이상 장애인은 제주시가 10,519명(45.4%), 서귀포시가 5,482명(51.5%)으로 제주지역 전체 성인 등록 장애인구(35,104명) 중 16,001명(45.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제주지역 장애인 주요 교육기관은 3개교로 대부분 종합학교 체계로 운영 중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은 없음. 또한 만 5세~19세 장애인(1,477명) 중 전문 교육기관(정원 453명)을 이용하는 경우는 30.7%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20대 이후에는 사실상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이면서 계획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거의 없는 형편이며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운영 프로그램 파악 등은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현재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음
 - 전체 국민의 1/3 이상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0.02%, 발달장애인은 0.01%정도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매우 소수로 추정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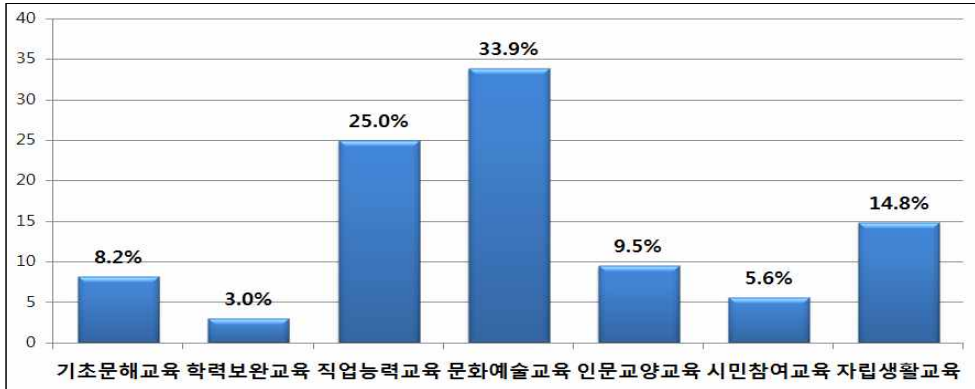
제3장 조사결과(1) : 개인실태 현황

1.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참여경험

- 제주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평생학습)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83.2%인 대다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평생교육(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경험(42.0%)이 미참여 경험(58.0%)보다 낮게 나타났음
 -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①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9.0%),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8.9%), ③ 평생교육 필요성 못 느껴서(11.1%)의 순임. 또한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① 긍정적(56.1%), ② 부정적(16.3%), ③ 잘 모르겠다(27.6%)임
 -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없지만 향후 평생학습 참여의향 프로그램으로는 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33.9%), ② 직업능력 교육(25.0%), ③ 자립생활 교육(14.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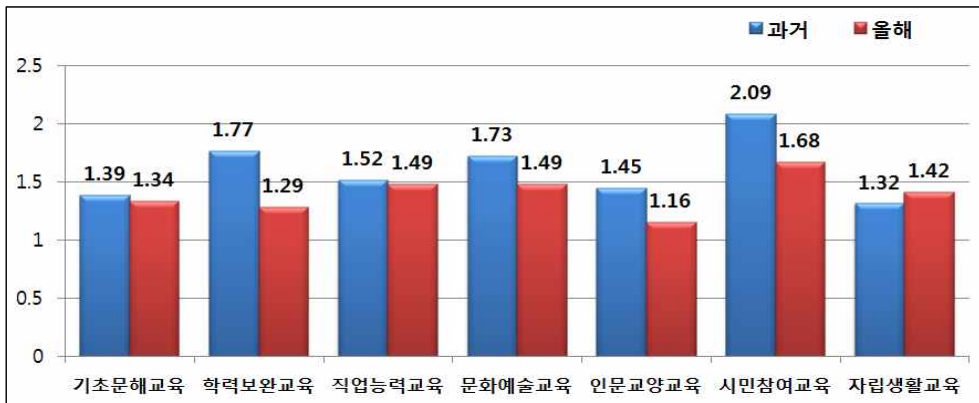
[그림 1]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그림 2]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프로그램 영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주요현황

- 최근 2년간(2016년~2017년) 참여 프로그램 수와 2018년 참여 프로그램 수는
 - ① 기초문해 교육(2년간 1.39회 / 올 해 1.34회), ② 학력보완 교육(2년간 1.77회) / 올 해 1.29회) 약간 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다른 영역은 전반적으로 과거와 올 해(평균 1.5건 이내)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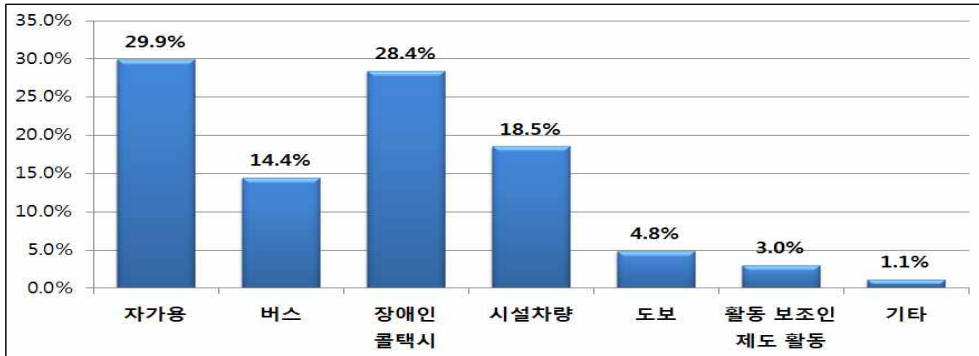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2년간(2016~2017) 및 2018년도의 참여 프로그램 수

- 프로그램 영역별 참여에 따른 주요 시간대는 주로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음. 학습비는 학력보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료로 참여하고 있어 개인별 경제적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여짐. 또한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경험이 있는 학습기관으로는 ① 장애인 복지관(24.9%), ② 기타 기관/시설(19.2%), ③ 학교형태(14.2%) 순으로 이동시간은 ①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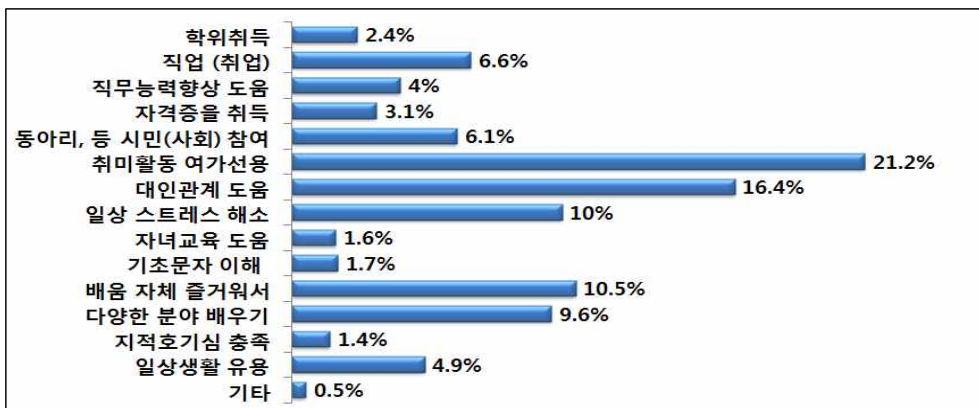
이내(35.3%), ② 1시간 미만(32.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이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① 자가용(29.9%), ② 장애인 콜택시(28.4%), ③ 시설차량(18.5%) 순임

- 향후 평생학습을 위해 가장 이용하고 싶은 기관으로도 ① 장애인복지관(27.7%), ②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20.3%), ③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16.6%), ④ 장애인 직업훈련기관(10.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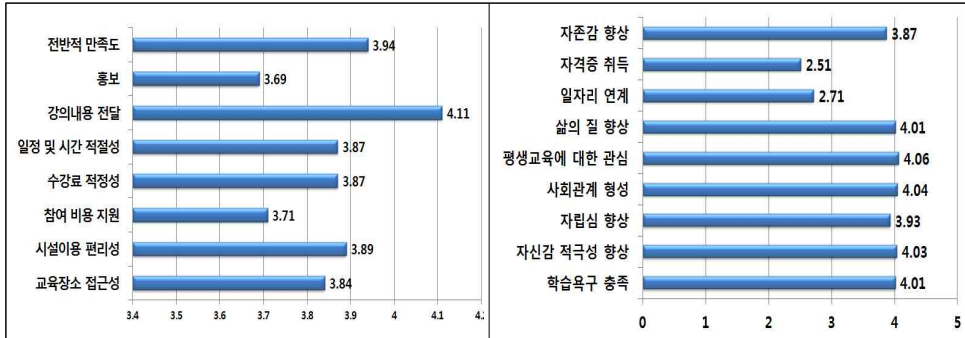
[그림 4]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수단

- 평생학습 관련정보 취득경로로는 ① 장애인 복지시설기관(52.3%), ②지인의 소개(20.8%), ③ 지방자치단체(시청, 동사무소) 7.7% 순으로 인터넷(6.6%) 및 지역신문 및 방송(3.1%)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음
-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목적으로는 ①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21.2%)이 가장 많았고, ②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6.4%), ③ 배움 그 자체가 즐거워서(10.5%)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목적(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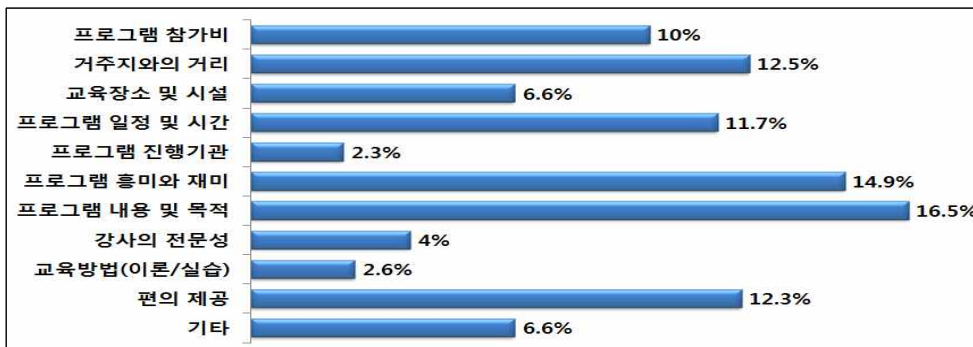
- 참여시 주요 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3.94점)는 높은 편임. 이와 더불어 학습 참여에 따른 만족도는 ① 학습욕구 충족 정도(평균 4.01점), ② 자신감과 적극성 향상 만족정도(평균 4.03점) 등은 높은 편이지만 ‘일자리와 연계’(평균 2.71점)와 ‘자격증 취득 정도’(평균 2.51점)는 낮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6] 학습환경 및 학습 후 향상 만족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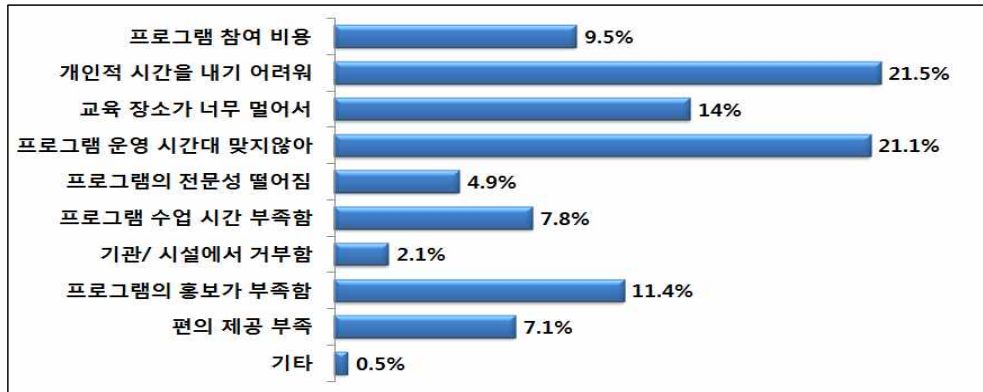
3.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본인(장애인)에게 도움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 결과로는 ‘동의하는 의견’(26.2%)과 ‘동의하지 않는 의견’(26.8%)이 유사함.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긍정성(평균 3.00점, 5점 척도) 측면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① 프로그램 내용 및 목적(16.5%), ② 프로그램 흥미와 재미(14.9%), ③ 거주지와의 거리(12.5%), ④ 편의 제공(12.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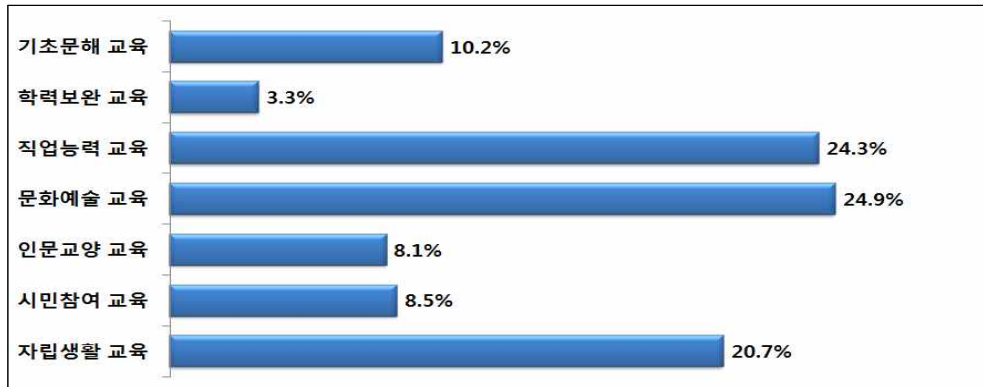
[그림 7]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요인(복수응답)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건강, 직업, 외부환경 등, 21.5%), ②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21.1%), ③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14.0%), ④ 프로그램의 홍보가 부족함(11.4%)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운 요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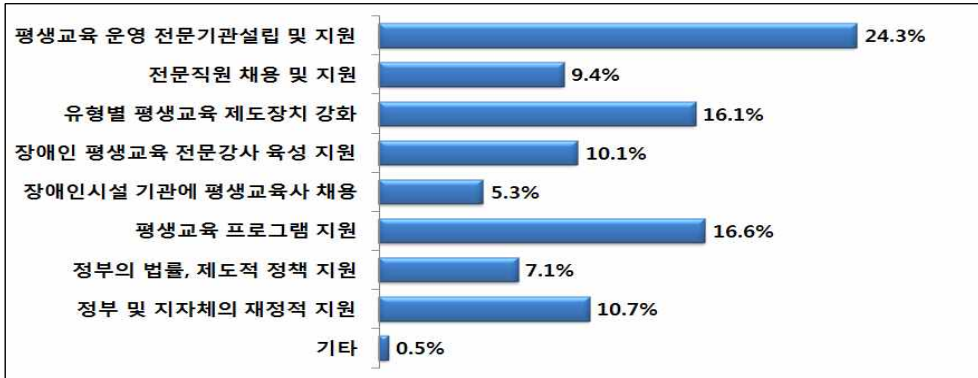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는 ① 문화예술 교육(24.9%), ② 직업능력교육(24.3%), ③ 자립생활교육(20.7%), ④ 기초 문해 교육(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가장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복수응답)

-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은 ①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전문기관설립(지정) 및 지원(24.3%),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16.6%), ③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인 평생교육 제도장치 강화(16.1%)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83.5%에 해당하는 높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의 주요 역할은 ①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26.9%), ②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2.7%), ③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20.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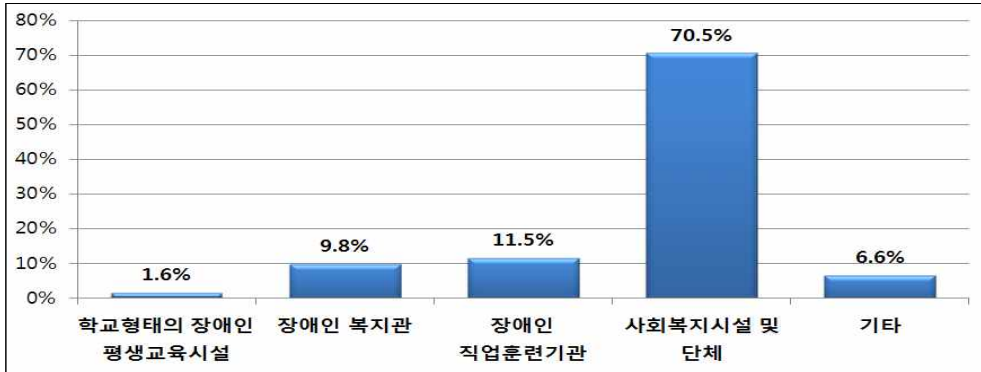


[그림 1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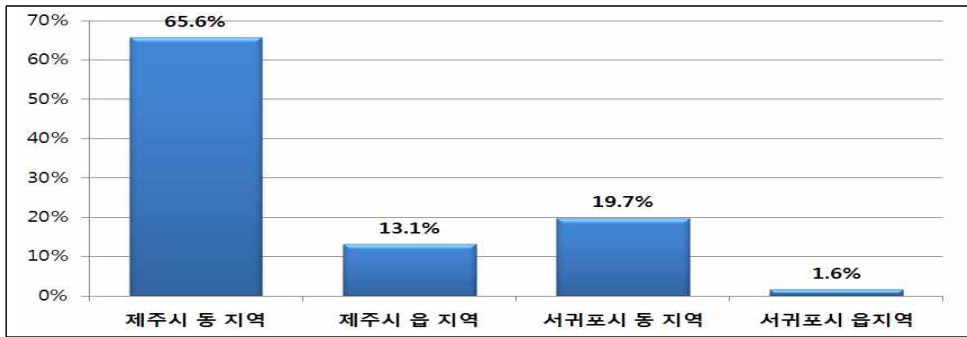
제4장 조사결과(2) : 기관실태 현황

1. 기관 일반현황

- 조사에 응한 61개 기관(단체, 협회 등)의 기관유형을 조사한 결과, ①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43개, 70.5%), ② 장애인 직업훈련기관(7개, 11.5%), ③ 장애인복지관(6개, 9.8%), ④ 기타(4개, 6.6%) 순으로 나타남
- 조사에 응한 61개 기관(단체, 협회 등)의 소재지를 보면, ① 제주도 동 지역(40개, 65.6%), ② 서귀포시 동지역(12개, 19.7%), ③ 제주도 읍 지역(8개, 13.1%), ④ 서귀포시 읍 지역(1개, (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설립주체를 보면 ① 법인(54개, 88.5%), ② 개인(4개, 6.6%), ③ 국가/지자체(3개, 4.9%)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평생교육 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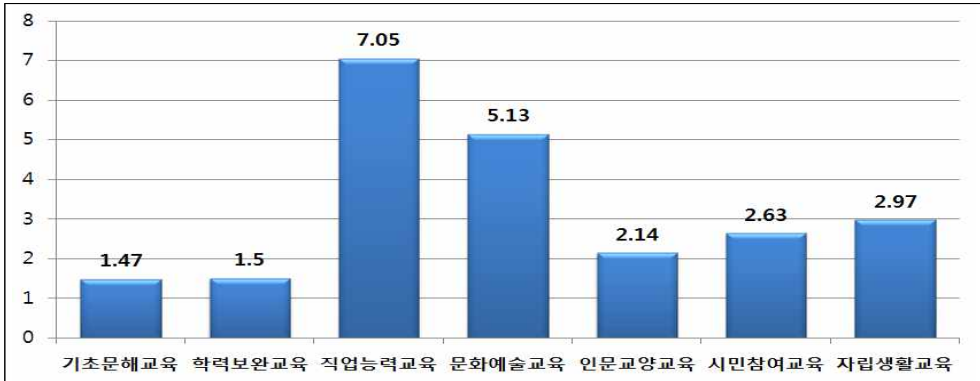
[그림 12] 평생교육 기관 소재지

- 조사에 응한 기관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직원은 평균 14명으로 최소 1명, 최대 60명이 근무하고 있었음. 또한 교(강)사는 평균 9.5명으로 근무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평균 3.4명이고, '1년 이상'인 경우는 평균 8.2명이었음.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자는 평균 1.5명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에 응한 기관의 시설 현황 중 강의실은 평균 2.08개로 최소 1개, 최대 8개실인 것으로 조사됨. 수용규모는 평균 48.4명이었으며 최대 400명인 경우도 있었음. 기타 시설로는 주방, 음악실, 운동실 등이었음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① 기초문해 교육(평균 1.47회), ② 학력보완 교육(평균 1.50회), ③ 직업능력 교육(평균 7.05회), ④ 문화예술 교육(평균

5.13회), ⑤ 인문교양 교육(평균 2.14회), ⑥ 시민참여 교육(평균 2.63회), ⑦ 자립생활 교육(평균 2.97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과거 2년 간 운영한 프로그램 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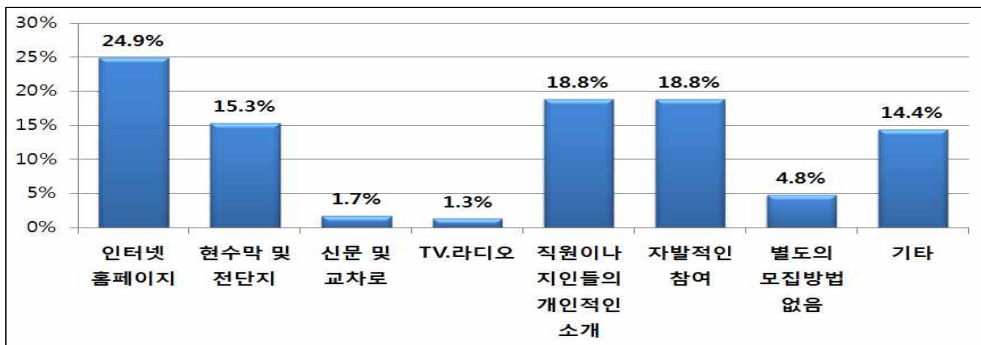


[그림 13] 기관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프로그램 운영시간대는 ① 기초문해 교육(평일 오전, 47.1%), ② 학력보완 교육(평일 오전/오후, 66.7%), ③ 직업능력 교육(평일 오전/오후, 66.7%), ④ 문화예술 교육(평일 오후, 42.1%), ⑤ 인문교양 교육(평일 오전/오후, 33.3%), ⑥ 시민참여 교육(평일 오후, 33.3%), ⑦ 자립생활 교육(평일 오전/오후, 46.4%)로 조사되었음
- 프로그램의 학습비 부담은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었음. 또한 1인당 학습비를 부담할 경우 비용은 ① 기초문해 교육은 평균 6만원, ② 직업능력 교육은 평균 6천원, ③ 문화예술 교육은 평균 2만원, ④ 인문교양 교육은 평균 1만원, ⑤ 시민참여 교육은 평균 2.5만원, ⑥ 자립생활 교육은 평균 8만원으로 응답하였음
- 프로그램의 수강 총인원은 ① 기초문해 교육(평균 20.7명), ② 학력보완 교육(평균 12.3명), ③ 직업능력 교육(평균 28.8명), ④ 문화예술 교육(평균 57.4명), ⑤ 인문교양 교육(평균 65.8명), ⑥ 시민참여 교육(평균 58.9명), ⑦ 자립생활 교육(평균 41.2명)이 참여하였음
-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는 ① 기초문해 교육은 ‘지적장애’(31.6%), ② 학력보완 교육은 ‘언어장애’(37.5%), ③ 직업능력 교육은 ‘지적장애’(25.5%)와 ‘자폐성장애’(21.6%), ④ 문화예술 교육은 ‘지적장애’(26.4%), ⑤ 인문교양 교육은 ‘지적장애’(21.4%), ⑥ 시민참여 교육은 ‘지적장애’(22.0%), ⑦ 자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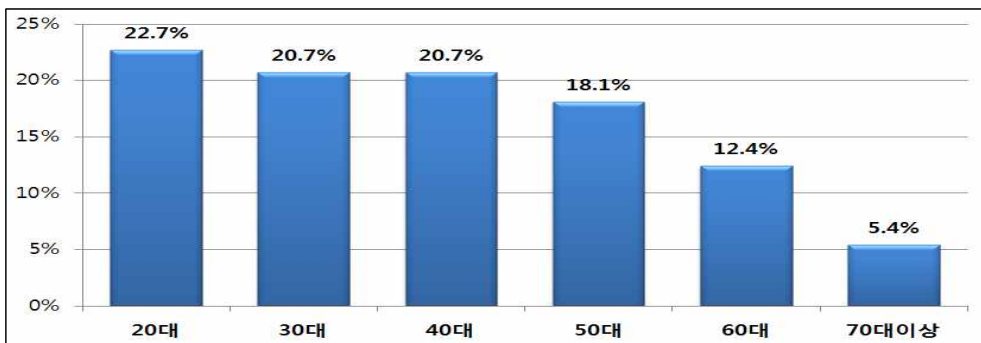
생활 교육은 ‘지적장애’(34.3%)와 ‘자폐성장애’(23.9%)가 가장 많았음

-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① 기초문해 교육은 1년(72.2%), ② 학력보완 교육은 1년(60.0%), ③ 직업능력 교육은 1년(36.0%), ④ 문화예술 교육은 1년(53.3%), ⑤ 인문교양 교육은 1년(44.0%), ⑥ 시민참여 교육은 1개월(33.3%), 1년 이상(40.0%)로, ⑦ 자립생활 교육은 1년이 50.9%로 가장 많았음
- 교육생 모집을 위해서는 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24.9%), ② 직원이나 지인들의 개인적인 소개(18.8%), ③ 자발적인 참여(18.8%)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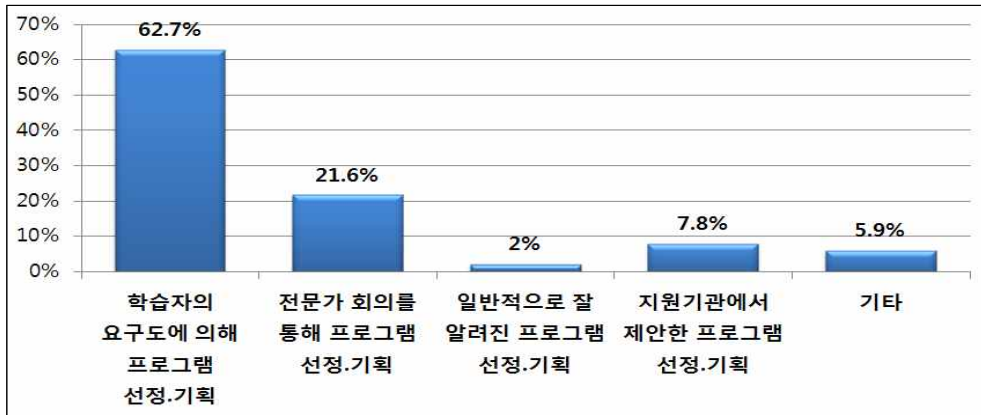
[그림 14] 교육생 모집 홍보매체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모집 주요 대상자로는 ① 장애성인(88.7%), ② 누구나, 일반인과 장애인(5.7%), ③ 장애아동(3.8%), ④ 일반성인(1.9%) 순으로 조사됨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연령대는 ① 20대(22.7%), ② 30대(20.7%), ③ 40대(20.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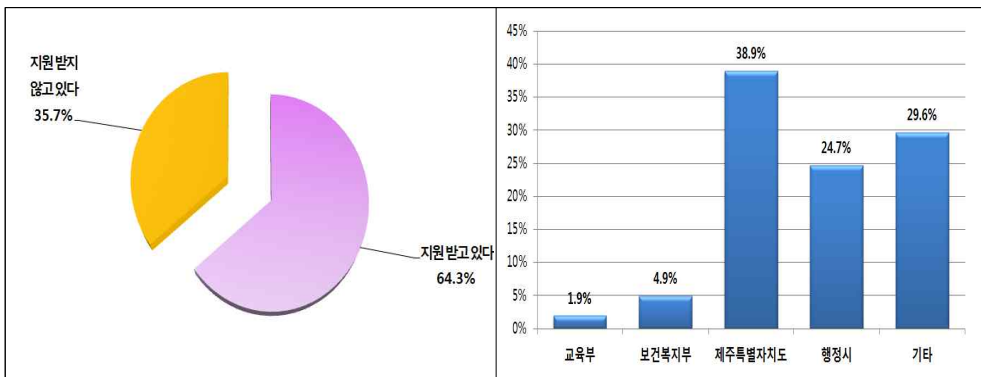
[그림 1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연령대

-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기획하는 방법으로는 ① 학습자의 요구(62.7%), ② 전문가 회의(21.6%), ③ 지원기관에서 제안(7.8%) 순으로 조사됨



[그림 16]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기획방법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 여부에서는 36개 기관(64.3%)이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 지원 기관은 ① 제주특별자치도(38.9%), ② 기타 방법이나 기관(29.6%), ③ 행정시(24.7%), ④ 보건복지부(4.9%), ⑤ 교육부(1.9%)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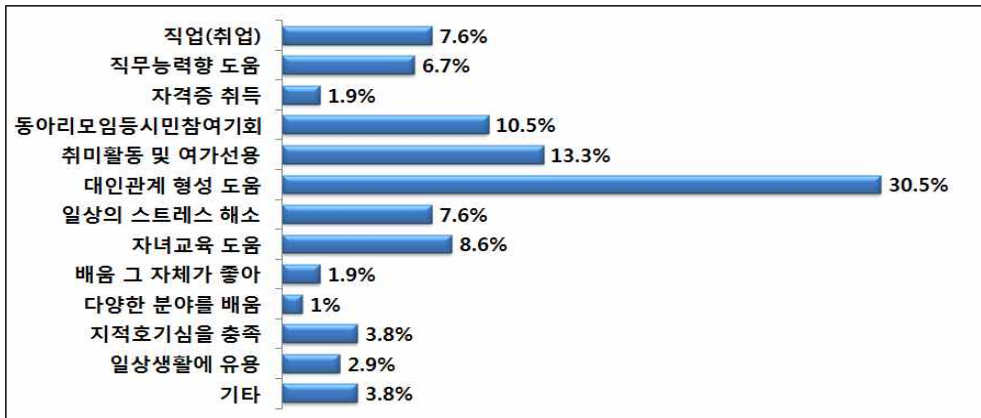
[그림 1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 정도 및 기관

- 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장애인 학습자 참여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① 인문교양교육(65.8%), ② 시민참여 교육(58.9%), ③ 문화예술 교육(57.4%)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기관(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영역으로는 ① 문화예술 교육(41.9%), ② 자립생활 교육(22.8%), ③ 직업능력

교육(15.2%) 순으로 나타남

- 또한 향후 개설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영역으로는 ① 자립생활 교육(28.2%), ② 문화예술교육(28.0%), ③ 직업능력 교육(22.5%) 순임

- 기관에서 생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으로는 ①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어서(30.5%), ②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13.3%), ③ 동아리 모임 등 시민참여 기회(10.5%)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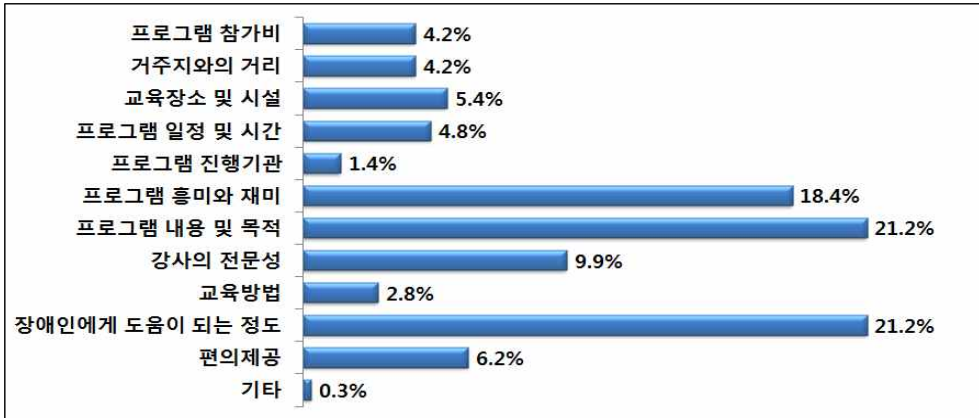


[그림 18]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 목적(복수응답)

- 기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에서 긍정적 반응은 ① 삶의 질 향상에 기여(79.6%), ② 프로그램이 장애인 맞춤형으로 운영(79.6%), ③ 장애인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제공(77.8%), ④ 강사 및 직원 업무관련 전문성(73.6%)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① 프로그램 운영 예산 충분한 지원(26.4%)과 ② 평생교육 홍보(32.1%)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3.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① 프로그램 내용 및 목적(21.2%), ②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21.2%), ③ 프로그램 흥미와 재미(18.4%), ④ 강사의 전문성(9.9%) 등 순으로 제시함



[그림 19]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우선 고려 사항(복수응답)

-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로는 ① 중앙정부(45.0%), ② 지방정부(35.0%), ③ 공공기관(10.0%), ④ 민간단체(10.0%) 순으로 제시함
-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① 평생교육 예산 확충 및 지원(28.7%), ② 장애인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25.8%), ③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18.5%) 순임
-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85.0%)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함
 - 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주요 역할로는 ①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2.0%), ②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21.0%), ③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15.4%), ④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별 컨설팅 및 현장 지원(12.5%) 순으로 제시함

제5장 시사점

- 제주지역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지역별, ② 장애유형별, ③ 소득별에 대한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개인 만족도 향상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 ① 시설 이용의 편리성, ②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적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① 재정지원 확대, ② 학습시설의 편리성 제고, ③ 프로그램 선호 영역(현재 트렌드) 반영을 통해 평생교육 서비스망을 확충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통합교육을 비롯하여 지속 교육을 위한 장애인 전문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장애인의 평균 수명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함께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매우 필요함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시설(단체) 및 종사자 활용 방안이 필요함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발췌)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시설) 지원 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대상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고려 실시
-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중 ① 장애인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제공, ② 장애인의 고령화 대비 교육 프로그램, ③ 발달장애인 성인기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④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우선 실시
-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사전 정보 제공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인증제 도입 및 학습 도구 설치, 지원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학습비 지원
- 거주지 주변의 공공시설 활용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아동 대상 바우처 사업을 장애인성과 보호자에게도 확대 적용
- 장애유형별 학습도구 보급 지원
- “(가칭) 장애인 평생교육학교”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의 일상화 지원

❧ 목 차 ❧

【요 약】	i
제1장 서 론	1
1. 조사의 배경	1
2. 조사의 목적	4
3. 조사 설계	5
1) 문헌조사	5
2) 초점집단면담조사	5
3) 설문조사	7
4. 조사의 제한점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3
1. 평생교육의 개념적 논의	13
2.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와 대상	15
3.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22
1) 장애인 등록 현황	22
2) 특수교육 현황	29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36
제3장 조사결과(I) : 개인실태조사	45
1. 응답자 특성 분석	45
2.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참여경험	46
1) 평생교육(평생학습) 인지 정도	46
2)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경험	48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주요현황	56
1) 최근 2년간(2016~2017년) 참여 프로그램 수와 2018년 참여 프로그램 수	56
2) 참여 프로그램 학습비 부담여부 및 금액	58
3)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경험 있는 학습기관	61
4) 프로그램 운영기관 까지 이동시간	63
5)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수단	65
6) 평생학습 관련 정보 취득 경로	67
7)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목적	69
8)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학습환경 정도	71
9) 학습 후 향상 정도	89
4.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109
1)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도	109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도	111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요인(복수응답)	113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운 점	115
5)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영역(복수응답)	117
6)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	119
7) 평생교육 수강 희망기관	121
8)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주요 요인	123
9)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필요 정도	125
5. 응답자(해당 장애인) 현황	129

제4장 조사결과(Ⅱ) : 기관실태조사

1. 조사기관(시설) 현황	133
1) 기관 유형	134
2) 기관 소재지, 설립주체, 운영형태	135
3) 직원 및 교(강)사 현황	136
4) 평생교육사 보유 현황	137
5) 강의실 보유 현황	138
6) 장애인 접근성	139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40
1) 기관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40
2) 프로그램 주 운영 시간대	141
3) 프로그램 학습비 부담 여부	142
4) 프로그램 수강인원	143
5) 프로그램 영역별 참여대상자	144
6)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기간	145
7) 프로그램 총 학습시간	146
8) 프로그램 1일 학습시간	147
3.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매체	148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주요 대상	149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연령대	150
6.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기획방법	151
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여부	152
8.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학습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154
9.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 목적	155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담당자의 전반적 의견	156
11.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158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선 고려사항	158
2) 프로그램 운영시 가장 필요한 영역	159
3)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	160
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행방안	161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162
제5장 종합 정리 및 시사점	165
1. 종합 정리	166
1) 개인 실태조사 결과	166
2) 기관실태조사 결과	170

3) 초점집단면담조사 결과	173
2. 시사점	176
1) 맞춤형·체감형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관련	176
2) 장애인 평생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전략방안 관련	177
3) 사회통합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178
4)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	179
3. 정책 제언	180
 부 록	 183
【부록 1】 설문지(개인용·기관용)	185
【부록 2】 제주지역 장애인 기관 및 시설 현황	205
【부록 3】 개인 및 기관 실태조사 영향요인 및 효율성 분석 결과(요약)	219
【부록 4】 제주지역 장애인 기관(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례	227
【부록 5】 관련 법령 발취 내용	231

❧ 표 목 차 ❧

<표 1-1> 초점집단면담(FGI) 조사 대상	6
<표 1-2> 설문조사 개요	7
<표 1-3> 조사대상 및 선정 표본 수	8
<표 1-4> 주요 설문내용(개인용)	8
<표 1-5> 주요 설문내용(기관용)	10
<표 2-1> 평생교육 개념 정의	13
<표 2-2> 장애인 평생교육 개념 정의	17
<표 2-3> 장애인 종류 및 기준	17
<표 2-4>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자	20
<표 2-5> 등록 장애인 대비 장애성인(만 18세 이상) 현황	23
<표 2-6> 제주지역 등록 장애성인 중 등급별 현황	24
<표 2-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등록 현황	25
<표 2-8> 전국 및 제주지역 장애인 유형별, 연도별 등록현황	26
<표 2-9> 제주지역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27
<표 2-10> 제주지역 연도별 장애인 등록현황 및 증가율	27
<표 2-11> 제주지역 읍·면·동별 등록장애인 현황	28
<표 2-12> 전체 국민과 장애인 교육정도 비교	30
<표 2-13> 전국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31
<표 2-14> 학교 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31
<표 2-15> 시·도별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수	33
<표 2-16> 제주지역 특수학교(급) 운영 현황	34
<표 2-17> 제주지역 장애학생 토요 및 계절학교 프로그램 이용 현황	36
<표 2-18>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38
<표 2-19>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	38
<표 2-20>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시설 현황	38
<표 2-21>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39
<표 2-22>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	39
<표 2-2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현황	40

<표 2-24>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41
<표 2-25> 제주지역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42
<표 3-1> 응답자 특성	45
<표 3-2> 평생교육 인지 정도(전체)	46
<표 3-3> 평생교육 인지 정도(세부)	47
<표 3-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전체)	48
<표 3-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세부)	49
<표 3-6>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전체)	50
<표 3-7>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세부)	51
<표 3-8>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전체)	52
<표 3-9>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세부)	53
<표 3-10>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프로그램(전체)	54
<표 3-11>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프로그램(세부)	55
<표 3-12> 최근 2년간(2016~2017) 및 2018년 참여 프로그램 수	56
<표 3-13>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요 수간 시간대	57
<표 3-14>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비 부담 여부	58
<표 3-15>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비 부담 정도	58
<표 3-16>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59
<표 3-17>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도포기 여부	60
<표 3-18>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경험 있는 학습기관(복수응답)	61
<표 3-19> 현재 이용, 이용경험 있는 학습기관(복수응답)	62
<표 3-20> 프로그램 운영기관 까지 이동시간(전체)	63
<표 3-21> 프로그램 운영기관 까지 이동시간(세부)	64
<표 3-22>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수단(전체)	65
<표 3-23>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수단(세부)	66
<표 3-24> 평생학습 관련 정보 취득 경로(전체)	67
<표 3-25> 평생학습 관련 정보 취득 경로(복수응답)(세부)	68
<표 3-26>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목적(복수응답)(전체)	69
<표 3-27>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목적(복수응답)(세부)	70
<표 3-28> 교육장소 접근성 평가(전체)	71
<표 3-29> 교육장소 접근성 평가(세부)	72

<표 3-30> 교육기관 시설 및 설비 이용의 편리성 평가(전체)	73
<표 3-31> 교육기관 시설 및 설비 이용의 편리성 평가(세부)	74
<표 3-32> 교육기관 직원 친절성 평가(전체)	75
<표 3-33> 교육기관 직원 친절성 평가(세부)	76
<표 3-34> 프로그램 참여 비용 충분한 지원 평가(전체)	77
<표 3-35> 프로그램 참여 비용 충분한 지원 평가(세부)	78
<표 3-36> 프로그램 수강료 적정 평가(전체)	79
<표 3-37> 프로그램 수강료 적정 정도(세부)	80
<표 3-38> 프로그램 일정과 시간 운영의 적절성 정도(전체)	81
<표 3-39> 프로그램 일정, 시간 적절성 평가(세부)	82
<표 3-40> 강사의 강의내용 전달 정도(전체)	83
<표 3-41> 강사의 강의내용 전달 정도(세부)	84
<표 3-42>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홍보 정도(전체)	85
<표 3-43> 기관의 프로그램 안내(홍보) 정도(세부)	86
<표 3-44>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 정도(전체)	87
<표 3-45> 참여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세부)	88
<표 3-46> 필요한 정보 습득 만족 정도(전체)	89
<표 3-47> 필요한 정보 습득 만족 정도(세부)	90
<표 3-48> 학습욕구 충족 정도(전체)	91
<표 3-49> 학습욕구 충족 정도(세부)	92
<표 3-50> 자신감과 적극성 향상 만족 정도(전체)	93
<표 3-51> 자신감과 적극성 향상 만족 정도(세부)	94
<표 3-52> 자립심 향상 만족 정도(전체)	95
<표 3-53> 자립심 향상 만족 정도(세부)	96
<표 3-54> 사회관계 형성 만족 정도(전체)	97
<표 3-55> 사회관계 형성 만족 정도(세부)	98
<표 3-56> 평생교육 관심 증대 정도(전체)	99
<표 3-57> 평생교육 관심 증대 정도(세부)	100
<표 3-58> 삶의 질 향상 만족 정도(전체)	101
<표 3-59> 삶의 질 향상 만족 정도(세부)	102
<표 3-60> 일자리와 연계 정도(전체)	103
<표 3-61> 일자리와 연계 정도(세부)	104

<표 3-62> 자격증 취득 정도(전체)	105
<표 3-63> 자격증 취득 정도(세부)	106
<표 3-64> 자존감 향상 정도(전체)	107
<표 3-65> 자존감 향상 정도(세부)	108
<표 3-66>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도(전체)	109
<표 3-67>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도(세부)	110
<표 3-68>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정도(전체)	111
<표 3-69>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정도(세부)	112
<표 3-70>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요인(복수응답)(전체)	113
<표 3-71>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요인(복수응답)(세부)	114
<표 3-7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운 요인(복수응답)(전체)	115
<표 3-73>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움 점(복수응답)(세부)	116
<표 3-74> 장애인 평생교육에 가장 필요한 영역(복수응답)(전체)	117
<표 3-75> 장애인 위한 평생학습 가장 필요한 영역(복수응답)(세부)	118
<표 3-76>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복수응답)(전체)	119
<표 3-77>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복수응답)(세부)	120
<표 3-78> 평생교육 수강 희망 기관(복수응답)(전체)	121
<표 3-79> 평생교육 수강 희망 기관(복수응답)(세부)	122
<표 3-8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주요 요인(복수응답)(전체)	123
<표 3-81>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주요 요인(복수응답)(세부)	124
<표 3-82>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필요 정도(전체)	125
<표 3-83> 평생학습 제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세부)	126
<표 3-8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의 주요 역할(전체)	127
<표 3-85> 평생학습 전문기관 주요 역할(세부)	128
<표 3-86> 장애인 응답자 현황(성, 결혼여부, 연령)	129
<표 3-87> 장애인 응답자 현황(장애원인, 거주형태)	130
<표 3-88> 장애인 응답자 현황(동거형태, 활동보조원 이용현황)	131
<표 4-1> 평생교육 기관(시설) 현황	133
<표 4-2> 평생교육 기관 유형	134
<표 4-3> 평생교육 기관 소재지, 설립주체, 운영형태	135
<표 4-3> 직원 및 교(강)사 현황	136

<표 4-4> 평생교육사 보유 현황	137
<표 4-5> 강의실 보유 현황	138
<표 4-6> 기타 시설 보유 현황	138
<표 4-7> 장애인 접근성(시각/청각 장애인 지원 여부)	139
<표 4-8>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40
<표 4-9>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주 운영시간대	141
<표 4-10>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학습비 부담 여부	142
<표 4-11>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인원	143
<표 4-12>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대상자	144
<표 4-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	145
<표 4-14>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총 학습시간	146
<표 4-15>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1일 학습시간	147
<표 4-16> 교육생 모집 홍보매체(복수응답)	148
<표 4-17>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주요 대상자	149
<표 4-18>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연령대	150
<표 4-1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기획방법	151
<표 4-20>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여부	152
<표 4-2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기관	153
<표 4-22> 장애인 학습자 선호 프로그램	154
<표 4-23>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 목적(복수응답)	155
<표 4-24>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 의견	156
<표 4-2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고려 사항(복수응답)	158
<표 4-26>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호 영역(복수응답)	159
<표 4-27>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	160
<표 4-28>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선행방안(복수응답)	161
<표 4-29> 평생학습 제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162
<표 4-30>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관의 주요역할(복수응답)	163
<표 5-1>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만족도 간의 상호연계	170
<표 5-2> 장애 성인 참여 프로그램 영역과 기관운영 프로그램 영역 간의 차이	171

❧ 그림 목 차 ❧

[그림 3-1] 평생교육 인지 정도	46
[그림 3-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48
[그림 3-3]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50
[그림 3-4]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52
[그림 3-5]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프로그램	54
[그림 3-6] 최근 2년간(2016~2017) 및 2018년 참여 프로그램 수	56
[그림 3-7] 프로그램 운영기관 까지 이동시간	63
[그림 3-8]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수단	65
[그림 3-9] 평생학습 관련 정보 취득 경로(복수응답)	67
[그림 3-10]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목적(복수응답)	69
[그림 3-11] 교육장소 접근성 평가	71
[그림 3-12] 교육기관 시설 및 설비 이용의 편리성 평가	73
[그림 3-13] 교육기관 직원 친절성 평가	75
[그림 3-14] 프로그램 참여 비용 충분한 지원 평가	77
[그림 3-15] 프로그램 수강료 적정 평가	79
[그림 3-16] 프로그램 일정과 시간 운영의 적절성 정도	81
[그림 3-17] 강사의 강의내용 전달 정도	83
[그림 3-18]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홍보 정도	85
[그림 3-19]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 정도	87
[그림 3-20] 필요한 정보 습득 만족 정도	89
[그림 3-21] 학습욕구 충족 정도	91
[그림 3-22] 자신감과 적극성 향상 만족 정도	93
[그림 3-23] 자립심 향상 만족 정도	95
[그림 3-24] 사회관계 형성 만족 정도	97
[그림 3-25] 평생교육 관심 증대 정도	99
[그림 3-26] 삶의 질 향상 만족 정도	101
[그림 3-27] 일자리와 연계 정도	103
[그림 3-28] 자격증 취득 정도	105
[그림 3-29] 자존감 향상 정도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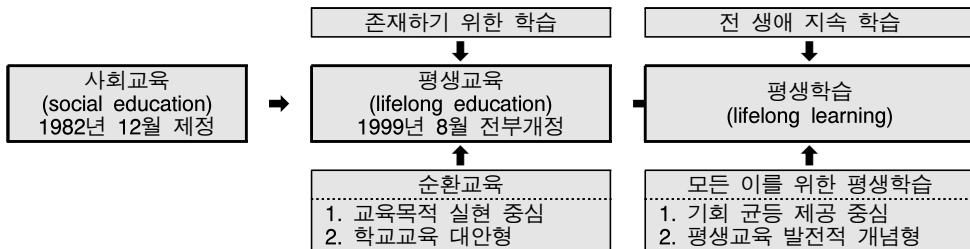
[그림 3-30]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도	109
[그림 3-31]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정도	111
[그림 3-32]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요인(복수응답)	113
[그림 3-3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운 요인(복수응답)	115
[그림 3-34]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영역(복수응답)	117
[그림 3-35]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복수응답)	119
[그림 3-36] 평생교육 수강 희망 기관(복수응답)	121
[그림 3-37]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주요 요인(복수응답)	123
[그림 3-38]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필요 정도	125
[그림 3-39]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의 주요 역할	127
[그림 4-1] 평생교육 기관 유형	134
[그림 4-2] 평생교육 기관 소재지, 설립주체, 운영형태	135
[그림 4-3]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40
[그림 4-4] 교육생 모집 홍보매체	148
[그림 4-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주요 대상	149
[그림 4-6]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연령대	150
[그림 4-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기획방법	151
[그림 4-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여부	152
[그림 4-9]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기관	153
[그림 4-10] 장애인 학습자 선호 프로그램	154
[그림 4-11]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 목적(복수응답)	155
[그림 4-1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우선 고려 사항(복수응답)	158
[그림 4-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호 영역(복수응답)	159
[그림 4-14]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	160
[그림 4-15]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선행 방안(복수응답)	161
[그림 4-1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관 설립 필요성	162
[그림 4-1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관의 주요 역할(복수응답)	163

제1장 서론

1. 조사의 배경

- 현대사회에서 공교육의 출현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개념이 인간의 생애적인 개념에서 일정 시기적인 개념으로, 사적 공간의 개념에서 공적인 학교 공간의 개념으로 특정화되기 시작함. 따라서 이러한 교육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육의 개념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생교육(학습)’이 등장하였음
-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이 소개된 것은 비교적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1) 「헌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것을 명시(1980년 10월 개정)2)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을 비롯해서 현재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에서도 조례 제정 및 정책 시행 등을 통해 이를 장려해 나가고 있음
 -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노동시장의 변화, 지역사회 갈등 급증 등에 따른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정부에서도 사회정책 비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제시 (2018. 9. 6)함에 따라 사회균형 성장을 위한 3대 비전 및 9대 세부

1) 이 보고서에서는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 용어가 역사적 전개 과정상 나타난 단계적·발전적 개념으로 당초 고유한 목적인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안녕과 복지 증진이라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더라도 같은 의미로 간주하고자 함.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변화 양상을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였음.



2)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음.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전략3) 실천을 위해 국민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을 위한 학습복지사회 구현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는 평생교육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평생교육의 소외계층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진흥시켜 나가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 특수교육법) 상의 평생교육 조항을 조정·폐지하고 「평생교육법」 개정(2016. 5)을 실시하였음. 즉, 평생교육의 소외계층인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제공과 함께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함
- 「특수교육법」(2007년)의 평생교육 규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최초 법제화로 학교형태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와 지원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였음. 하지만 학령기 이후 또는 학령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장애성인 대상은 한계가 많았음. 이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개정이 이뤄지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관심 제고가 되면서 최근 「평생교육법」 개정(2016년)을 통해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제공과 추진체계 등에 대해 법률을 통합하게 됨
-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사회적응훈련과 교육 관련 정책 강구

3)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3대 비전 및 9대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음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내용		비고
① 사회통합의 강화	(a)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b)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c)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②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d)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e)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f)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가치의 중시	
③ 사회혁신능력 배양	(g) 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h) 성인기 인적 역량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i)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이와 연계하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 대책”을 발표함(2018. 9. 1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확대, 2022년까지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60곳 신설, 통합유치원은 17곳 확충, 유치원내 특수학급은 1,131개 확대, 청소년기 특수학교 신설과 교육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설, 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17곳 확대, 중노년기 재가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은 26% → 2% 낮추고 발달장애인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로 높여 부모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사항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 지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장 적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음

○ 제9차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경험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또한 참여하더라도 대부분 1년동안 1개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부분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97.4%).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① 문화·체육·예술 교육(2.6%), ② 직업능력 향상교육(1.4%), ③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0.4%)로 조사되었음. 또한 향후 참여하고 싶은 영역으로는 ① 문화·체육·예술교육(13.0%), ② 직업능력 향상교육(8.4%), ③ 학력보완교육(3.6%), ④ 인문교양교육(2.7%) 순으로 조사되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①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28.3%), ② 학습 보조금 지원(22.7%), ③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22.0%), ④ 교육기관까지의 이동 방법지원(16.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매 해 실시하는 『2017년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교육부, 2017) 결과에서도 장애인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학교형태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9개를 포함하여 총 252개소로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889개 정도임.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와 프로그램, 관련 시설 등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 제주지역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급증과 함께 정책적 환경 조성이 이뤄지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음. 따라서 이러한 국내 평생교육 환경 변화를 토대로 그동안 제약적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의 현황 및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기 위한 기초 수요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장애인 관련 통계생산의 어려움으로 OECD 등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주기적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함.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의 제1차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이후 2005년까지 매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는 현재 미발표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2016. 6)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17)를 비롯하여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 계획』(제주특별자치도·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8)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접근 및 제도화를 추진

2. 조사의 목적

- 제주지역 장애성인들의 최근 평생교육 인지 및 참여경험을 포함,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더불어 장애인 유관기관(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조사도 병행해서 진행함. 이를 토대로 향후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조사 결과⁵⁾를 활용하면서 일부 9개 유형,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실질적 수요와 요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용 조사에서도 기관(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선정하였음
 - 특히, 장애인 개인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자 선정시 지체 장애인(4급~6급)과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장애유형을 제외하고 진행함. 왜냐하면 대부분 장애인 개인 실태조사시 그 대상자 대부분이 의사소통과 접근성이 수월한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대상자 대부분 비장애인과 일상생활 및 통합교육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동 및 의사소통, 학습보조기구 제공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설에 대한 접근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장애인 기관(시설) 관계자 및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반영, 대상자를 제한해서 진행하였음

5) 최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2017년 7월, 제주연구원) 보고서에서는 그 대상자 10대 37명, 20~30대 119명, 40~50대 156명, 60~70대 64명, 그리고 80대 이상 25명으로 총 401명임.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 기간동안 수행함

- 또한 기관(시설)용 조사 대상 선정시에는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교육컨텐츠 제공하고 있는 학습기관을 포함하면서 장애인 돌봄 중심인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은 제외하였음
- 이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장애성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정도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진단해 보고자 함. 특히, 장애성인의 평생학습 제반 여건(운영기관 및 프로그램 제공 정도)과 장애 유형별 수요를 파악하고 참여경험에 따른 교육 만족도 정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 향후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조사 설계

1) 문헌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였음. 일부 국외 동향 파악을 위해 선진 사례라 할 수 있는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및 지역 장애인 정책 현황과 설문지 작성에 참고하였음
 -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논문, 학술지, 관련 법규 및 정부의 정책보고서, 관련 통계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음
 - 국외 동향 분석을 위해서 인터넷 정보를 통한 외국의 정부기관 및 정책 등을 검색, 선진사례와 관련한 장애인 평생교육 개념 및 해당기관 범위, 종사자 역할 등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자료로 활용하였음

2) 초점집단면담조사

- 양적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와 장애인 기관(단체) 종사자,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기반으로 초점집단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해당 주요기관(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관계자들과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면담(면접)을 실시하였음

- 제주지역 15개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는 총4차에 걸쳐 관계자 면담을 진행함. 질문은 크게 ① 장애인 기관(시설)에서의 평생교육 운영 여건,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반응 및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종류, ③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애로점, ④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및 발전방안으로 나누어 질의함
- 면담은 ① 2018년 7월 4일, ② 8월 6일, ③ 9월 6일, ④ 10월 8일, ⑤ 11월 27일에 각각 약 3시간 이내로 진행하였음. 면담 대상자는 15개 단체에서 1~2명씩 참여하였음. 면담조사는 장애 유형에 상관하지 않고 전반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상의 여건 및 필요조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면담 결과는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와 비교를 통해 지역내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도출에 따른 보완자료로 활용하였음

<표 1-1> 초점집단면담(FGI) 조사 대상

단체명		회원수	직원수	비고
합 계		15개 단체 11,541명	45명	
별도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10개 단체	3명	
1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285명	3명	
2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3,500명	12명	
3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517명	1명	
4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635명	1명	
5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380명	1명	
6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554 가정	11명	
7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1,295명	2명	
8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651명	3명	
9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157명	2명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660명	1명	
11	(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16명	1명	
12	(사)제주신체장애인복지회	1,230명	1명	
13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316명	2명	
14	(사)제주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245명	1명	
15	(사)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	123명	4명	

* 자료 : 「제주지역 장애인단체 현황(2017년 12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3) 설문조사

- 문헌조사와 초점집단면담조사 결과 및 연구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1차 설문 조사지를 개발하여 타당성 검증을 위해 4명의 외부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청(평생교육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 관계자 검토를 거쳐 장애인(개인용) 평생교육 실태 1종과 기관실태 1종으로 총 2종의 설문지(부록 참고)를 최종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함

<표 1-2>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중 9개 장애유형의 1~4급 이내 해당자 15,966명 대상자 중 450명 (등록장애인 15개 장애유형 35,104명 대상 중 할당) ▷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103개) 중 요양원 및 공동 가정생활 제외 73개
유효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장애인 469명 ▷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 61개 기관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장애인 개인 실태조사는 장애 유형별, 등급별 비례 할당 추출 ▷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 실태는 전수 조사
조사 방법	▷ 응답자 본인 또는 장애인 조력자, 해당기관별 방문 조사
조사 일자	▷ 2018년 7월 ~ 10월
자료 분석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함
자료 해석 유의 사항	▷ Rounding Effect :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전체가 99.9% 또는 100.1%가 될 수도 있음.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 1-3> 조사대상 및 선정 표본 수

(2016년 12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단체	기타 복지시설
		거주 시설	단기 거주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활동 지원 시설	기타 시설	의료 재활 시설	생산품 판매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전체 시설수	103	12	4	14	6	18	6	4	3	1	9	17	9	
조사 해당 시설수	73	11	3	-	6	15	2	2	2	1	8	17	7	

* 주 : 장애인 돌봄 중심인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를 통해 대상 재산정

(2017년 12월 기준, 단위 : 명)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해당 표본합계	해당 비율	표본 수
합 계					15,966	100%	450
지체	452	830	1,842		3,124	19.6	88
시각	558	108	238	226	1,130	7.1	32
청각	172	485	789	1,429	2,875	18.0	81
언어	2	48	150	183	383	2.4	11
지적	785	1,056	1,294	0	3,135	19.6	88
뇌병변	962	550	664	443	2,619	16.4	74
자폐성	195	191	84	0	470	2.9	12
정신	43	321	901	0	1,265	7.9	36
신장	118	847			965	6.0	27

<표 1-4> 주요 설문내용(개인용)

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전체 문항수
I.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참여 경험	- 평생교육 인지 여부	1	18
	- 평생교육 참여 경험 유무 및 프로그램 참여 영역(6대 영역)	7	
	- 가장 최근(2017년도)에 참여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강 시간대, 학습비 부담여부, 자기부담 학습비, 만족도, 중도포기 여부, 중도포기 사유	6	

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전체 문항수
	- 현재 이용한 경험이 있는 평생교육기관	1	
	-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이동시간	2	
	- 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 경로	1	
II.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주요현황	- 참여동기 및 목적(학위, 직업, 직무, 자격증 취득, 동아리, 개인적인 여가선용, 대인 관계 형성, 스트레스 해소 등)	1	23
	-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한 의견(접근성, 편의성, 비용지원, 수강료 적절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강사의 전문성, 전반적 만족도 등)	9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정보 습득, 학습욕구 충족, 자신감과 적극성, 자립심, 사회적 관계, 관심도, 삶의 질, 일자리 창출, 자존감 향상 등)	10	
	- 참여경험이 없는 학습자(미참여 이유, 향후 참여의향 여부)	3	
III.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 학습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1	10
	-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부	1	
	-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	1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가장 어려운 점	1	
	- 학습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영역	1	
	- 평생교육 활성화 주체	1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선 조건	1	
	- 평생교육 지원 전문기관 설립 필요 및 역할	2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1		
IV. 응답자 (해당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결혼, 연령, 거주지, 장애유형, 장애 등급, 장애발생 시기, 직업,주거형태, 월수입, 기초생활수급자, 활동보조원 이용 유무	13	13
총 계		64	

<표 1-5> 주요 설문내용(기관용)

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전체 문항수
I. 기관(시설) 일반현황	- 기관유형, 소재지, 설립주체, 운영형태, 직원현황, 교·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7	
	-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개설 수, 주요 개설 시간대, 학습비 부담여부, 수강인원, 참여대상, 강좌운영기간, 연간 참여시간, 하루 적정운영 시간	8	
II. 평생교육 세부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교육생 모집 방법	1	15
	- 프로그램 참여 주요대상	1	
	-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연령	1	
	- 프로그램 선정·기획 방법	1	
	- 프로그램 운영시 예산지원 여부 및 주체	2	
	-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1	
	-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1	
	-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의 전반적인 의견 (홍보, 체계성, 요구도, 교통시설, 편의시설, 예산, 학습자의 만족도, 이해도, 강사 및 직원의 전문성)	11	
III.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 프로그램 운영시 고려사항	1	19
	- 학습자 선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1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체	1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선 고려사항	1	
	- 평생교육 지원 전문기관 설립 필요 및 역할	2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1	
IV.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직책, 자격증, 근무연수	6	6
총 계			47

4. 조사의 제한점

- 본 실태조사는 제주지역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정도와 장애 유형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였음
 - 그러나 기초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수행하였으나 조사 대상이 특정화되고 조사에 따른 접근성과 소통이 열악하여 결과에 대해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는 한계와 제약이 불가피하였음
- 그러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 현실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사전 이해를 통해 진행하는 기관(시설)은 학력보완 교육을 하는 장애인 야학(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편중되어 있음
 - 따라서 그 밖의 장애인 기관(시설) 및 관계자(본인 및 보호자 포함)들은 평생교육에 참여를 하면서도 사실상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과 인지도가 매우 낮아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졌음. 참여자 및 기관(시설)의 운영자 대부분이 장애인 야학을 제외하고는 참여 프로그램이 평생교육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개인용 조사를 위한 대상자가 9개 장애유형 및 증증에 한정해서 진행함으로써 응답자 본인과의 의사소통 및 응답 당시의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특히,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와 자폐와 연령상 고령자의 경우, 본인보다는 보호자 및 관계자가 응답을 함으로써 수요에 대한 주체가 모호해짐
 - 또한 보호자 및 관계자들이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복지도 및 훈련과 평생교육과의 연계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조사원이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청각, 언어, 정신, 발달장애)가 많아 부득이 의사소통에서 왜곡된 부분에 대한 정정 또는 확인이 어려웠음

- 최종적으로 문헌자료의 참고와 함께 장애인 기관(단체) 관계자 및 유관 분야(사회복지, 상담, 재활,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가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포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함
 -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개념 정립과 함께 장애유형별, 등급별, 지역별로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경험 및 이해 정도, 필요 영역 등이 매우 달라 이를 구분해서 설문내용에 구분 및 반영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영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함
 - 또한 장애유형별에 맞는 설문조사지 작성을 통한 적용에도 일부 한계가 있었음

제2장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의 개념적 논의

- 랑그랑(Lengrand)이 유네스코의 성인교육발전을 위한 국제위원회(1965년, 파리)에서 ‘평생교육(平生教育, 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제3차 세계성인교육회의(1972년, 도쿄)에서 평생교육이 공식적인 국제 용어로 채택됨
- 이후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학자 및 연구자마다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안녕과 복지 증진’이라는 기조와 함께,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학습)으로 종합적 접근을 하고 있음

<표 2-1> 평생교육 개념 정의

구 분	주요내용	비고
Dave. R.H (1976)	평생교육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개인적·사회적·직업적 발달을 꾀하는 과정을 의미함	
Lengrand, P. (1979)	평생교육은 개인적·사회적·직업적 생활을 충실히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확대된 형식적·비형식적 학습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 개념임	
Gelpi, E. (1979)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과 학교졸업 후 교육·훈련을 통합하고,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의 관계를 발전시켜 개인과 지역사회가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최대한 문화적·교육적 성취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중심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진원중 (1981)	평생교육이란 교육의 전체구조와 관계있는 유(類, Genus) 또는 유 개념(Genus Concept)과 관련하여.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3종 내지는 종개념(Specific Concept)을 포괄하는 고급 개념을 의미함	
윤정일 (1983)	평생교육은 취학 전 초·중등 등 교육의 전 단계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서 공식·비공식 및 비형식적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장진호 (1985)	평생교육은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적인 학습기회 포착, 인간성의 조화적 발달과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슬기롭게 헤쳐 나가며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혀, 타인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 교육을 의미함	
김도수 (1994)	평생교육이란 개인과 집단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적교육에서 공적 교육의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모든 형태의 교육을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재편성하려는 교육체제 개혁의 지도이념을 의미함	
유네스코 (1973)	평생교육이란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개편·강화하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려는 노력을 의미함	
황종건 (1992)	평생교육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는 이념.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삼위일체적 교육 통합론을 의미함	

구 분	주요내용	비고
평생교육법 (2009)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함	
권대봉 (2009)	평생교육을 광의와 협의로 정의함. 광의의 개념은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임. 협의의 개념은 학교외 교육을 의미함	

* 출처 : 차갑부(2014), 『평생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양홍권(2017), 『평생교육론』 (서울 : 신정) 등을 참조, 연구자가 종합 및 재정리

- 1985년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헌법」에 평생교육을 진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서의 평생교육을 정의하였고, 이를 「평생교육법」에 담음
- 이와 함께 2007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명실상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천명하였음

2.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와 대상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음.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기회 또한 균등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뜻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 책임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기존에는 장애인 교육정책은 대부분 초·중등학교 교육에만 맞춰져서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1995년부터는 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권장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 왔고, 2008년부터는 만 3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 대한 보육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공과 과정교육을 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보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진행해 왔음
-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년 개정)과 함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을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구체적으로 ① 각급 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②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기관이 그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령기가 지난 장애인의 교육 등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러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별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법」 개념과 정의에서는 특정 대상(계층)에 대해 구분하거나 또는 별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념정의를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표 2-2> 장애인 평생교육 개념 정의

구 분	주요내용	비고
김주영 (2016)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학령기 교육(즉,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이나 대학의 정규교육이 아닌 교육을 말함	
김두영 (2017)	- 전공과 및 대학교를 포함한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말함	

<표 2-3> 장애인 종류 및 기준

구 분	주요내용	비고
1. 지체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구 분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 시력 기준)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礙 : 여러 현실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구 분	주요내용	비고
9. 신장장애인	-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 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 장애인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 장애인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 장애인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 장애인	-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자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참조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연구자들이 통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보고 접근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6)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명시함. ‘장애인 평생교육’이라 함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학령기 교육(즉,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이나 대학의 정규교육이 아닌 교육으로 지칭하고 있음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 대상자를 15개 장애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음
-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으로 10개 유형(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행동, 자폐성,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의 1개 기타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으로 장애가 있더라도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더 나아가 「특수교육법」 제24조에 의하면 특수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공과 교육까지를 정규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대상자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음

<표 2-4> 장애인 평생교육의 대상자

구분	주요내용	비고
1. 시각장애를 지닌 대상자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사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대상자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대상자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대상자	-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구 분	주요내용	비고
5. 정서·행동 장애를 지닌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지폐성 장애를 지닌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 장애를 지닌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6),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

○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까지 포괄·확대해서 진행시켜 나가고자 함.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외 타 연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자 함

- 실제 지역 현장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 극소수임. 반면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법령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기관(시설)으로 간주하고자 함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습자로서의 장애성인의 학습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음. 공간으로서의 평생교육 시설은 장애인이라는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한 이동과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평생교육 과정도 학습자 특성에 맞게 재구성(수정, 개별화)되어야 함. 따라서 기존의 평생교육 행태를 장애인에게 적용시킬 경우 다양한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초의 목적 및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 따라서 교육과정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편성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교육자(교·강사 및 기획자 포함)들도 장애 유형별에 따른 학습 대상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함

3.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1) 장애인 등록 현황

- 2016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45,637명으로 이 가운데만 18세 이상 성인은 전체의 97.2%인 2,473,377명으로 집계되었음. 이 가운데 남성은 57.8%인 1,428,338명, 여성은 42.2%인 1,070,087명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6%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9%이며, 지체장애가 49.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35,104명으로 이 가운데 만 18세 이상 성인은 전체 96.4%인 33,830명임. 이 가운데 남성은 54.4%로서 여성보다 45.6%보다 8.8%p 높음

- 인구분포별로는 제주시는 23,190명(68.6%), 서귀포시는 10,640명(31.4%)이며, 4급~6급 장애등급이 61.6%임. 그러나 1~3급 비율도 높은 편이며 그 중에서 3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장애 등급 비율에서 16.9%임
- 별도로 연령대로 65세 이상 장애인은 제주시가 10,519명(45.4%), 서귀포시가 5,482명(51.5%)으로 제주지역 전체 성인 등록 장애인구(35,104명) 중 16,001명(45.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에서도 등급별로는 3급(13.8%)과 5급(25.1%), 6급(23.1%)이 높은 편임

<표 2-5> 등록 장애인 대비 장애성인(만 18세 이상)⁶⁾ 현황

(2017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인 구 수		
		합 계	남 자	여 자
전국	등록 장애인 수	2,545,637 (100%)	1,475,550 (58.0%)	1,070,087 (42.0%)
	만 18세 이상 성인 등록 장애인 수	2,473,377 (97.2%)	1,428,338	1,045,039
제주	등록 장애인 수	35,104 (100%)	19,256 (54.8%)	15,848 (45.2%)
	만 18세 이상 성인 등록 장애인 수	33,830 (96.4%)	18,409	15,421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함. 따라서 만 18세 이상을 장애성인으로 분류하고자 함. 우리나라 학령인구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기준(6~11세), 중학교 학령기준(12~14세), 고등학교 학령기준(15~17세)임. 또한 「초·중등 교육법」과 「특수교육법」에 의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며, 별도로 「특수교육법」에서는 추가적으로 장애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1년 이상 전공과 교육을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 2-6> 제주지역 등록 장애성인 중 등급별 현황

구 분		인 구 수						
		총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성인 등록 장애 인 수	합계	33,830 (100%)	3,027 (9.0%)	4,157 (12.3%)	5,787 (17.1%)	5,400 (16.0%)	7,008 (20.7%)	8,451 (25.0%)
	남성	18,409	1,638	2,335	3,296	2,621	3,422	5,097
	여성	15,421	1,389	1,822	2,491	2,779	3,586	3,354
제 주 시	합계	23,190 (100%)	2,194 (9.5%)	2,870 (12.4%)	4,074 (17.6%)	3,661 (15.8%)	4,655 (20.1%)	5,736 (24.7%)
	남성	12,647	1,158	1,626	2,295	1,767	2,278	3,523
	여성	10,543	1,036	1,244	1,779	1,894	2,377	2,213
서 귀 포	합계	10,640 (100%)	833 (7.8%)	1,287 (12.1%)	1,713 (16.1%)	1,739 (16.3%)	2,353 (22.1%)	2,715 (25.5%)
	남성	5,762	480	709	1,001	854	1,144	1,574
	여성	4,878	353	578	712	885	1,209	1,141

* 자료 : 보건복지부

<표 2-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등록 현황

(2017년 기준, 단위 : 명)

지역	총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남자	여자						
전국	2,545,637	1,475,550	1,070,087	199,186	340,202	439,138	379,007	544,542	643,562
서울	391,753	227,359	164,394	33,047	52,908	65,460	57,984	82,538	99,816
부산	171,384	101,725	69,659	13,250	23,477	30,692	25,310	35,374	43,281
대구	119,766	70,289	49,477	9,394	16,393	20,729	17,172	24,538	31,540
인천	138,304	83,337	54,967	10,769	17,581	23,799	21,041	29,562	35,552
광주	69,233	38,943	30,290	5,914	9,443	12,037	10,189	13,832	17,818
대전	72,180	42,178	30,002	6,226	9,709	12,436	9,956	14,975	18,878
울산	50,205	30,386	19,819	3,950	6,207	8,589	6,574	11,081	13,804
세종	10,623	6,248	4,375	798	1,429	1,783	1,464	2,276	2,873
경기	533,259	317,854	215,405	43,247	70,569	90,114	76,399	112,962	139,968
강원	99,959	58,021	41,938	7,755	12,765	18,492	15,014	22,541	23,392
충북	95,844	55,030	40,814	7,627	12,988	17,220	14,305	20,338	23,366
충남	128,503	73,976	54,527	9,377	17,141	22,658	19,448	27,658	32,221
전북	131,303	71,443	59,860	9,201	17,272	23,044	20,718	29,240	31,828
전남	142,174	75,683	66,491	9,508	18,927	23,471	24,556	31,283	34,429
경북	172,533	97,542	74,991	12,192	23,656	30,561	26,607	38,301	41,216
경남	183,510	106,280	77,230	13,589	25,203	31,851	26,790	40,994	45,083
제주	35,104	19,256	15,848	3,342	4,534	6,202	5,480	7,049	8,497

* 자료 : 통계청 KOSIS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 2-8> 전국 및 제주지역 장애인 유형별, 연도별 등록현황

(단위 : 명)

장애 유형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합계		2,501,112	2,494,460	2,490,406	2,511,051	2,545,637	
	지체		1,309,285	1,295,608	1,281,497	1,267,174	1,254,130	
	시각		253,095	252,825	252,874	252,794	252,632	
	청각·언어		273,229	271,054	-	-	-	
		청각		255,399	252,779	250,334	271,843	302,003
		언어		17,830	18,275	18,813	19,409	20,321
	지적		178,866	184,355	189,752	195,283	200,903	
	뇌병변		253,493	251,543	250,862	250,456	252,819	
	자폐성		18,133	19,524	21,103	22,853	24,698	
	정신		95,675	96,963	98,643	100,069	101,175	
	신장		66,551	70,434	74,468	78,750	83,562	
	심장		6,928	6,401	5,833	5,507	5,399	
	호흡기		13,150	12,445	12,033	11,831	11,807	
	간		9,194	9,668	10,324	11,042	11,843	
	안면		2,696	2,689	2,685	2,680	2,692	
	장루·요루		13,546	13,867	14,116	14,404	14,718	
	뇌전증		7,271	7,084	7,069	6,956	6,935	
제주	합계		32,673	32,989	33,510	34,278	35,104	
	지체		14,411	14,462	14,629	14,711	14,746	
	시각		4,231	4,259	4,233	4,270	4,253	
	청각·언어		4,626	4,651	-	-	-	
		청각		4,320	4,321	4,364	4,738	5,259
		언어		306	330	332	356	383
	지적		2,793	2,876	2,958	3,049	3,135	
	뇌병변		3,359	3,351	3,441	3,470	3,528	
	자폐성		319	358	398	435	470	
	정신		1,159	1,187	1,233	1,255	1,265	
	신장		963	1,036	1,115	1,189	1,255	
	심장		91	92	90	86	77	
	호흡기		272	254	253	248	246	
	간		110	118	123	143	161	
	안면		24	24	23	23	23	
장루·요루		165	179	181	172	179		
뇌전증		150	142	137	133	124		

* 자료 : 통계청 KOSIS

-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추정 장애인구수는 273만 명으로 장애 출현율은 5.59%임. 그러나 제주지역은 전체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구는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특정 지역인 추자면(9.51%), 한경면(9.10%), 영천동(9.25%)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9> 제주지역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등록 장애인	전체 인구	비율	등록 장애인	전체 인구	비율	등록 장애인	전체 인구	비율
계	33,510	624,395	5.37	34,278	641,597	5.34	35,104	657,083	5.34
제주시	23,123	459,876	5.03	23,618	470,665	5.02	24,186	478,700	5.05
서귀포	10,387	164,519	6.31	10,660	170,932	6.24	10,918	178,383	6.12

* 자료 : 통계청 KOSIS

<표 2-10> 제주지역 연도별 장애인 등록현황 및 증가율

(2017. 12월말 기준, 단위 : 명,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증가율)	26,320 (7.99)	28,393 (7.30)	30,676 (7.44)	31,874 (3.76)	31,995 (0.38)	32,405 (1.27)	32,673 (0.82)	32,989 (0.97)	33,510 (1.58)	34,278 (2.29)	35,104 (2.41)
남	14,829	15,750	16,720	17,305	17,341	17,616	17,785	18,007	18,380	18,882	19,256
여	11,491	12,643	13,956	14,569	14,654	14,789	14,888	14,982	15,130	15,456	15,848
인구당 비율	563.388 (4.67)	565.520 (5.02)	562.663 (5.45)	571.255 (5.58)	576.156 (5.55)	583.713 (5.55)	593.806 (5.50)	607.346 (5.43)	624.395 (5.37)	641.597 (5.34)	657.083 (5.34)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 2-11> 제주지역 읍·면·동별 등록장애인 현황

(2017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읍면동	전체인구	장애인 인구		등급별 현황					
		소계	비율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도 전체	657,083	35,104	5.34	3,342	4,534	6,202	5,480	7,049	8,497
제주시	478,700	24,186	5.05	2,448	3,169	4,391	3,724	4,689	5,765
한림읍	20,867	1,507	7.22	135	202	272	228	313	357
애월읍	34,051	2,076	6.10	267	243	366	353	367	480
구좌읍	15,504	1,235	7.97	87	159	204	220	264	301
조천읍	23,299	1,433	6.15	150	177	251	221	288	346
한경면	8,930	813	9.10	66	92	150	128	176	201
추자면	1,862	177	9.51	16	26	18	27	45	45
우도면	1,871	158	8.44	14	18	25	32	35	34
일도1동	3,100	221	7.13	16	29	47	34	47	48
일도2동	35,242	1,633	4.63	136	219	273	260	337	408
이도1동	7,929	418	5.27	33	66	80	75	75	89
이도2동	50,467	1,894	3.75	175	247	343	288	364	477
삼도1동	14,519	679	4.68	71	75	132	125	126	150
삼도2동	8,717	453	5.20	36	70	64	85	75	123
용담1동	7,843	475	6.05	42	60	94	80	95	104
용담2동	15,821	912	5.76	71	123	149	155	183	231
건입동	9,867	633	6.42	58	84	106	101	129	155
화북동	25,448	1,317	5.18	190	188	222	169	258	290
삼양동	22,740	995	4.38	93	130	191	144	191	246
봉개동	3,885	244	6.28	26	25	51	38	54	50
아라동	30,128	1,660	5.51	225	249	377	235	255	319
오라동	13,514	515	3.81	65	57	86	77	100	130
연동	41,810	1,502	3.59	155	211	271	200	265	400
노형동	53,433	1,973	3.69	211	264	371	268	375	484
외도동	20,697	857	4.14	83	108	174	111	184	197
이호동	4,151	230	5.70	16	25	38	41	54	56
도두동	3,005	176	5.86	11	22	36	29	34	44

읍면동	전체인구	장애인 인구		등급별 현황					
		소계	비율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서귀포시	178,383	10,918	6.12	894	1,365	1,811	1,756	2,360	2,732
대정읍	21,045	1,359	6.46	96	184	232	236	293	318
남원읍	19,160	1,409	7.35	130	189	203	219	325	343
성산읍	15,287	1,111	7.27	64	122	182	186	252	305
안덕면	11,367	771	6.78	53	102	121	144	167	184
표선면	12,220	808	6.61	47	88	119	132	190	232
송산동	4,474	269	6.01	15	28	44	48	69	65
정방동	2,456	144	5.86	12	15	24	17	27	49
중앙동	4,003	251	6.27	18	34	45	44	52	58
천지동	3,571	217	6.08	11	23	35	35	54	59
효돈동	5,320	348	6.54	25	41	66	53	77	86
영천동	5,178	479	9.25	74	72	83	70	85	95
동홍동	22,680	1,168	5.15	111	143	228	187	224	275
서홍동	10,629	521	4.90	46	68	109	82	107	109
대륜동	13,389	642	4.79	55	75	101	94	146	171
대천동	12,993	617	4.76	60	72	88	93	117	187
중문동	10,684	534	5.00	59	83	96	77	104	115
예래동	3,927	270	6.88	18	26	35	39	71	81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전국적으로 추정 장애 인구수는 273만명으로 장애 출현율은 5.59%임. 그러나 제주지역은 전체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장애인구는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특정지역인 경우, 추자면(9.51%), 한경면(9.10%), 영천동(9.25%)로 타 지역보다는 인구대비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특수교육 현황

- 성인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28.8%, 고등학교 28.1%, 중학교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16.2%, 대학 이상 15.3%, 그리고 무학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 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중은 장애인이 49.0% 그리고 전체 국민이 71.1%로 장애인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 비율은 전체 국민 평균보다 약 22.1%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2-12> 전체 국민과 장애인 교육정도 비교

(단위 : %)

구 분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이상 졸업
장애인 (18세 이상)	11.6	28.8	16.2	28.1	15.3
국민 (장애인 포함)	-	14.4	14.5	51.7	19.4

*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 교육법」 제55조)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 11항). 또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6조)
-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장애 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개교, 청각장애학교 14개교, 지적장애학교 121개교, 지체장애학교 20개교, 정서장애학교 7개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 69.1%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사립학교가 92개교로 전체 52.6% 비율을 차지함
 - 지역별로 서울 30개교, 경기 35개교, 부산 15개교, 충북과 전북이 10개교 순으로 제주지역은 3개교임

<표 2-13> 전국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 개)

구분	설립별 학교 수				장애 영역별 학교 수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	영아	유치	초등	중학	고등	전공
서울	3	8	19	30	3	4	15	5	3	8	21	26	26	26	24
부산		8	7	15	1	1	12	1	-	7	10	12	13	12	9
대구		3	6	9	1	1	4	2	1	-	4	9	9	9	9
인천		5	4	9	1	1	6	1	-	1	6	8	8	8	7
광주		3	2	5	1	-	3	1	-	4	2	5	5	5	4
대전		3	2	5	1	-	3	1	-	1	5	5	5	5	5
울산		2	2	4	-	1	3	-	-	-	3	4	4	4	4
세종		1	-	1	-	-	1	-	-	1	1	1	1	1	1
경기	2	11	22	35	-	2	29	3	1	1	30	30	32	32	25
강원		5	2	7	1	1	5	-	-	-	7	7	7	7	6
충북		3	7	10	2	1	4	2	1	1	10	10	10	10	10
충남		5	2	7	-	-	6	1	-	1	3	7	7	7	6
전북		6	4	10	1	1	6	2	-	1	4	9	9	9	6
전남		3	5	8	1	1	6	-	-	-	7	8	8	8	8
경북		3	5	8	-	-	7	-	1	-	4	8	8	8	8
경남		7	2	9	-	-	9	-	-	-	5	9	9	9	8
제주		2	1	3	-	-	2	1	-	-	3	3	3	3	3
총계	5	78	92	175	13	14	121	20	7	26	125	161	164	163	143

*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재정리.

<표 2-14> 학교 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구분	학교과정별 수				학교 설립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	공립	사립	
서울	73	697	289	252	7	1,275	29	1,311
부산	27	323	125	91	2	553	11	566
대구	28	238	97	75	4	434	-	438
인천	68	323	119	111	1	612	8	621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구분	학교과정별 수				학교 설립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	공립	사립	
광주	15	140	64	53	4	259	9	272
대전	45	165	79	57	-	335	11	346
울산	24	131	55	46	-	256	-	256
세종	22	44	19	11	-	96	-	96
경기	285	1,319	652	586	-	2,783	59	2,842
강원	28	214	80	60	3	379	-	382
충북	42	222	95	83	8	431	3	442
충남	70	334	143	115	4	641	17	662
전북	22	237	83	60	3	392	7	402
전남	40	277	134	100	1	543	7	551
경북	15	341	131	108	1	543	51	595
경남	44	411	180	143	3	735	40	778
제주	5	64	27	20	5	110	1	116
총계	853	5,480	2,372	1,971	46	10,377	253	10,676

* 주) :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3학급 고등학교에 포함(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4)

**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재정리.

- 2018년 현재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25,919명으로 2017년의 25,798명에 비해 121명이 증가함
 - 최근의 특수학교 학생의 증가 폭 감소 추세는 통합교육 확대에 따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를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175개교 중 사립 특수학교에 위탁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 42.3%에 해당되고 있으며, 장애영역별로는 지적장애 학생 비율은 전체 55.5%로 가장 많음

<표 2-15> 시·도별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수

(단위 : 명)

구분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정서· 행동	자폐	의사 소통	학습	건강	발달 지체	소계
서울	361	304	1,894	829	31	859	-	-	-	119	4,397
부산	78	55	909	294	10	382	3	5	2	76	1,814
대구	65	50	927	246	-	314	14	-	-	5	1,621
인천	96	55	824	193	5	295	24	-	1	4	1,497
광주	108	13	530	176	1	172	2	-	-	14	1,016
대전	115	22	546	111	-	250	3	-	-	10	1,057
울산	20	38	499	67	9	123	1	-	1	17	775
세종	1	-	66	18	-	40	1	-	-	6	132
경기	31	51	2,805	595	8	1,172	15	1	8	37	4,723
강원	79	18	563	52	3	158	9	3	14	4	903
충북	171	98	590	176	11	180	6	-	-	30	1,262
충남	3	3	680	152	2	181	8	-	1	5	1,035
전북	48	14	740	156	4	155	14	2	1	14	1,148
전남	66	15	725	118	4	124	6	-	-	6	1,064
경북	3	11	1,045	127	5	233	14	1	2	17	1,458
경남	12	9	881	288	5	349	2	8	-	10	1,564
제주	3	6	166	82	116	78	2	-	-	-	453
계	1,260	762	14,390	3,680	214	5,065	124	20	30	374	25,919

*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제주지역 장애인 주요 교육기관(유·초·중·고 과정, 발달장애·지적·뇌병변, 자폐, 중복장애인 대상)은 대부분 종합학교 체계로 운영 중임. 제주지역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은 없음. 또한 만 5세~19세 장애인(1,477명) 중 전문 교육기관(정원 453명)을 이용하는 경우는 30.7%에 지나지 않음. 대부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 2-16> 제주지역 특수학교(급) 운영 현황

(2018. 4. 1. 기준, 단위 : 개, 명)

구분	학교 과정	특수학교 (급) 학급 수	특수학급 배치 학생 수	미설치교 통합 학급 수	일반학급 학생수			학생수 합계								
					설치교	미설치교	소계									
제주시	유	4	14	25	0	27	27	41								
	초	48	242	41	82	41	123	365								
	중	19	93	18	35	19	54	147								
소 계		71	349	84	117	87	204	553								
서귀포시	유	1	2	8	0	18	18	20								
	초	16	104	17	23	30	53	157								
	중	8	23	3	7	4	11	34								
소 계		25	129	28	30	52	82	211								
고등학교	국립	2	12	0	8	0	8	20								
	공립	17	114	12	57	12	69	183								
	사립	1	3	12	6	12	18	21								
소 계		20	129	24	71	24	95	224								
일반학교 계		116	607	136	218	163	381	988								
영지학교	유	1	2					2								
	초	18(3)	72(6)					72(6)								
	중	11(3)	44(10)					44(10)								
	고	9(2)	39(5)					39(5)								
	전공	2	18					18								
소 계		41	175					175(21)								
온성학교	유	1	5									5				
	초	7(1)	33(3)									33(3)				
	중	6(1)	18(1)									18(1)				
	고	6(1)	29(2)									29(2)				
	전공	2	15									15				
소 계		22	100									100(6)				
영송학교	유	1	1													1
	초	10	52													52
	중	9	43													43
	고	10	62	62												
	전공	2	20	20												
소 계		32	178	178												
특수학교 계		95	453	0			453									
합 계		211	1,060	136	218	163	381									1,441

구분	학교	특수교사 수	특수교육보조인력수			비 고
	과정		실무원	자원봉사	사회복무	
제주시	유	4	2	11	2	
	초	48	38	37	7	
	중	19	15	1	2	
소 계		71	55	49	11	
서귀포시	유	1	1	7	0	
	초	16	14	23	5	
	중	8	3	3	0	
소 계		25	18	33	5	
고등학교	국립	2	2	0	0	
	공립	18	14	0	3	
	사립	1	2	2	2	
소 계		21	18	2	5	
일반학교 계		117	91	84	21	
영지학교	유	1	21	22	15	
	초	20				
	중	18				
	고	15				
	전공	3				
소 계		57	21	22	15	
인성학교	유	1	12	17	4	
	초	8				
	중	10				
	고	11				
	전공	3				
소 계		33	12	17	4	
영송학교	유	1	17	22	14	
	초	15				
	중	15				
	고	17				
	전공	4				
소 계		52	17	22	14	
특수학교 계		142	50	61	33	
합 계		259	141	145	54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자료, 「2018학년도 제주 특수교육 현황 및 통계자료」 인용

<표 2-17> 제주지역 장애학생 토요 및 계절학교 프로그램 이용 현황

구분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합계 (이수율)	비고
토요프로그램	신청 학생수	114	31	145	
	이수 학생수	46	20	66 (45.5%)	
계절학교	신청 학생수	219	24	243	
	이수 학생수	213	22	235 (94.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자료, 「2018학년도 제주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인용

○ 반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20대 이 후에는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계획적인 교육과정은 없는 형편임. 실태과약도 인구 및 편의시설, 보호시설 위주 현황 파악이 대부분으로 지원 측면도 복지 및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부에서는 2015년까지 민간 직업훈련기관 지원(1개소, 15명 이내), 개인별 교육 수강료를 지원(5명)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지역내 장애인 대상 훈련시설 전문성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미확보, 훈련생 모집 난항, 직업특수교육 인적 자원 미확보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 중단이 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취업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과정, 성인문해교육, 장애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 비록 단기적이고 간헐적이지만 2012년(3개과정, 참여 91명)부터 2013년(5개과정, 참여 684명), 2014년(1개과정, 참여 19명), 2015년(6개과정, 참여 68명), 2016년(7개과정, 참여 87명) 진행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2018년에는 총 12개 기관 대상으로 162명을 참여시키고 있음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정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크게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교육부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년~2017년)』(2013년 9월)에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을 포함시켰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과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였음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2년)』(2017년 12월)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을 제시함. 특히,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그리고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년~2022년)』(2018년 3월)에서는 소외계층의 실질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를 세부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2018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확대 효과를 유도하고 있음

【국정과제】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②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이러한 결과로서 최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및 추진기반 구축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2018년 5월)하였음. 또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장애성인교육(야학)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와 함께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교육지원 자료개발 등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 이와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 관련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신뢰성에 한계가 많아 부분적으로 재정리를 통해 추정치를 사용하는 형편임
 - 전체 국민의 1/3 이상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0.02%, 발달장애인은 0.01%정도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매우 소수로 파악됨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 2-18>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구 분	전 체	장애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	3,768개	232개(6.2%)	-
학습자 수	17,618,495명	3,619명	1,724명
학습자 비율	100%	0.02%	0.01%

* 주) : 2014년 평생교육 통계자료 재구성

**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재인용.

<표 2-19>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

구 분	기관(개)	비율(%)	비고
평생교육 기관	특수학교	4	2.4
	대학	6	3.6
	특수교육지원센터	6	3.6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7	10.1
	평생교육학습관 (시·도교육청)	40	23.6
	평생교육학습관 (읍·면·동)	6	3.6
	기타	14	8.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35	20.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3.6
	장애인 체육시설	2	1.2
	기타	16	9.4
기타 장애인 단체	17	10.1	
총계	169	100.0	

* 주) : 2014년 평생교육 통계자료 재구성

**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재인용

<표 2-20>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단체	기타 복지시설
		거주 시설	단기 거주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기타 시설	의료 재활 시설	생산 품 판매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시설수	92	13	4	15	5	18	4	1	1	9	15	7
보호인원	3,937	489	48	63	2,284	266	184	120	-	353	-	13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7년 12월 기준)

<표 2-21>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전체
학력보완교육	0.2	0.0	0.4	0.0	0.9	4.2	1.1	0.3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0.3	0.4	0.2	1.2	1.3	0.0	1.1	0.4
직업능력향상교육	1.1	1.9	0.2	1.2	5.0	11.3	5.0	1.4
인문교양교육	0.9	0.4	0.2	0.0	1.0	2.5	1.3	0.8
문화·체육·예술교육	2.7	3.5	2.6	0.9	3.0	15.7	1.4	2.6
시민참여교육	0.3	0.6	0.0	0.0	0.4	0.0	0.2	0.3

* 주) : 2014년 평생교육 통계자료 재구성

**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재인용.

<표 2-22>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

(단위 : 명, 개, 백만원)

구분	기관 수	교사수	학생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지원 예산
				문해	교양	직업	기타	계	
서울	4	37	186	26	14	3	19	62	631
부산	1	22	45	-	1	-	2	3	50
대구	1	15	59	4	8	1	1	14	130
인천	6	93	169	6	8	3	3	20	125
광주	3	26	88	5	13	4	-	22	300
대전	1	28	45	3	1	1	3	8	62
울산	2	12	54	9	9	4	7	29	78
세종	-	-	-	-	-	-	-	-	-
경기	14	148	512	13	72	10	31	126	630
강원	3	25	94	11	7	3	4	25	73
충북	3	36	173	34	2	-	3	39	111
충남	1	21	94	4	1	2	1	8	48
전북	4	45	247	29	6	-	5	40	41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9	26	140	24	-	-	-	24	990
제주	1	18	122	6	2	-	4	12	70
계	53	552	2,028	174	144	31	83	432	3,339

*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표 2-2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예산액	비고
서울	78	84	183.5	
부산	11	56	215	
대구	9	46	20.5	
인천	9	55	70.5	
광주	5	5	8.5	
대전	13	29	144	
울산	2	29	78.4	
세종	-	-	-	
경기	-	-	-	
강원	5	51	211	
충북	4	20	111.5	
충남	10	92	66.5	
전북	1	9	24	
전남	21	94	99.4	
경북	9	14	20	
경남	23	47	1,022	
제주	3	11	65	
계	203	642	2,339.8	

* 자료 : 교육부(2018),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재정리.

-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운영 프로그램 파악 등은 여의치 않은 실정이며 이에 따른 참여율 또한 명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과 참여를 위한 기회제공 등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음
- 다음은 2015년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시설)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주지역 337개 평생교육기관(시설) 중 장애인 관련 응답기관(시설)은 4개지만 전국과 비슷한 여건임을 알 수 있음

<표 2-24>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운영주체	운영형태	지역	유형	기관명	건물소유형태	강의실 수	강의실 규모	기타 시설
법인	직영	제주	사회복지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법인소유	1	300	7
법인	직영	제주	사회복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차	0	0	2
개인	직영	서귀포	학교형태 학력 미인정 (등록 시설)	제주장애인이야간학교	임차	3	50	1
법인	직영	제주	사회복지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임차	3	100	0

구분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장애인이야간학교	사단법인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직원	5	6	8	5
정규직	5	6	2	5
비정규직	0	0	6	0
모집프로그램총수	7	5	9	4
폐강프로그램수	3	0	0	0
1개월 미만	0	2	0	0
1개월 이상	4	3	9	4
①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0	0	3	0
② 학력보완교육	0	0	2	0
③ 직업능력향상교육	0	4	0	0
④ 문화예술교육	2	1	1	3
⑤ 인문교양교육	4	0	3	0
⑥ 시민참여교육	1	0	0	1
프로그램 총예산(천원)	5,600	18,000	153,406	27,400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 2-25> 제주지역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원)

기관명	과정명	교육기간(월)	교육시수(시간)	연간교육횟수	모집원	남	여	수강료	재지원여부	수요대상	프로그램개발형태	프로그램운영형태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탐방교실	8	80	10	25	13	12	무료	행정시	노인	자체	직접운영
	만보걷기와숲치료	8	80	10	25	13	12	무료	행정시	노인	자체	직접운영
	찾아가는중국어교실	10	60	30	20	10	10	무료	기타	노인	위탁	직접운영
	애벌래학교(환경교육)	8	40	10	25	13	12	무료	기타	노인	위탁	직접운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기술훈련	12	48	24	120	72	48	무료	도비	성인	자체	직접운영
	활동보조보수교육	3	24	3	180	36	144	무료	국고	성인	자체	직접운영
	직원교육	3	48	3	45	36	9	무료	지원없음	성인	자체	직접운영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문해1	12	288	1	15	12	3	무료	도비	성인	자체	직접운영
	문해2	12	240	1	16	12	4	무료	도비	성인	자체	직접운영
	문해3	12	48	1	15	12	3	무료	도비	성인	자체	직접운영
	미술	12	144	1	22	18	4	무료	행정시	성인	자체	직접운영
	컴퓨터	12	96	1	10	9	1	무료	도비	성인	자체	직접운영
	기초영어	12	96	1	8	4	4	무료	교육청	성인	자체	직접운영

기관명	과정명	교육기간(월)	교육시수(시간)	연간교육횟수	모집원	남	여	수강료	재정원부	수요대상	프로그램개발형태	프로그램운영형태
	심화영어	12	96	1	23	15	8	무료	교육청	성인	자체	직접운영
	중졸	12	384	1	15	12	3	무료	교육청	성인	자체	직접운영
	고졸	12	384	1	9	6	3	무료	교육청	성인	자체	직접운영
사단법인 제주 장애인 인권 포럼	여성장애인역량강화	4	40	20	10	0	10	무료	도비	성인	자체	직접운영
	장애인표현력강화프로그램	4	24	12	10	0	10	무료	기타	성인	자체	직접운영
	영상미디어교육사업	4	24	12	8	5	3	무료	기타	성인	자체	직접운영
	장애인정책아카데미	3	32	16	30	20	10	무료	행정시	성인	자체	직접운영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2015), 『2015년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재정리.

제3장 조사결과(I) : 개인실태조사

1. 응답자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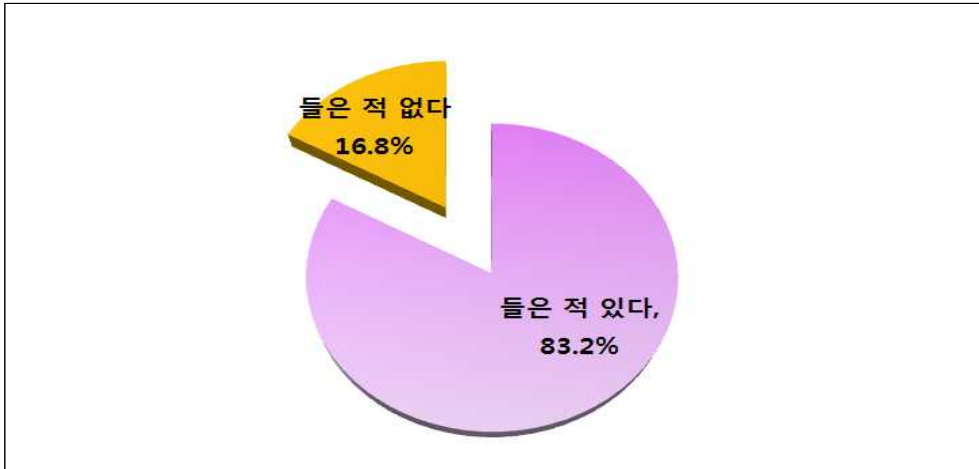
○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표본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3-1> 응답자 특성

장애인		사례 수(명)	백분율(%)
전체		469	100.0
성별	남성	252	53.7
	여성	217	46.3
지역	제주시 동	328	69.9
	제주시 읍·면	95	20.3
	서귀포시 동	33	7.0
	서귀포시 읍·면	13	2.8
장애유형	지체	99	21.1
	시각	35	7.5
	청각	64	13.6
	언어	5	1.1
	지적	73	15.6
	뇌병변	71	15.1
	자폐성	26	5.5
	정신	38	8.1
	신장	22	4.7
	중복	36	7.7
장애등급	1급	148	31.6
	2급	166	35.4
	3급	107	22.8
	4급	48	10.2
생활정도	기초수급생활자	112	23.9
	차상위	36	7.7
	해당없음	321	68.4
장애원인	선천적	127	27.1
	후천적(사고)	104	22.2
	후천적(질병)	151	32.2
	모름	77	16.4
	무응답	10	2.1

2.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참여경험

1) 평생교육(평생학습) 인지 정도



[그림 3-1] 평생교육 인지 정도

<표 3-2> 평생교육 인지 정도(전체)

(단위 : %, 개)

들은 적 있다	들은 적 없다	N
83.2%	16.8%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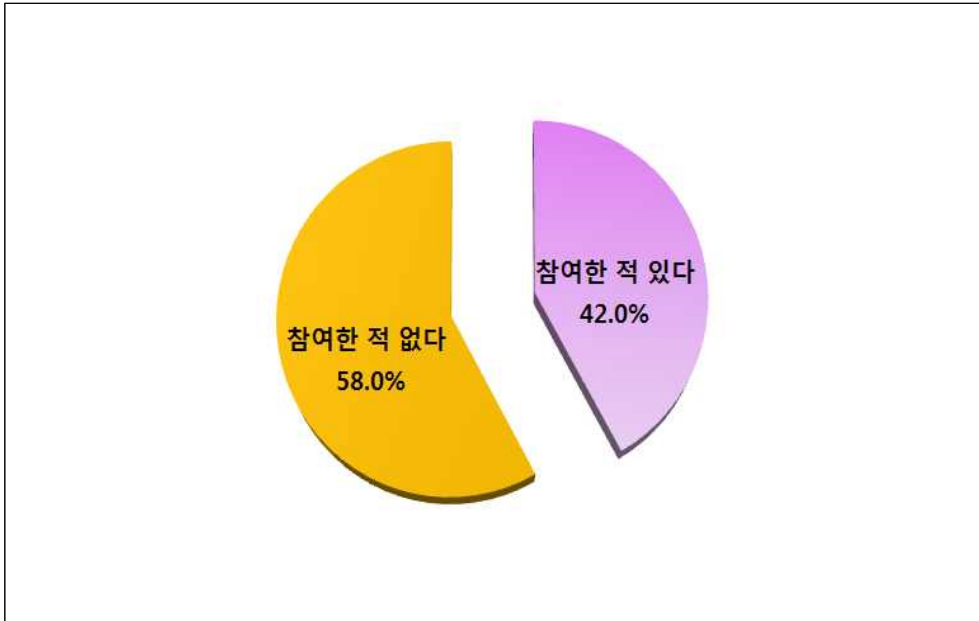
- 제주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평생학습)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83.2%인 대다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평생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장애인은 16.8%인 것으로 조사됨
 - ‘들어본 적 없다’는 의견은 서귀포시 읍·면지역(46.2%), 언어장애(40.0%), 정신장애(50.0%), 3급(26.2%), 기초수급대상자(26.8%)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또한 언어와 정신 장애유형을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높은 편임

<표 3-3> 평생교육 인지 정도(세부)

(단위 : %)

분류		들은 적 있다	들은 적 없다
전체		83.2	16.8
성별	남 성	80.2	19.8
	여 성	86.6	13.4
지역	제주시 동	84.8	15.2
	제주시 읍·면	83.2	16.8
	서귀포시 동	78.8	21.2
	서귀포시 읍·면	53.8	46.2
장애 유형	지체	92.9	7.1
	시각	88.6	11.4
	청각	75.0	25.0
	언어	60.0	40.0
	지적	78.1	21.9
	뇌병변	95.8	4.2
	자폐성	92.3	7.7
	정신	50.0	50.0
	신장	86.4	13.6
중복	80.6	19.4	
장애 등급	1급	91.9	8.1
	2급	81.9	18.1
	3급	73.8	26.2
	4급	81.3	18.8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73.2	26.8
	차상위	83.3	16.7
	해당 없음	86.6	13.4

2)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경험



[그림 3-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표 3-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전체)

(단위 : %, 개)

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없다	N
42.0%	58.0%	469개

○ 제주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42.0%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58.0%는 참여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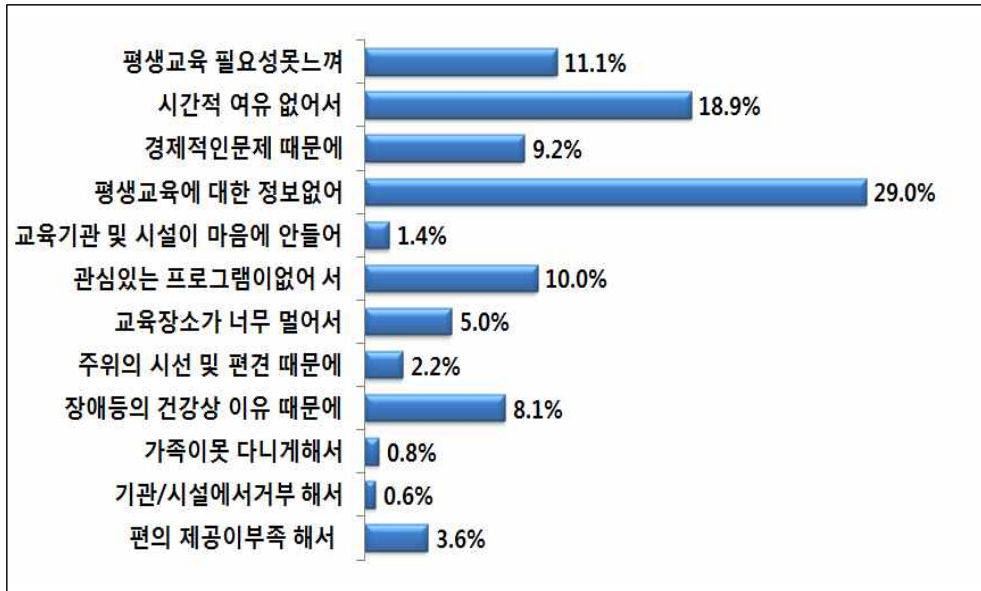
-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의견은 서귀포시 읍·면지역(69.2%), 언어장애(60.0%), 정신장애(84.2%), 3급(54.2%), 기초수급대상자(50.0%)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표 3-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세부)

(단위 : %)

분류		참여한 경험 있다	참여한 경험 없다
전체		42.0	58.0
성별	남 성	47.6	52.4
	여 성	35.5	64.5
지역	제주시 동	40.2	59.8
	제주시 읍·면	42.1	57.9
	서귀포시 동	48.5	51.5
	서귀포시 읍·면	69.2	30.8
장애 유형	지체	34.3	65.7
	시각	31.4	68.6
	청각	53.1	46.9
	언어	60.0	40.0
	지적	52.1	47.9
	뇌병변	15.5	84.5
	자폐성	26.9	73.1
	정신	84.2	15.8
	신장	45.5	54.5
	중복	47.2	52.8
장애 등급	1급	29.7	70.3
	2급	45.2	54.8
	3급	54.2	45.8
	4급	41.7	58.3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50.0	50.0
	차상위	38.9	61.1
	해당 없음	39.6	60.4

2-1) 평생교육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 미참여 이유(복수응답)



[그림 3-3]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표 3-6>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전체)

(단위 : %, 개)

필요성 못느껴서	시간적 여유 없어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정보 없어서	기관 및 시설이 마음에 안들어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	장애 등 건강상 이유 때문에	가족이 못 다니게해서	기관/시설에서 거부해서	편의 제공이 부족해서	N
11.1	18.9	9.2	29.0	1.4	10.0	5.0	2.2	8.1	0.8	0.6	3.6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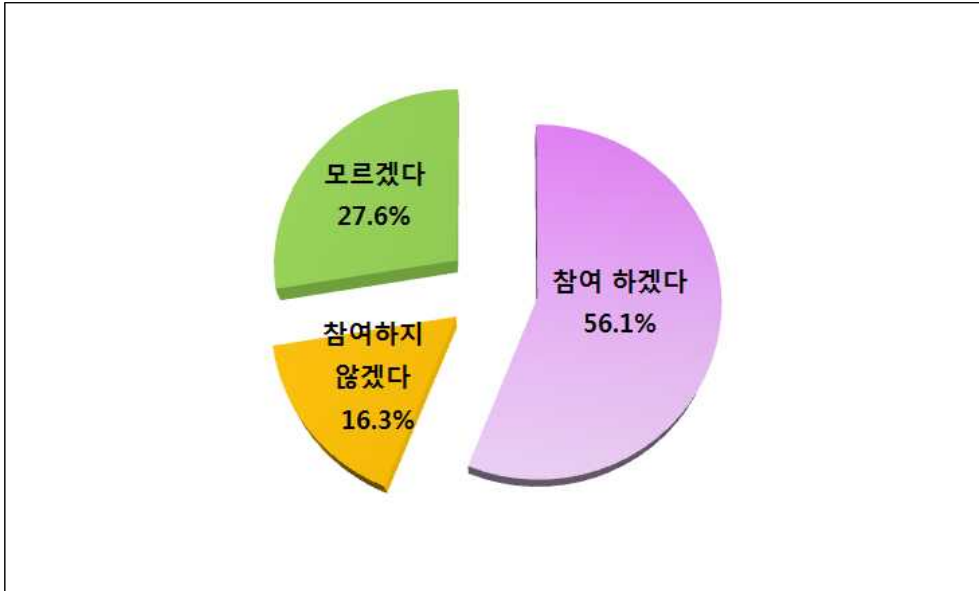
- ‘평생교육(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참여하지 못한다’는 장애인이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8.9%), ‘평생교육 필요성 못느껴서’(11.1%),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10.0%), ‘경제적 문제 때문에’(9.2%)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3-7>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세부)

(단위 : %)

분류	필성을느껴서	시간적여유가없어서	경제적문제때문에	정보가없어서	기관및시설마음들지않아	관심프로그램없어서	교육장소가너무멀어서	주위선편때문에	장애등의건강이유때문에	가족이못다나게해서	기관/시설에서거부해서	편의제공이부족해서	
전체	11.1	18.9	9.2	29.0	1.4	10.0	5.0	2.2	8.1	0.8	0.6	3.6	
지역	제주시 동	12.7	19.5	8.9	27.1	.8	10.2	4.2	2.1	9.3	.8	.4	3.8
	제주시 읍·면	6.5	16.9	11.7	27.3	3.9	5.2	9.1	2.6	9.1	1.3	1.3	5.2
	서귀포시 동	11.1	18.5	7.4	44.4	.0	18.5	.0	.0	.0	.0	.0	.0
	서귀포시 읍·면	10.5	21.1	5.3	36.8	.0	15.8	5.3	5.3	.0	.0	.0	.0
장애 유형	지체	8.1	12.9	4.8	25.8	.0	17.7	6.5	.0	11.3	1.6	.0	11.3
	시각	8.7	21.7	8.7	21.7	4.3	13.0	4.3	4.3	13.0	.0	.0	.0
	청각	11.9	23.7	5.1	33.9	1.7	8.5	3.4	3.4	6.8	.0	.0	1.7
	언어	.0	25.0	25.0	25.0	25.0	.0	.0	.0	.0	.0	.0	.0
	지적	14.3	15.9	6.3	36.5	.0	15.9	3.2	1.6	3.2	1.6	1.6	.0
	뇌병변	4.3	34.8	26.1	17.4	.0	4.3	8.7	4.3	.0	.0	.0	.0
	자폐성	.0	28.6	14.3	21.4	.0	14.3	.0	.0	7.1	7.1	.0	7.1
	정신	9.7	12.9	12.9	32.3	1.6	3.2	6.5	3.2	9.7	.0	1.6	6.5
	신장	26.3	21.1	10.5	21.1	.0	.0	.0	5.3	15.8	.0	.0	.0
중복	16.7	20.0	6.7	26.7	3.3	6.7	10.0	.0	10.0	.0	.0	.0	
장애 등급	1급	16.7	23.6	5.6	18.1	1.4	8.3	2.8	1.4	18.1	1.4	.0	2.8
	2급	8.5	20.6	10.6	28.4	2.1	12.1	5.0	2.1	5.0	.7	.7	4.3
	3급	11.4	15.8	9.6	34.2	.0	10.5	6.1	1.8	6.1	.0	.9	3.5
	4급	9.4	12.5	9.4	37.5	3.1	3.1	6.3	6.3	6.3	3.1	.0	3.1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11.7	12.8	14.9	27.7	3.2	5.3	4.3	3.2	9.6	1.1	2.1	4.3
	차상위	9.7	16.1	9.7	32.3	3.2	9.7	3.2	3.2	6.5	3.2	.0	3.2
	해당없음	11.1	21.8	6.8	29.1	.4	12.0	5.6	1.7	7.7	.4	.0	3.4

2-2)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의향(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림 3-4]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 3-8>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전체)

참여 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N
56.1%	16.3%	27.6%	46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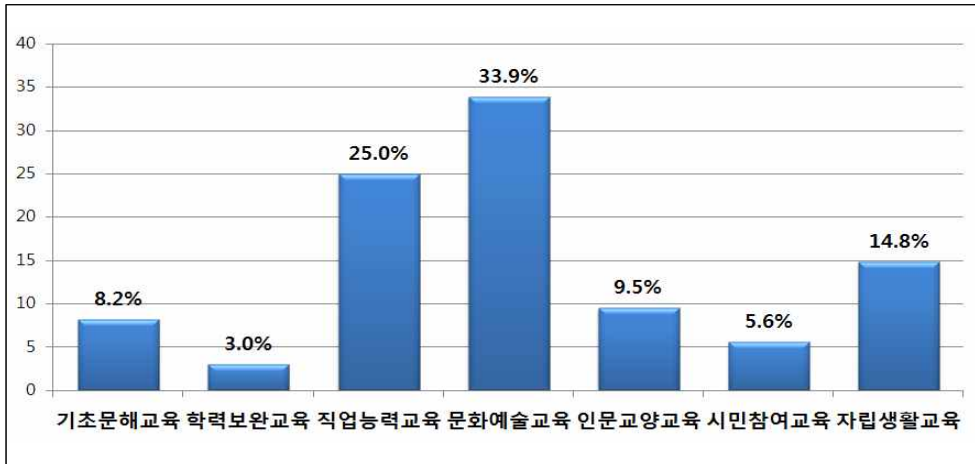
-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은 ①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56.1%), ② 참여의향이 없다(16.3%), ③ 잘 모르겠다(27.6%)는 의견이 조사됨
 -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제주시 동지역(58.8%)과 제주시 읍·면지역(57.5%), 언어장애(100%), 뇌병변장애(90.9%), 3급(63.8%)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표 3-9>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세부)

(단위 : %)

분류		참여 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전체		56.1	16.3	27.6
성별	남성	55.5	20.2	24.4
	여성	57.1	10.4	32.5
지역	제주시 동	58.8	19.1	22.1
	제주시 읍·면	57.5	7.5	35.0
	서귀포시 동	50.0	12.5	37.5
	서귀포시 읍·면	22.2	22.2	55.6
장애 유형	지체	55.9	20.6	23.5
	시각	45.5	36.4	18.2
	청각	50.0	26.5	23.5
	언어	100.0	0.0	0.0
	지적	59.5	2.7	37.8
	뇌병변	90.9	9.1	0.0
	자폐성	71.4	0.0	28.6
	정신	53.1	12.5	34.4
	신장	40.0	60.0	0.0
	중복	47.1	0.0	52.9
장애 등급	1급	54.5	13.6	31.8
	2급	51.4	25.7	23.0
	3급	63.8	5.2	31.0
	4급	55.0	20.0	25.0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50.0	17.9	32.1
	차상위	57.1	21.4	21.4
	해당 없음	58.7	15.1	26.2

2-3) 향후 평생학습 참여의향 프로그램(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2순위)



[그림 3-5]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프로그램⁷⁾

<표 3-10>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프로그램(전체)

(단위 : %, 개)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N
8.2	3.0	25.0	33.9	9.5	5.6	14.8	110

- ‘평생교육(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3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업능력 교육’(25.0%), ‘자립생활 교육’(14.8%), ‘인문교양 교육’(9.5%), ‘기초문해 교육’(8.2%) 등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제시는 제주시 읍·면(37.1%), 지체장애(42.9%), 자폐성장애(42.9%), 4급(44.4%), 차상위(45.5%)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직업능력 교육’ 제시는 서귀포시 동지역(37.5%), 언어장애(50.0%), 해당 없음(27.9%)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7) (1순위 빈도*2점+ 2순위 빈도*1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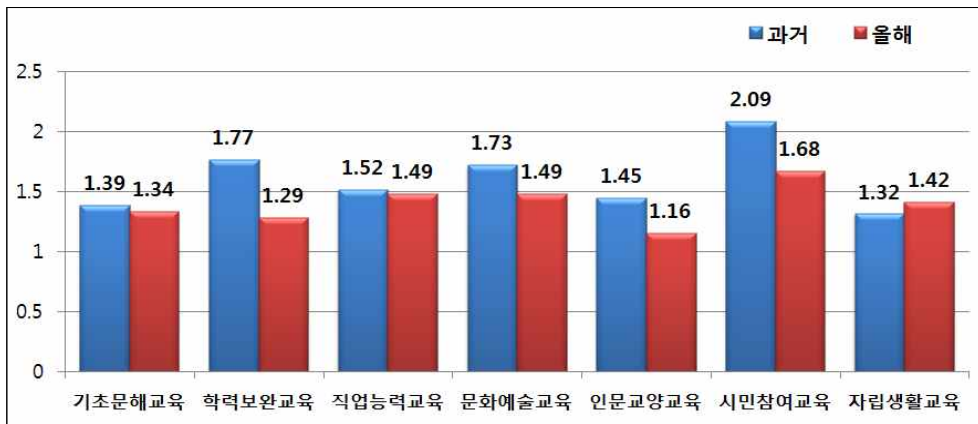
<표 3-11>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프로그램(세부)

(단위 : %)

분류		기초 문해 교육	학력 보완 교육	직업 능력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인문 교양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자립 생활 교육
전체		8.2	3.0	25.0	33.9	9.5	5.6	14.8
성별	남성	7.8	3.4	26.8	36.3	8.4	4.5	12.8
	여성	8.8	2.4	22.4	30.4	11.2	7.2	17.6
지역	제주시 동	10.4	3.3	23.6	33.5	7.5	6.1	15.6
	제주시 읍·면	0.0	3.2	27.4	37.1	14.5	3.2	14.5
	서귀포시 동	0.0	0.0	37.5	29.2	16.7	4.2	12.5
	서귀포시 읍·면	50.0	0.0	0.0	33.3	0.0	16.7	0.0
장애 유형	지체	3.6	0.0	25.0	42.9	10.7	5.4	12.5
	시각	7.7	0.0	15.4	38.5	7.7	0.0	30.8
	청각	8.5	8.5	29.8	31.9	4.3	12.8	4.3
	언어	0.0	0.0	50.0	37.5	0.0	12.5	0.0
	지적	10.0	1.7	20.0	33.3	5.0	8.3	21.7
	뇌병변	7.1	7.1	35.7	25.0	10.7	7.1	7.1
	자폐성	0.0	0.0	21.4	42.9	7.1	0.0	28.6
	정신	13.0	4.3	21.7	34.8	13.0	0.0	13.0
	신장	36.4	0.0	0.0	9.1	45.5	0.0	9.1
중복	0.0	0.0	33.3	28.6	9.5	0.0	28.6	
장애 등급	1급	4.5	0.0	25.4	35.8	6.0	1.5	26.9
	2급	5.7	5.7	23.6	30.2	14.2	8.5	12.3
	3급	15.4	2.9	24.0	33.7	6.7	5.8	11.5
	4급	0.0	0.0	33.3	44.4	11.1	3.7	7.4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12.2	5.4	18.9	31.1	8.1	6.8	17.6
	차상위	9.1	0.0	18.2	45.5	18.2	4.5	4.5
	해당 없음	6.7	2.4	27.9	33.7	9.1	5.3	14.9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주요현황

1) 최근 2년간(2016~2017년) 참여 프로그램 수와 2018년 참여 프로그램 수



[그림 3-6] 최근 2년간(2016~2017) 및 2018년도의 참여 프로그램 수

<표 3-12> 최근 2년간(2016~2017) 및 2018년도의 참여 프로그램 수

(단위 : 개, 회)

구분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과거	올해	과거	올해	과거	올해	과거	올해	과거	올해	과거	올해	과거	올해
사례수	76	44	22	14	56	37	157	167	69	74	66	63	65	64
평균	1.39	1.34	1.77	1.29	1.52	1.49	1.73	1.49	1.45	1.16	2.09	1.68	1.32	1.42
최소값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최대값	5	3	10	4	5	6	10	5	6	5	10	11	5	6

- ‘기초문해 교육’은 과거(1.39회)와 올해(1.34회) 프로그램 수가 각각 비슷했고, ‘학력보완’은 과거(1.77회)에 비해 올해(1.29회) 약간 감소함. ‘직업능력’은 과거(1.52회)와 올해(1.49회)와 비슷, ‘문화예술’은 과거(1.73회)에 비해 올해(1.49회) 약간 감소 등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과거와 올해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3-1) 참여 프로그램 주요 시간대

<표 3-13>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요 주간 시간대

(단위 : %)

구분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평일 새벽/아침	0.0	5.3	0.0	0.0	0.0	0.0	0.0
평일 오전	58.9	31.6	32.2	36.5	46.9	24.6	27.3
평일 오후	35.6	42.1	52.5	43.9	43.2	63.8	57.6
평일 저녁	4.1	21.1	13.6	6.3	7.4	7.2	6.1
주말 오전	0.0	0.0	1.7	5.8	0.0	4.3	7.6
주말 오후	1.4	0.0	0.0	7.4	2.5	0.0	1.5

- 장애인들이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요 수강시간대’를 조사한 결과, ①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평일 오전(58.9%)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② 학력보완 교육은 주로 평일 오후(42.1%), ③ 직업능력 교육은 평일 오후(52.5%), ④ 문화예술 교육은 평일 오후(43.9%), ⑤ 인문교양 교육은 주로 평일 오전(46.9%)과 평일 오후(43.2%)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⑥ 시민참여 교육은 주로 평일 오후(63.8%), ⑦ 자립생활 교육은 주로 평일 오후(57.6%)에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시간대는 ‘평일 오후’인 것으로 나타남

2) 참여 프로그램 학습비 부담여부 및 금액

<표 3-14>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비 부담 여부

(단위 : %)

구 분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본인	1.4	26.3	10.2	8.5	4.9	2.9	6.1
본인의 직계가족	2.7	10.5	5.1	5.9	1.2	0.0	9.1
본인의 직장	1.4	0.0	0.0	0.5	1.2	1.4	1.5
일부 부담	5.5	10.5	6.8	11.2	6.2	2.9	7.6
무료	89.0	52.6	78.0	73.9	86.4	92.8	75.8

- 장애인들이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학습비 부담여부’를 조사한 결과, ①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무료(89.0%)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② 학력보완 교육은 무료 52.6%, 본인 부담 26.3%이었음. ③ 직업능력 교육은 무료 78.0%, ④ 문화예술 교육은 무료 73.9%, ⑤ 인문교양 교육은 무료 86.4%, ⑥ 시민참여 교육은 무료 92.8%, ⑦ 자립생활 교육은 무료 75.8%로서 대부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학습비는 무료로서 본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5>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비 부담 정도

(단위 : 만원)

구분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사례수	4	5	13	37	6	2	8
평균	4.0	20.6	11.1	9.6	21.7	1.8	23.4
최소값	2	5	2	1	5	0.5	3
최대값	6	40	50	150	60	3	50

- 학력보완 교육(20.6만원), 인문교양 교육(21.7만원), 자립생활 교육(23.4만원)을 보임

2-1)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표 3-16>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단위 : %)

구분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매우 불만족	1.4	5.3	0.0	1.6	1.2	0.0	0.0
불만족	2.7	0.0	0.0	1.1	0.0	1.4	1.5
보통	42.5	52.6	35.6	22.9	28.4	21.7	24.6
만족	32.9	31.6	47.5	43.6	55.6	39.1	63.1
매우 만족	20.5	10.5	16.9	30.9	14.8	37.7	10.8
만족 응답	53.4	42.1	64.4	74.5	70.4	76.8	73.9

- 장애인들이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가’를 조사한 결과, ①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만족응답 53.4%이고, ② 학력보완 교육은 만족응답 42.1%, ③ 직업능력 교육은 만족응답 64.4%, ④ 문화예술 교육은 만족응답 74.5%, ⑤ 인문교양 교육은 만족응답 70.4%, ⑥ 시민참여 교육은 만족응답 76.8%, ⑦ 자립생활 교육은 만족응답 73.9%로 나타남

2-2) 참여 프로그램 중도포기 여부

<표 3-17>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도포기 여부

(단위 : %, 명)

구분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예	4.1	5.3	3.4	8.5	11.1	8.7	3.1
아니오	95.9	94.7	96.6	91.5	88.9	91.3	96.9
중도포기 사유	교육내용	2	1	-	3	3	1
	교육시설	-	-	-	6	3	-
	학습비	-	-	-	8	2	-
	교통편	1	-	-	5	4	2
	건강상	-	-	1	-	1	1
	기타	-	-	-	-	-	1
	N	3	1	1	22	13	6

○ 장애인들이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중 중도포기 경험과 사유’를 조사한 결과, ①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중도포기 4.1%이고, ② 학력보완 교육은 중도포기 5.3%, ③ 직업능력 교육은 중도포기 3.4%, ④ 문화예술 교육은 중도포기 8.5%, ⑤ 인문교양 교육은 중도포기 11.1%, ⑥ 시민참여 교육은 중도포기 8.7%, ⑦ 자립생활 교육은 중도포기 3.1%로 나타남

- 문화예술 교육과 인문교양 교육 프로그램 중도포기 이유로는 ① 교육시설이 불편해서(6명), ②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8명), ③ 교통편이 불편해서(5명) 등인 것으로 조사됨

3)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경험 있는 학습기관

<표 3-18>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경험 있는 학습기관(복수응답)

(단위 : 개, %)

학교 의 평생 교육	학교 부설	학교 형태	사 내 대 학 형 태	원 격 대 학 형 태	사 업 장 부 설	시 민 단 체 부 설	언 론 기 관 부 설	지 식 인 력 개 발 관 련	평 생 학 습 관	도 서 관	박 물 관 · 미 술 관	여 성 관 련 시 설	복 지 관	문 화 원	직 업 훈 련 시 설	주 민 자 치 센 터	기 타 기 관/ 시 설
24	18	85	6	27	10	47	5	11	22	12	7	7	149	7	22	25	115
4.0	3.0	14.2	1.0	4.5	1.7	7.8	.8	1.8	3.7	2.0	1.2	1.2	24.9	1.2	3.7	4.2	19.2

- ‘장애인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과거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습기관’을 조사한 결과, ① 복지관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24.9%), ② 기타 기관/시설 :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장애인단체, 농업기술센터 등(19.2%), ③ 학교형태 : 대안학교, 고등기술학교,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야학(14.2%) 등이 가장 많았고, ④ 시민단체 부설 : 여성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기관(7.8%), ⑤ 원격대학 형태 : 인터넷, 사이버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관(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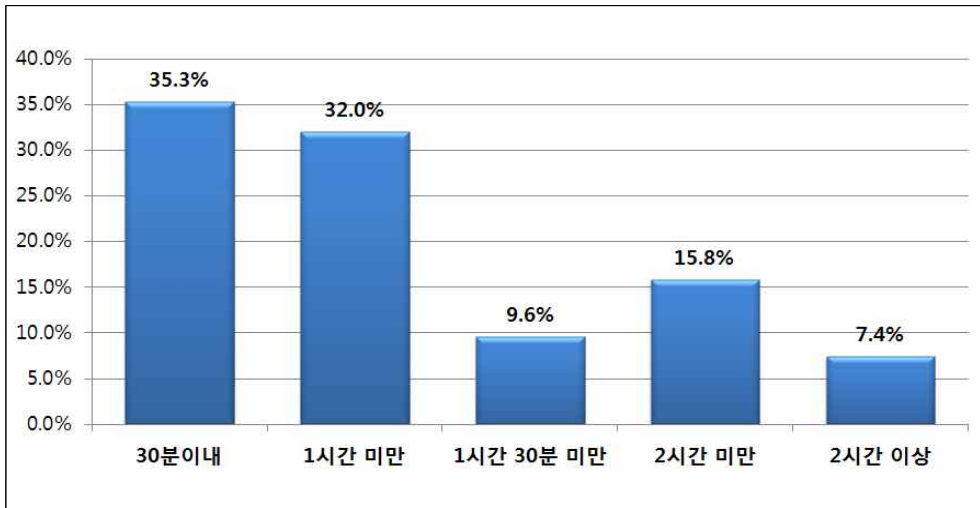
<표 3-19> 현재 이용, 이용경험 있는 학습기관(복수응답)

(단위 : %)

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전체		4.0	3.0	14.2	1.0	4.5	1.7	7.8	.8	1.8	3.7	2.0	1.2	1.2	24.9	1.2	3.7	4.2	19.2
지역	제주시 동	3.6	3.6	14.1	1.0	4.9	1.5	5.3	1.2	1.9	4.1	1.9	1.5	.5	25.2	1.7	3.6	4.6	19.7
	제주시 읍·면	5.6	2.1	17.4	1.4	2.1	2.1	13.9	.0	1.4	2.1	2.1	.7	2.1	23.6	.0	3.5	3.5	16.7
	서귀포시 동	3.1	.0	6.3	.0	12.5	3.1	9.4	.0	.0	3.1	.0	.0	3.1	28.1	.0	3.1	.0	28.1
	서귀포시 읍·면	.0	.0	.0	.0	.0	.0	18.2	.0	9.1	9.1	9.1	.0	9.1	18.2	.0	9.1	9.1	9.1
장애 유형	지체	2.8	2.1	10.5	1.4	5.6	1.4	9.8	2.1	2.8	2.8	1.4	2.1	2.1	27.3	1.4	2.1	4.9	17.5
	시각	2.9	5.9	5.9	2.9	2.9	2.9	.0	.0	2.9	.0	2.9	2.9	.0	58.8	.0	2.9	.0	5.9
	청각	5.9	2.0	5.9	.0	2.0	.0	.0	.0	3.9	.0	3.9	.0	2.0	39.2	2.0	3.9	7.8	21.6
	언어	.0	25.0	.0	.0	.0	.0	.0	.0	.0	25.0	.0	.0	.0	50.0	.0	.0	.0	.0
	지적	7.2	3.6	22.9	1.2	1.2	2.4	4.8	.0	2.4	4.8	3.6	1.2	1.2	14.5	1.2	6.0	6.0	15.7
	뇌병변	1.1	1.1	17.6	1.1	7.4	.0	13.1	.6	.0	4.0	1.1	.0	1.1	23.3	1.1	2.3	2.3	22.7
	자폐성	16.1	3.2	16.1	.0	.0	.0	3.2	.0	3.2	6.5	.0	.0	.0	9.7	.0	3.2	.0	38.7
	정신	5.9	11.8	5.9	.0	5.9	11.8	.0	.0	5.9	.0	5.9	11.8	.0	11.8	.0	17.6	5.9	.0
	신장	3.8	7.7	3.8	.0	3.8	7.7	15.4	.0	.0	11.5	.0	.0	.0	23.1	.0	7.7	11.5	3.8
	중복	2.9	2.9	23.5	.0	2.9	2.9	2.9	2.9	.0	2.9	2.9	.0	.0	11.8	2.9	2.9	2.9	32.4
장애 등급	1급	6.7	1.5	18.0	.5	2.1	.5	6.2	1.5	1.5	2.6	1.0	1.0	1.5	23.7	.5	2.1	3.6	25.3
	2급	4.0	4.0	15.0	1.3	4.0	2.2	7.5	.9	1.3	4.4	2.2	.9	.9	22.6	2.2	3.5	3.5	19.5
	3급	1.7	2.5	10.1	.8	5.9	2.5	11.8	.0	3.4	3.4	3.4	.8	.8	26.9	.0	5.0	6.7	14.3
	4급	.0	5.0	6.7	1.7	11.7	1.7	6.7	.0	1.7	5.0	1.7	3.3	1.7	33.3	1.7	6.7	3.3	8.3
생활 정도	기초 생활수급	4.0	2.4	12.7	.8	4.8	2.4	7.1	.8	.8	4.8	2.4	1.6	.0	27.0	1.6	4.8	4.8	17.5
	차상위	2.2	4.3	10.9	.0	10.9	2.2	8.7	2.2	.0	2.2	.0	2.2	.0	26.1	.0	2.2	4.3	21.7
	해당 없음	4.2	3.0	15.0	1.2	3.7	1.4	8.0	.7	2.3	3.5	2.1	.9	1.6	24.1	1.2	3.5	4.0	19.4

주) : ① 학교의 평생교육, ② 학교 부설, ③ 학교형태, ④ 사내대학 형태, ⑤ 원격대학형태, ⑥ 사업장 부설, ⑦ 시민단체 부설, ⑧ 언론기관 부설, ⑨ 지식인력개발 관련, ⑩ 제주시,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⑪ 도서관, ⑫ 박물관·미술관, ⑬ 여성관련 시설, ⑭ 복지관, ⑮ 문화원, ⑯ 직업훈련 시설, ⑰ 주민자치센터, ⑱ 기타 기관/시설

4) 프로그램 운영기관까지 이동시간



[그림 3-7] 프로그램 운영기관 까지 이동시간

<표 3-20> 프로그램 운영기관 까지 이동시간(전체)

(단위 : %, 명)

30분 이내	1시간 미만	1시간 30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N
35.3	32.0	9.6	15.8	7.4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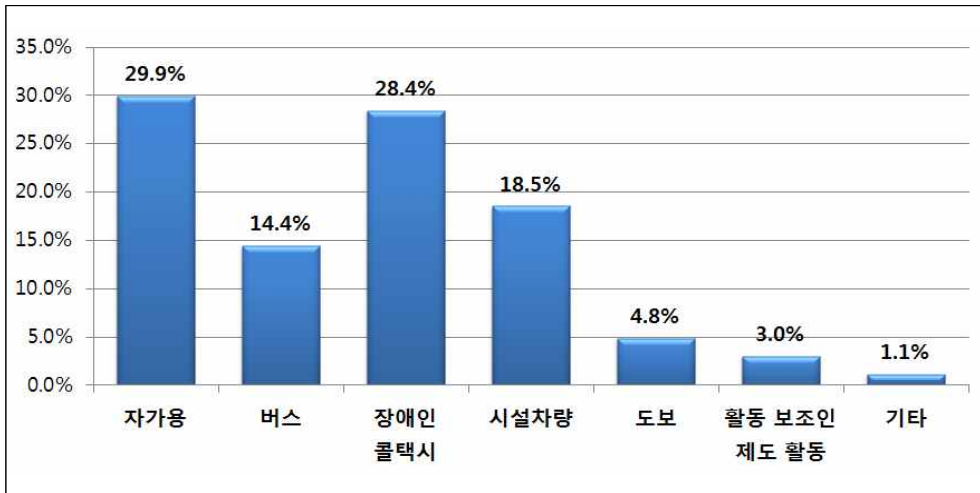
-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관까지 대략적인 이동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① 30분 이내(35.3%), ② 1시간 미만(32.0%)로 나타났고, ③ 1시간 30분 미만(9.6%), ④ 2시간 미만(15.8%), ⑤ 2시간 이상(7.4%)로 조사됨
 - ‘30분 이내’ 소요는 서귀포시 동(70.6%), 중복장애(57.9%), 2급(40.7%), 차상위(43.5%)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 ‘2시간 이상’ 소요는 서귀포시 동(17.6%), 정신장애(16.7%), 신장장애(15.4%), 2급(9.9%)에서 일부 나타남

<표 3-21> 프로그램 운영기관 까지 이동시간(세부)

(단위 : %)

분류		30분 이내	1시간 미만	1시간 30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체		35.3	32.0	9.6	15.8	7.4
지역	제주시 동	34.4	36.4	10.8	11.8	6.7
	제주시 읍·면	26.8	25.0	5.4	35.7	7.1
	서귀포시 동	70.6	5.9	5.9	0.0	17.6
	서귀포시 읍·면	50.0	25.0	25.0	0.0	0.0
장애 유형	지체	40.0	29.2	7.7	12.3	10.8
	시각	20.8	62.5	12.5	4.2	0.0
	청각	43.3	23.3	13.3	16.7	3.3
	언어	0.0	0.0	100.0	0.0	0.0
	지적	47.1	35.3	8.8	0.0	8.8
	뇌병변	20.0	21.7	10.0	41.7	6.7
	자폐성	36.8	42.1	5.3	5.3	10.5
	정신	50.0	0.0	16.7	16.7	16.7
	신장	23.1	53.8	0.0	7.7	15.4
	중복	57.9	31.6	5.3	5.3	0.0
장애 등급	1급	36.5	36.5	9.6	9.6	7.7
	2급	40.7	25.3	6.6	17.6	9.9
	3급	26.5	28.6	14.3	24.5	6.1
	4급	28.6	42.9	10.7	17.9	0.0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33.9	19.6	21.4	16.1	8.9
	차상위	43.5	30.4	8.7	17.4	0.0
	해당 없음	34.7	35.8	6.2	15.5	7.8

5)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수단



[그림 3-8]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수단

<표 3-22>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수단(전체)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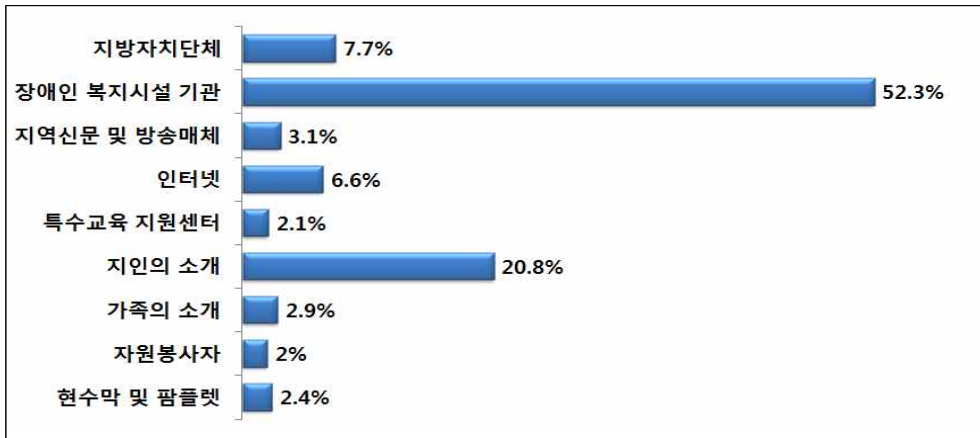
자가용	버스	장애인 콜택시	시설차량	도보	활동 보조인 제도 활동	기타	N
29.9	14.4	28.4	18.5	4.8	3.0	1.1	271

- ‘장애인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어떤 것인지’ 조사한 결과, ① 자가용(29.9%), ② 장애인 콜택시(28.4%)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③ 시설차량(18.5%), ④ 버스(14.4%), ⑤ 도보(4.8%) 순으로 나타났다. ⑥ 활동 보조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3.0%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됨
- ‘자가용’ 이용은 서귀포시 동(58.8%), 서귀포시 읍·면(50.0%), 자폐성장애(89.5%), 2급(39.6%)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제주시 읍·면(46.4%), 뇌병변장애(68.3%), 1급(34.0%), 기초생활수급(38.2%), 차상위(39.1%)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표 3-23>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수단(세부)

분류		자가용	버스	장애인콜택시	시설차량	도보	활동보조인제도활동	기타
전체		29.9	14.4	28.4	18.5	4.8	3.0	1.1
성별	남성	28.8	10.6	32.6	17.4	6.1	3.8	0.8
	여성	30.9	18.0	24.5	19.4	3.6	2.2	1.4
지역	제주시 동	28.9	16.5	25.8	18.0	6.7	3.1	1.0
	제주시 읍·면	23.2	7.1	46.4	21.4	0.0	0.0	1.8
	서귀포시 동	58.8	11.8	5.9	11.8	0.0	11.8	0.0
	서귀포시 읍·면	50.0	25.0	0.0	25.0	0.0	0.0	0.0
장애 유형	지체	37.5	4.7	48.4	7.8	0.0	1.6	0.0
	시각	12.5	4.2	0.0	83.3	0.0	0.0	0.0
	청각	40.0	40.0	0.0	10.0	10.0	0.0	0.0
	언어	0.0	0.0	0.0	0.0	100.0	0.0	0.0
	지적	20.6	23.5	2.9	29.4	14.7	8.8	0.0
	뇌병변	10.0	6.7	68.3	3.3	1.7	6.7	3.3
	자폐성	89.5	5.3	5.3	0.0	0.0	0.0	0.0
	정신	0.0	0.0	0.0	66.7	33.3	0.0	0.0
	신장	53.8	15.4	23.1	0.0	0.0	0.0	7.7
중복	26.3	42.1	0.0	31.6	0.0	0.0	0.0	
장애 등급	1급	24.3	14.6	34.0	21.4	1.0	4.9	0.0
	2급	39.6	12.1	28.6	11.0	5.5	2.2	1.1
	3급	28.6	14.3	26.5	20.4	8.2	2.0	0.0
	4급	21.4	21.4	10.7	28.6	10.7	0.0	7.1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12.7	21.8	38.2	18.2	5.5	1.8	1.8
	차상위	30.4	13.0	39.1	4.3	8.7	0.0	4.3
	해당 없음	34.7	12.4	24.4	20.2	4.1	3.6	0.5

6) 평생학습 관련 정보 취득 경로



[그림 3-9] 평생학습 관련 정보 취득 경로8)(복수응답)

<표 3-24> 평생학습 관련 정보 취득 경로(전체)

(단위 : %, 명)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 시설 기관	지역 신문 및 방송 매체	인터넷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지인의 소개	가족의 소개	자원 봉사자	현수막 및 팸플릿	N
7.7	52.3	3.1	6.6	2.1	20.8	2.9	2.0	2.4	211

- ‘장애인들이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지’ 조사한 결과, ① 장애인 복지시설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5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② 지인의 소개(20.8%), ③ 지방자치단체(시청, 동사무소)(7.7%), ④ 인터넷(6.6%), ⑤ 지역신문 및 방송(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을 통한 정보 취득’은 서귀포시 읍·면(60.0%), 시각장애(63.2%), 3급(57.2%), 기초생활수급(60.9%)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 ‘지인의 소개’는 제주시 읍·면(28.8%), 서귀포시 읍·면(30.0%), 자폐성장애(34.0%), 2급(23.1%), 해당 없음(22.4%)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8) (1순위 빈도*2점+2순위 빈도*1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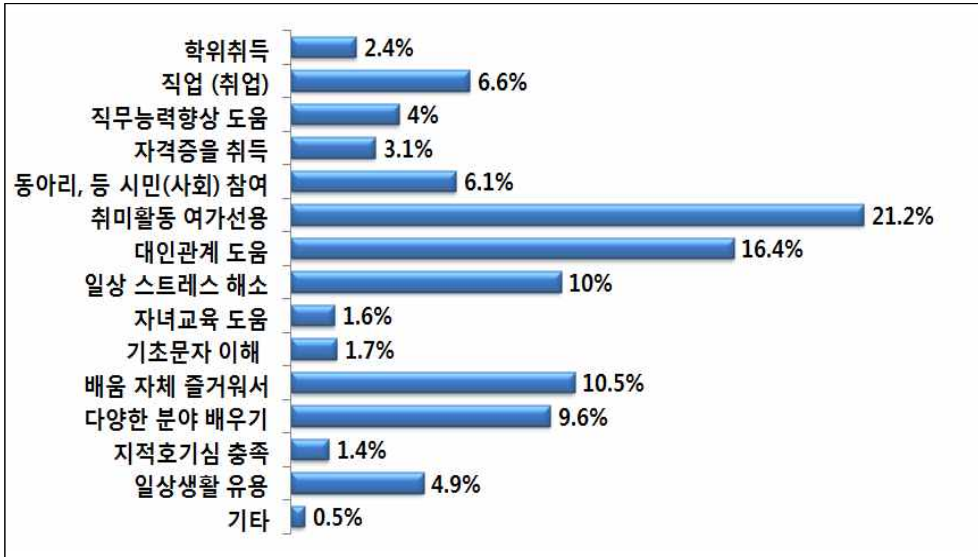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 3-25> 평생학습 관련 정보 취득 경로(복수응답)(세부)

(단위 : %)

분류		지방 자치 단체	장애 인 복지 시설 기관	지역 신문 및 방송 매체	인터 넷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지인 소개	가족 소개	자원 봉사 자	현수 막 및 팜플 렛
전체		7.7	52.3	3.1	6.6	2.1	20.8	2.9	2.0	2.4
성별	남성	7.6	51.2	4.3	6.5	2.2	18.7	4.9	1.4	3.3
	여성	7.8	53.4	1.8	6.8	2.1	22.9	1.0	2.6	1.6
지역	제주시 동	7.8	51.8	2.8	7.4	2.6	19.2	3.5	2.0	2.8
	제주시 읍·면	7.5	52.5	2.5	3.1	1.3	28.8	0.0	2.5	1.9
	서귀포시 동	8.7	56.5	8.7	10.9	0.0	10.9	4.3	0.0	0.0
	서귀포시 읍·면	0.0	60.0	0.0	0.0	0.0	30.0	10.0	0.0	0.0
장애 유형	지체	9.4	49.2	5.5	8.3	0.6	17.7	2.2	2.2	5.0
	시각	2.9	63.2	2.9	4.4	0.0	22.1	0.0	4.4	0.0
	청각	14.6	54.9	4.9	4.9	1.2	17.1	0.0	0.0	2.4
	언어	40.0	40.0	0.0	0.0	0.0	0.0	0.0	0.0	20.0
	지적	4.4	47.8	0.0	6.7	5.6	25.6	7.8	2.2	0.0
	뇌병변	6.8	55.1	1.7	6.3	1.7	22.2	3.4	0.6	2.3
	자폐성	1.9	50.9	1.9	1.9	9.4	34.0	0.0	0.0	0.0
	정신	0.0	53.3	6.7	26.7	0.0	0.0	0.0	13.3	0.0
	신장	18.2	36.4	6.1	18.2	0.0	15.2	0.0	6.1	0.0
중복	4.0	56.0	0.0	0.0	2.0	22.0	10.0	2.0	4.0	
장애 등급	1급	3.8	54.5	3.8	4.5	3.1	21.3	4.2	1.4	3.1
	2급	9.8	47.5	3.9	8.6	2.0	23.1	2.4	1.2	1.6
	3급	8.0	57.2	0.0	6.5	1.4	15.9	2.9	4.3	3.6
	4급	14.9	51.4	2.7	8.1	0.0	20.3	0.0	2.7	0.0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7.3	60.9	3.3	5.3	0.0	17.9	2.0	2.0	1.3
	차상위	7.5	58.2	3.0	9.0	3.0	14.9	0.0	1.5	3.0
	해당 없음	7.9	49.2	3.0	6.7	2.6	22.4	3.6	2.1	2.6

7)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목적



[그림 3-10]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목적9)(복수응답)

<표 3-26>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목적(복수응답)(전체)

(단위 : %)

학위 취득	직업 (취업)	직무 능력 향상 도움	자격 증을 취득	동아 리, 시민 (사회) 참여	취미 활동 여가 선용	대인 관계 도움	일상 스트 레스 해소	자녀 교육 도움	기초 문자 이해	배움 자체 즐거 워서	다양 한 분야 배우 기	지적 호기 심 충족	일상 생활 유용	기타	N
2.4	6.6	4.0	3.1	6.1	21.2	16.4	10.0	1.6	1.7	10.5	9.6	1.4	4.9	0.5	257

- ①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21.2%), ② 대인관계 형성 도움(16.4%), ③ 배움 그 자체가 즐거워서(10.5%), ④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 ⑤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9.6%), ⑥ 직업(취업)을 위해서 (6.6%), ⑦ 동아리 모임 등 시민(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6.1%) 순으로 나타남

9) (1순위 빈도*2점+ 2순위 빈도*1점)/100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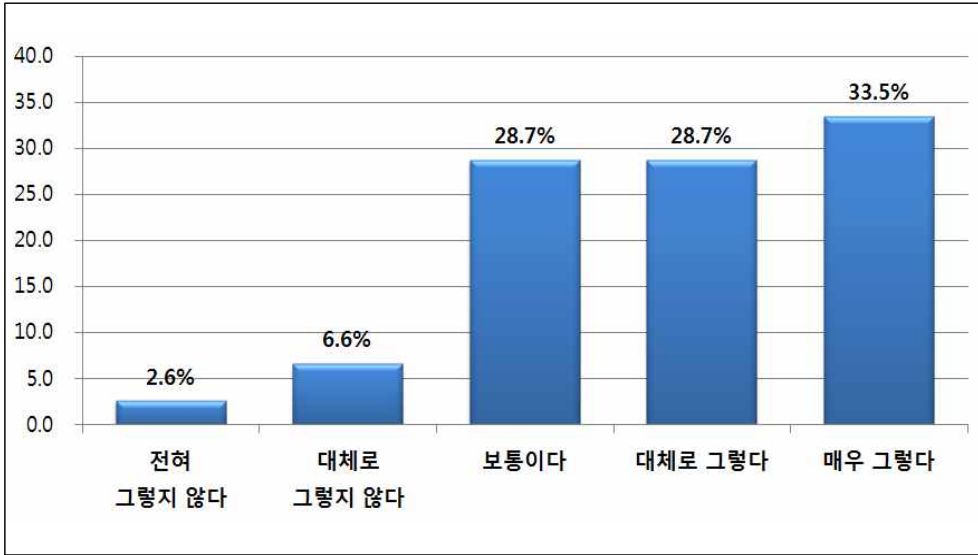
<표 3-27>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목적(복수응답)(세부)

(단위 : %)

분류	학위취득	직업(취업)	직무능력향상 도움	자격증 취득	동아리 등 사회참여	취미활동 여가선용	대인관계 도움	일상스트레스 해소	자녀교육도움	기초문자이해	배자즐거워 움체거서	다양한 분야배우기	지적호기심 충족	일상생활 유용	기타	
																전체
지역	제주시 동	2.4	6.3	3.8	3.5	7.6	22.9	14.1	10.9	1.4	2.1	10.2	7.8	1.7	4.5	0.7
	제주시 읍·면	1.8	8.0	4.3	1.2	1.8	14.7	27.0	6.7	1.8	1.2	8.0	17.8	0.6	4.9	0.0
	서귀포 동	4.0	4.0	0.0	6.0	4.0	20.0	12.0	12.0	4.0	0.0	22.0	4.0	0.0	8.0	0.0
	서귀포 읍·면	0.0	16.7	25.0	0.0	0.0	33.3	0.0	0.0	0.0	0.0	8.3	8.3	0.0	8.3	0.0
장애 유형	지체	4.1	5.7	4.1	1.6	9.8	21.2	15.5	5.7	1.0	1.6	11.9	8.8	1.6	7.3	0.0
	시각	0.0	1.4	0.0	1.4	5.6	36.1	8.3	13.9	0.0	1.4	16.7	9.7	5.6	0.0	0.0
	청각	2.3	8.0	9.2	13.8	3.4	17.2	13.8	18.4	0.0	0.0	9.2	2.3	0.0	2.3	0.0
	언어	0.0	0.0	40.0	0.0	0.0	20.0	0.0	0.0	0.0	0.0	40.0	0.0	0.0	0.0	0.0
	지적	2.9	8.7	2.9	1.9	2.9	16.5	16.5	8.7	2.9	5.8	13.6	3.9	1.9	8.7	1.9
	뇌병변	1.7	11.3	5.1	1.7	8.5	10.2	25.4	9.0	0.0	1.7	4.0	18.6	0.0	2.8	0.0
	자폐성	0.0	3.5	0.0	0.0	5.3	45.6	8.8	14.0	8.8	0.0	8.8	5.3	0.0	0.0	0.0
	정신	11.1	11.1	11.1	0.0	0.0	0.0	33.3	0.0	0.0	0.0	11.1	16.7	5.6	0.0	0.0
	신장	0.0	2.9	0.0	0.0	5.7	25.7	11.4	5.7	0.0	2.9	25.7	5.7	2.9	11.4	0.0
중복	1.9	0.0	0.0	7.4	0.0	31.5	11.1	14.8	5.6	0.0	3.7	11.1	0.0	9.3	3.7	
장애 등급	1급	1.3	5.5	2.9	2.0	7.8	19.9	15.3	13.4	2.6	2.6	9.1	9.8	1.6	4.9	1.3
	2급	2.6	8.2	2.6	4.1	5.2	20.8	19.3	8.6	1.1	2.2	9.7	9.7	0.7	5.2	0.0
	3급	4.2	6.9	8.3	4.2	3.5	19.4	15.3	7.6	1.4	0.0	12.5	9.7	1.4	5.6	0.0
	4급	2.5	4.9	4.9	2.5	7.4	30.9	12.3	6.2	0.0	0.0	14.8	8.6	2.5	2.5	0.0
생활 정도	기초생활 수급	1.2	7.9	4.3	4.3	6.1	15.9	18.3	11.0	0.0	0.0	11.6	11.0	2.4	6.1	0.0
	차상위	3.1	10.8	0.0	0.0	7.7	21.5	16.9	7.7	0.0	1.5	13.8	9.2	1.5	6.2	0.0
	해당 없음	2.6	5.8	4.4	3.1	5.9	22.7	15.7	10.0	2.3	2.3	9.8	9.3	1.0	4.4	0.7

8)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학습환경 정도

8-1) 교육장소 접근성 정도



[그림 3-11] 교육장소 접근성 평가

<표 3-28> 교육장소 접근성 평가(전체)

(단위 : %,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 척도)	N
2.6	6.6	28.7	28.7	33.5	62.1	3.84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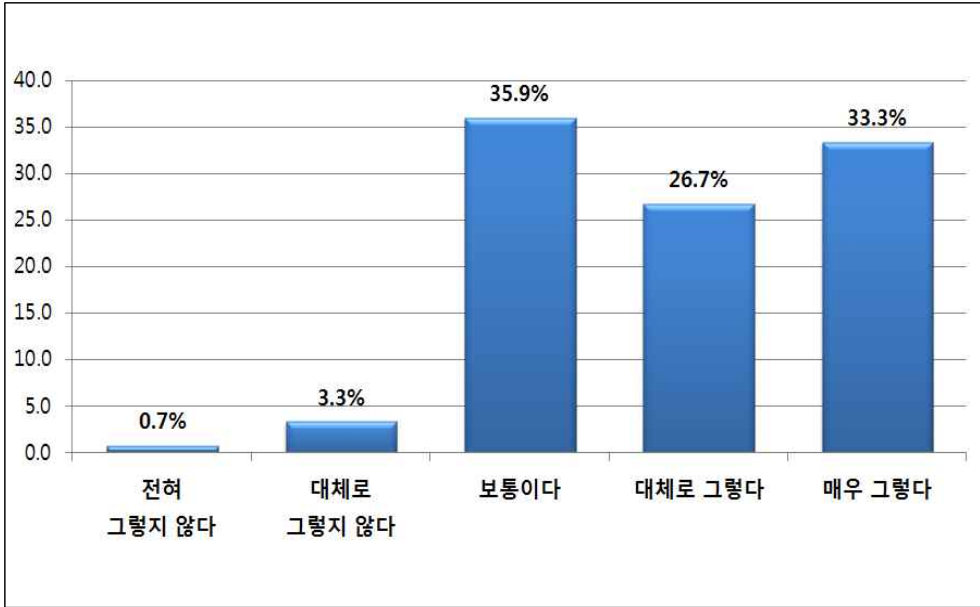
- 현재 수강하거나 수강한 적이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교육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지’에 대한 결과는, ‘긍정적인 평가’는 62.1%(평균 3.84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9.2%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동(94.1%), 시각장애(91.7%), 언어장애(100%), 1급(64.4%), 해당 없음(64.9%)에서 가장 많음

<표 3-29> 교육장소 접근성 평가(세부)

(단위 : %)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2.6	6.6	28.7	28.7	33.5	62.1	3.84
지역	제주시 동	2.0	7.1	27.0	28.1	35.7	63.8	3.88
	제주시 읍·면	5.5	7.3	41.8	23.6	21.8	45.5	3.49
	서귀포시 동	0.0	0.0	5.9	52.9	41.2	94.1	4.35
	서귀포시 읍·면	0.0	0.0	25.0	25.0	50.0	75.0	4.25
장애 유형	지체	3.1	7.7	21.5	35.4	32.3	67.7	3.86
	시각	0.0	0.0	8.3	20.8	70.8	91.7	4.63
	청각	0.0	10.0	40.0	30.0	20.0	50.0	3.60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8.6	5.7	8.6	28.6	48.6	77.1	4.03
	뇌병변	0.0	3.3	53.3	26.7	16.7	43.3	3.57
	자폐성	5.3	15.8	10.5	21.1	47.4	68.4	3.89
	정신	16.7	0.0	33.3	50.0	0.0	50.0	3.17
	신장	0.0	0.0	50.0	25.0	25.0	50.0	3.75
중복	0.0	15.8	26.3	21.1	36.8	57.9	3.79	
장애 등급	1급	2.9	12.5	20.2	27.9	36.5	64.4	3.83
	2급	1.1	2.2	34.1	28.6	34.1	62.6	3.92
	3급	4.1	4.1	32.7	30.6	28.6	59.2	3.76
	4급	3.6	3.6	35.7	28.6	28.6	57.1	3.75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0.0	5.4	41.1	26.8	26.8	53.6	3.75
	차상위	4.5	9.1	27.3	22.7	36.4	59.1	3.77
	해당 없음	3.1	6.7	25.3	29.9	35.1	64.9	3.87

8-2) 교육기관의 시설 이용의 편리성 정도



[그림 3-12] 교육기관 시설 및 설비 이용의 편리성 평가

<표 3-30> 교육기관 시설 및 설비 이용의 편리성 평가(전체)

(단위 : %,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0.7	3.3	35.9	26.7	33.3	60.0	3.89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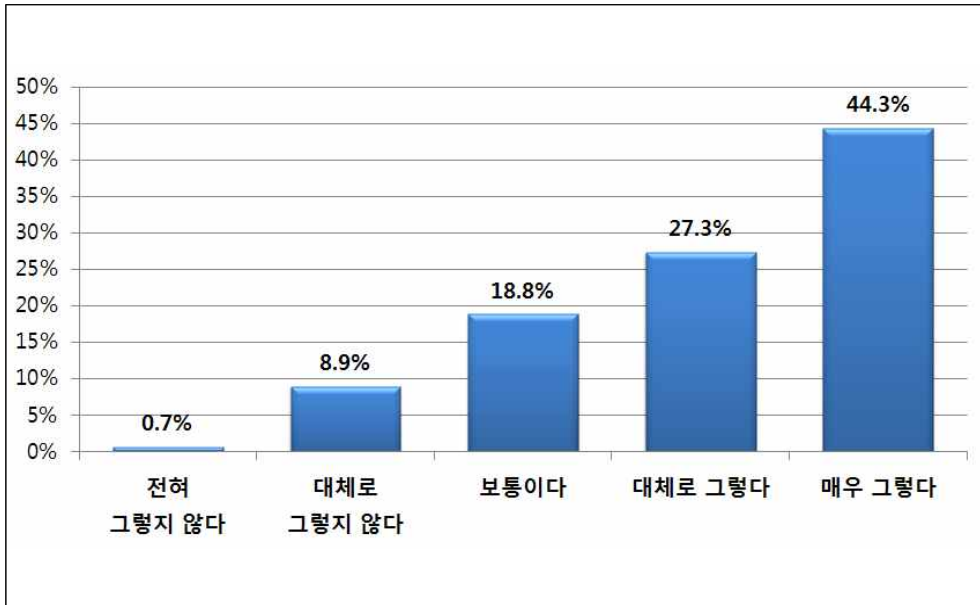
- 교육기관 시설 및 설비 이용의 편리성은 ‘긍정적인 평가’는 60.0%(평균 3.89점, 5점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4.0%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100%), 언어장애(100%), 1급(63.1%), 2급(63.3%), 해당없음(63.0%)에서 가장 많음

<표 3-31> 교육기관 시설 및 설비 이용의 편리성 평가(세부)

(단위 : %)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 체		0.7	3.3	35.9	26.7	33.3	60.0	3.89
지역	제주시 동	1.0	3.6	34.5	26.8	34.0	60.8	3.89
	제주시 읍·면	0.0	1.8	49.1	20.0	29.1	49.1	3.76
	서귀포시 동	0.0	5.9	17.6	41.2	35.3	76.5	4.06
	서귀포시 읍·면	0.0	0.0	0.0	50.0	50.0	100.0	4.50
장애 유형	지체	0.0	7.9	25.4	36.5	30.2	66.7	3.89
	시각	0.0	0.0	12.5	16.7	70.8	87.5	4.58
	청각	0.0	3.3	40.0	26.7	30.0	56.7	3.83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5.7	5.7	11.4	37.1	40.0	77.1	4.00
	뇌병변	0.0	1.7	60.0	21.7	16.7	38.3	3.53
	자폐성	0.0	0.0	26.3	26.3	47.4	73.7	4.21
	정신	0.0	0.0	66.7	33.3	0.0	33.3	3.33
	신장	0.0	0.0	66.7	8.3	25.0	33.3	3.58
중복	0.0	0.0	47.4	10.5	42.1	52.6	3.95	
장애 등급	1급	0.0	3.9	33.0	29.1	34.0	63.1	3.93
	2급	0.0	3.3	33.3	30.0	33.3	63.3	3.93
	3급	4.1	4.1	40.8	18.4	32.7	51.0	3.71
	4급	0.0	0.0	46.4	21.4	32.1	53.6	3.86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0.0	3.6	41.1	25.0	30.4	55.4	3.82
	차상위	0.0	0.0	54.5	13.6	31.8	45.5	3.77
	해당 없음	1.0	3.6	32.3	28.6	34.4	63.0	3.92

8-3) 교육훈련기관 직원의 친절성 정도



[그림 3-13] 교육기관 직원 친절성 평가

<표 3-32> 교육기관 직원 친절성 평가(전체)

(단위 : %,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0.7	8.9	18.8	27.3	44.3	71.6	4.06	272

○ 교육훈련기관 직원 친절성은 ‘긍정적인 평가’는 71.6%(평균 4.06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9.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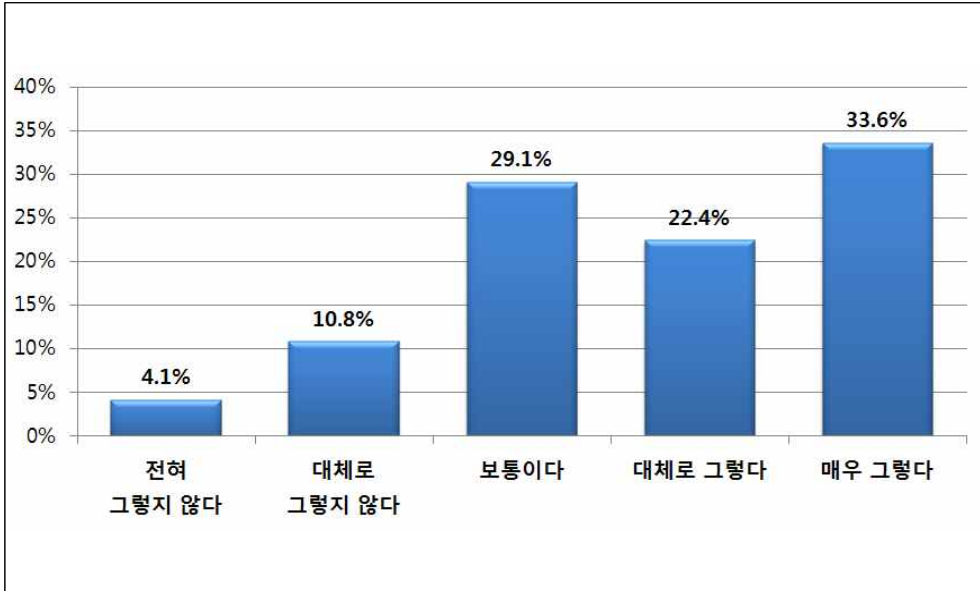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100%), 시각장애(100%), 언어장애(100%), 1급(80.6%), 생활정도의 해당 없음(75.1%)에서 가장 많음

<표 3-33> 교육기관 직원 친절성 평가(세부)

(단위 : %)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0.7	8.9	18.8	27.3	44.3	71.6	4.06
지역	제주시 동	1.0	5.6	20.5	26.7	46.2	72.8	4.11
	제주시 읍·면	0.0	21.8	18.2	23.6	36.4	60.0	3.75
	서귀포시 동	0.0	5.9	5.9	41.2	47.1	88.2	4.29
	서귀포시 읍·면	0.0	0.0	0.0	50.0	50.0	100.0	4.50
장애 유형	지체	1.6	4.7	14.1	34.4	45.3	79.7	4.17
	시각	0.0	0.0	0.0	29.2	70.8	100.0	4.71
	청각	0.0	6.7	30.0	30.0	33.3	63.3	3.90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2.9	5.7	5.7	25.7	60.0	85.7	4.34
	뇌병변	0.0	26.7	30.0	20.0	23.3	43.3	3.40
	자폐성	0.0	0.0	5.3	21.1	73.7	94.7	4.68
	정신	0.0	0.0	50.0	50.0	0.0	50.0	3.50
	신장	0.0	0.0	41.7	16.7	41.7	58.3	4.00
중복	0.0	5.3	21.1	26.3	47.4	73.7	4.16	
장애 등급	1급	0.0	3.9	15.5	28.2	52.4	80.6	4.29
	2급	0.0	9.9	18.7	30.8	40.7	71.4	4.02
	3급	4.1	18.4	22.4	18.4	36.7	55.1	3.65
	4급	0.0	7.1	25.0	28.6	39.3	67.9	4.00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0.0	8.9	28.6	25.0	37.5	62.5	3.91
	차상위	4.5	9.1	22.7	22.7	40.9	63.6	3.86
	해당 없음	0.5	8.8	15.5	28.5	46.6	75.1	4.12

8-4) 프로그램 참여 비용 지원 정도



[그림 3-14] 프로그램 참여 비용 충분한 지원 평가

<표 3-34> 프로그램 참여 비용 충분한 지원 평가(전체)

(단위 : %,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4.1	10.8	29.1	22.4	33.6	56.0	3.71	272

○ 프로그램 참여 비용 충분한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는 56.0% (평균 3.71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14.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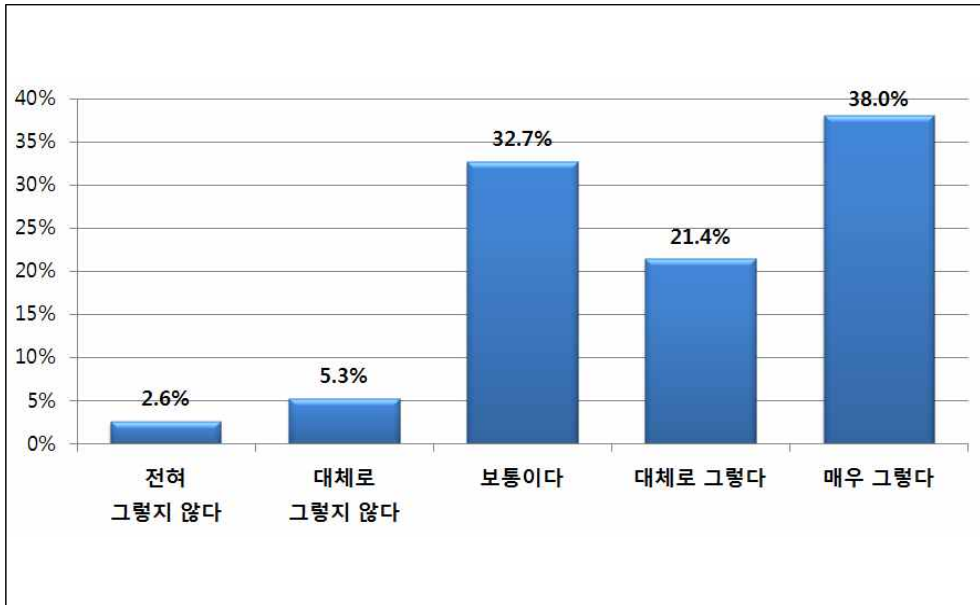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100%), 언어장애(100%), 2급(63.7%), 기초생활수급(58.9%), 생활정도의 해당 없음(57.1%)에서 가장 많음

<표 3-35> 프로그램 참여 비용 충분한 지원 평가(세부)

(단위 : %)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 척도)
전체		4.1	10.8	29.1	22.4	33.6	56.0	3.71
지역	제주시 동	3.1	12.0	25.5	24.0	35.4	59.4	3.77
	제주시 읍·면	9.1	10.9	45.5	16.4	18.2	34.5	3.24
	서귀포시 동	0.0	0.0	23.5	23.5	52.9	76.5	4.29
	서귀포시 읍·면	0.0	0.0	0.0	25.0	75.0	100.0	4.75
장애 유형	지체	4.7	7.8	32.8	32.8	21.9	54.7	3.59
	시각	0.0	13.0	4.3	8.7	73.9	82.6	4.43
	청각	0.0	6.9	27.6	24.1	41.4	65.5	4.00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5.7	17.1	5.7	17.1	54.3	71.4	3.97
	뇌병변	5.1	10.2	49.2	20.3	15.3	35.6	3.31
	자폐성	5.3	10.5	10.5	15.8	57.9	73.7	4.11
	정신	16.7	16.7	16.7	33.3	16.7	50.0	3.17
	신장	0.0	16.7	41.7	25.0	16.7	41.7	3.42
중복	5.3	10.5	47.4	15.8	21.1	36.8	3.37	
장애 등급	1급	3.0	16.8	25.7	24.8	29.7	54.5	3.61
	2급	3.3	4.4	28.6	20.9	42.9	63.7	3.96
	3급	8.3	8.3	35.4	22.9	25.0	47.9	3.48
	4급	3.6	14.3	32.1	17.9	32.1	50.0	3.61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1.8	7.1	32.1	28.6	30.4	58.9	3.79
	차상위	9.5	14.3	38.1	19.0	19.0	38.1	3.24
	해당 없음	4.2	11.5	27.2	20.9	36.1	57.1	3.73

8-5) 프로그램 수강료의 적정성 정도



[그림 3-15] 프로그램 수강료 적정 평가

<표 3-36> 프로그램 수강료 적정 평가(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2.6	5.3	32.7	21.4	38.0	59.4	3.87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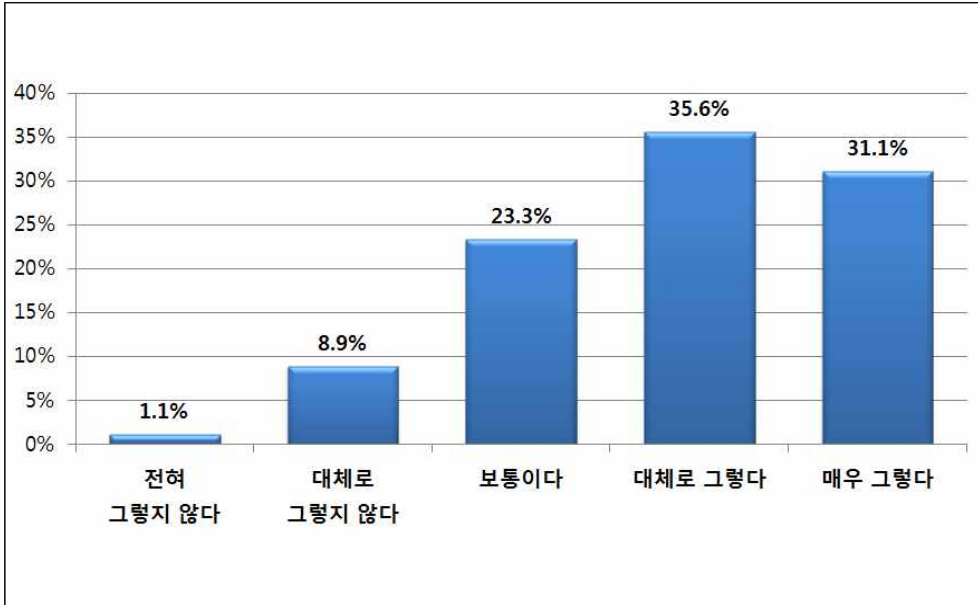
- 프로그램 수강료의 적정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59.4%(평균 3.87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7.9%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75.0%), 언어장애(100%), 1급(63.6%), 2급(63.7%), 기초생활수급(60.7%), 생활정도의 해당 없음(60.1%)에서 가장 많음

<표 3-37> 프로그램 수강료 적정 정도(세부)

(단위 : %)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2.6	5.3	32.7	21.4	38.0	59.4	3.87
성별	남성	3.1	6.2	31.8	21.7	37.2	58.9	3.84
	여성	2.2	4.4	33.6	21.2	38.7	59.9	3.90
지역	제주시 동	2.6	5.3	28.9	20.0	43.2	63.2	3.96
	제주시 읍·면	1.8	5.5	50.9	21.8	20.0	41.8	3.53
	서귀포시 동	0.0	5.9	23.5	35.3	35.3	70.6	4.00
	서귀포시 읍·면	25.0	0.0	0.0	25.0	50.0	75.0	3.75
장애 유형	지체	3.1	6.3	29.7	32.8	28.1	60.9	3.77
	시각	0.0	0.0	4.5	4.5	90.9	95.5	4.86
	청각	0.0	10.7	21.4	28.6	39.3	67.9	3.96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5.7	5.7	14.3	14.3	60.0	74.3	4.17
	뇌병변	3.3	5.0	58.3	16.7	16.7	33.3	3.38
	자폐성	0.0	5.3	10.5	15.8	68.4	84.2	4.47
	정신	16.7	16.7	16.7	33.3	16.7	50.0	3.17
	신장	0.0	0.0	66.7	16.7	16.7	33.3	3.50
중복	0.0	0.0	55.6	22.2	22.2	44.4	3.67	
장애 등급	1급	2.0	7.1	27.3	26.3	37.4	63.6	3.90
	2급	0.0	3.3	33.0	20.9	42.9	63.7	4.03
	3급	10.4	6.3	37.5	16.7	29.2	45.8	3.48
	4급	0.0	3.6	42.9	14.3	39.3	53.6	3.89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3.6	3.6	32.1	28.6	32.1	60.7	3.82
	차상위	4.5	18.2	27.3	18.2	31.8	50.0	3.55
	해당 없음	2.1	4.3	33.5	19.7	40.4	60.1	3.92

8-6) 프로그램 일정과 시간 운영의 적절성 정도



[그림 3-16] 프로그램 일정과 시간 운영의 적절성 정도

<표 3-38> 프로그램 일정과 시간 운영의 적절성 정도(전체)

(단위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1.1	8.9	23.3	35.6	31.1	66.7	3.87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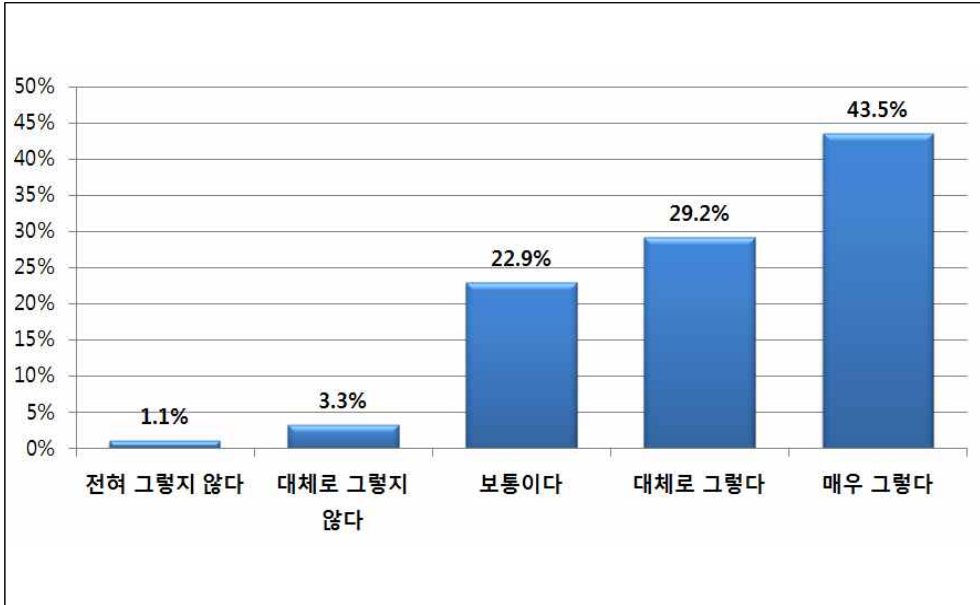
- 프로그램 일정, 시간 적절성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66.7%(평균 3.87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10.0%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100%), 언어장애(100%), 1급(69.9%), 생활정도에서 기초생활수급(66.1%)과 해당 없음(67.7%)에서 가장 많음

<표 3-39> 프로그램 일정, 시간 적절성 평가(세부)

(단위 : %)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1.1	8.9	23.3	35.6	31.1	66.7	3.87
성별	남성	2.3	5.3	22.1	32.8	37.4	70.2	3.98
	여성	0.0	12.2	24.5	38.1	25.2	63.3	3.76
지역	제주시 동	1.0	5.7	27.8	34.0	31.4	65.5	3.89
	제주시 읍·면	1.8	23.6	12.7	38.2	23.6	61.8	3.58
	서귀포시 동	0.0	0.0	11.8	41.2	47.1	88.2	4.35
	서귀포시 읍·면	0.0	0.0	0.0	50.0	50.0	100.0	4.50
장애 유형	지체	1.6	3.1	23.4	45.3	26.6	71.9	3.92
	시각	0.0	4.2	12.5	33.3	50.0	83.3	4.29
	청각	0.0	6.7	26.7	43.3	23.3	66.7	3.83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2.9	5.9	17.6	26.5	47.1	73.5	4.09
	뇌병변	0.0	25.0	28.3	30.0	16.7	46.7	3.38
	자폐성	0.0	0.0	10.5	36.8	52.6	89.5	4.42
	정신	16.7	0.0	33.3	33.3	16.7	50.0	3.33
	신장	0.0	8.3	33.3	33.3	25.0	58.3	3.75
중복	0.0	5.3	31.6	26.3	36.8	63.2	3.95	
장애 등급	1급	1.0	3.9	25.2	36.9	33.0	69.9	3.97
	2급	0.0	14.3	20.9	34.1	30.8	64.8	3.81
	3급	4.2	14.6	14.6	43.8	22.9	66.7	3.67
	4급	0.0	0.0	39.3	21.4	39.3	60.7	4.00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0.0	10.7	23.2	44.6	21.4	66.1	3.77
	차상위	0.0	0.0	40.9	22.7	36.4	59.1	3.95
	해당 없음	1.6	9.4	21.4	34.4	33.3	67.7	3.89

8-7) 강사의 강의내용 전달 정도



[그림 3-17] 강사의 강의내용 전달 정도

<표 3-40> 강사의 강의내용 전달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1.1	3.3	22.9	29.2	43.5	72.7	4.11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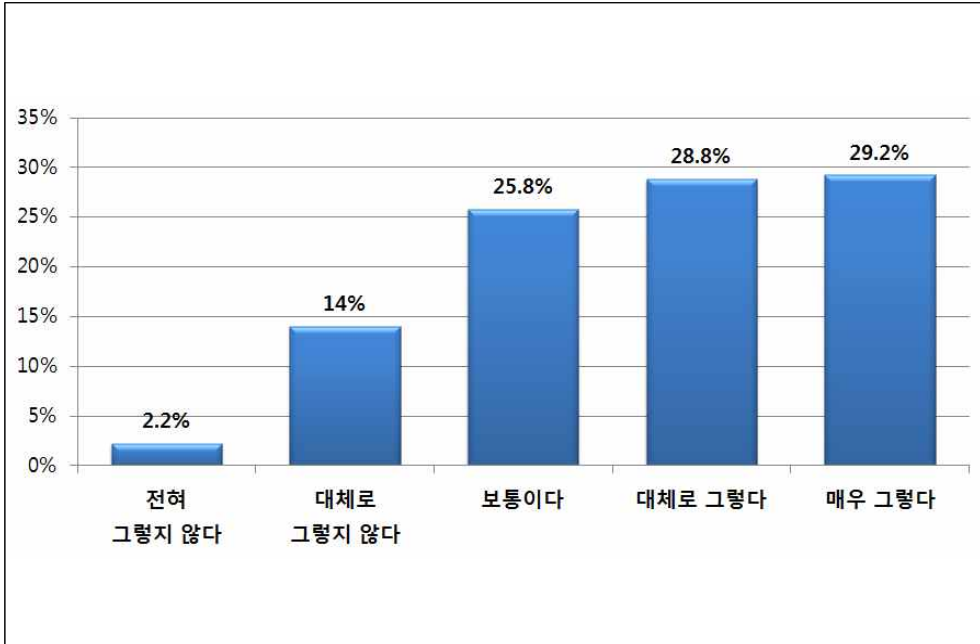
- 강사 전문성 및 강의내용 전달 정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는 72.7%(평균 4.11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4.4%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동(82.4%), 언어장애(100%), 자폐성장애(94.7%), 1급(80.6%), 기초생활수급(69.6%), 생활정도에서 해당 없음(75.1%)이 가장 많음

<표 3-41> 강사의 강의내용 전달 정도(세부)

(단위 : %)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1.1	3.3	22.9	29.2	43.5	72.7	4.11
지역	제주시 동	1.0	4.1	21.0	30.8	43.1	73.8	4.11
	제주시 읍·면	1.8	0.0	32.7	27.3	38.2	65.5	4.00
	서귀포시 동	0.0	0.0	17.6	23.5	58.8	82.4	4.41
	서귀포시 읍·면	0.0	25.0	0.0	0.0	75.0	75.0	4.25
장애 유형	지체	0.0	4.7	20.3	28.1	46.9	75.0	4.17
	시각	0.0	4.2	12.5	12.5	70.8	83.3	4.50
	청각	0.0	6.7	20.0	43.3	30.0	73.3	3.97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2.9	2.9	8.6	22.9	62.9	85.7	4.40
	뇌병변	1.7	3.3	40.0	26.7	28.3	55.0	3.77
	자폐성	0.0	0.0	5.3	36.8	57.9	94.7	4.53
	정신	16.7	0.0	50.0	33.3	0.0	33.3	3.00
	신장	0.0	0.0	25.0	41.7	33.3	75.0	4.08
중복	0.0	0.0	31.6	31.6	36.8	68.4	4.05	
장애 등급	1급	0.0	1.9	17.5	35.0	45.6	80.6	4.24
	2급	1.1	2.2	25.3	27.5	44.0	71.4	4.11
	3급	4.1	6.1	26.5	24.5	38.8	63.3	3.88
	4급	0.0	7.1	28.6	21.4	42.9	64.3	4.00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0.0	5.4	25.0	33.9	35.7	69.6	4.00
	차상위	4.5	4.5	31.8	13.6	45.5	59.1	3.91
	해당 없음	1.0	2.6	21.2	29.5	45.6	75.1	4.16

8-8)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홍보 정도



[그림 3-18]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홍보 정도

<표 3-42>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홍보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2.2	14.0	25.8	28.8	29.2	57.9	3.69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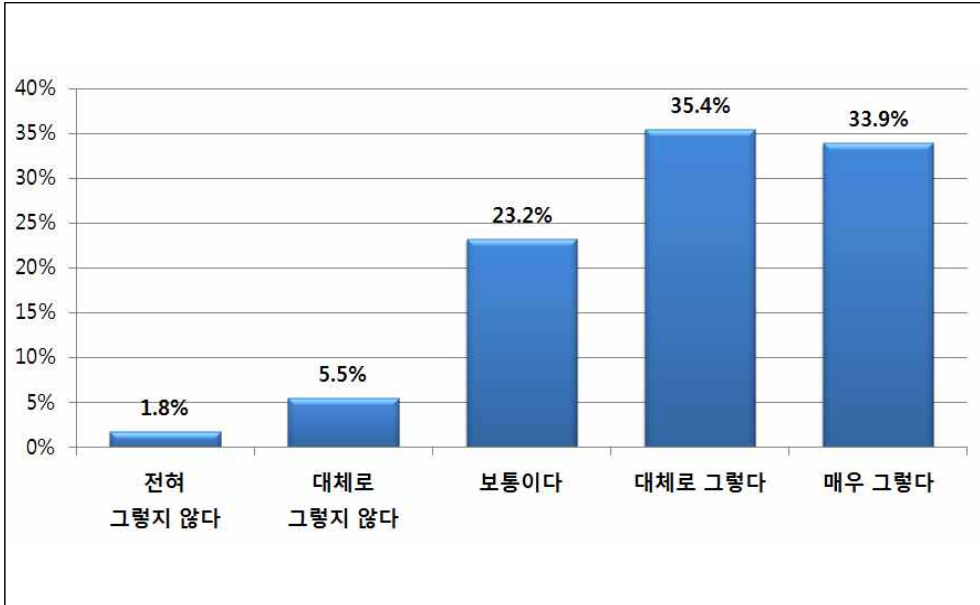
- 기관의 프로그램 안내(홍보) 정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는 57.9%(평균 3.69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16.2%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동(82.4%), 언어장애(100%), 1급(65.0%), 생활정도에서 해당 없음(62.2%)이 가장 많음

<표 3-43> 기관의 프로그램 안내(홍보) 정도(세부)

(단위 : %)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2.2	14.0	25.8	28.8	29.2	57.9	3.69
지역	제주시 동	2.1	10.8	26.2	27.7	33.3	61.0	3.79
	제주시 읍·면	3.6	30.9	25.5	25.5	14.5	40.0	3.16
	서귀포시 동	0.0	0.0	17.6	47.1	35.3	82.4	4.18
	서귀포시 읍·면	0.0	0.0	50.0	50.0	0.0	50.0	3.50
장애 유형	지체	1.6	7.8	31.3	37.5	21.9	59.4	3.70
	시각	0.0	8.3	16.7	20.8	54.2	75.0	4.21
	청각	0.0	10.0	30.0	40.0	20.0	60.0	3.70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5.7	8.6	11.4	28.6	45.7	74.3	4.00
	뇌병변	3.3	36.7	31.7	16.7	11.7	28.3	2.97
	자폐성	0.0	5.3	10.5	15.8	68.4	84.2	4.47
	정신	16.7	16.7	33.3	16.7	16.7	33.3	3.00
	신장	0.0	8.3	50.0	16.7	25.0	41.7	3.58
중복	0.0	0.0	21.1	52.6	26.3	78.9	4.05	
장애 등급	1급	3.9	8.7	22.3	32.0	33.0	65.0	3.82
	2급	0.0	16.5	24.2	30.8	28.6	59.3	3.71
	3급	4.1	20.4	32.7	22.4	20.4	42.9	3.35
	4급	0.0	14.3	32.1	21.4	32.1	53.6	3.71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0.0	21.4	28.6	32.1	17.9	50.0	3.46
	차상위	4.5	13.6	40.9	9.1	31.8	40.9	3.50
	해당 없음	2.6	11.9	23.3	30.1	32.1	62.2	3.77

8-9)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 정도



[그림 3-19]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 정도

<표 3-44>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1.8	5.5	23.2	35.4	33.9	69.4	3.94	272

- 참여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69.4%(평균 3.94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7.3%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동(94.1%), 언어장애(100%), 1급(70.9%), 2급(70.3%), 생활정도에서 해당 없음(73.1%)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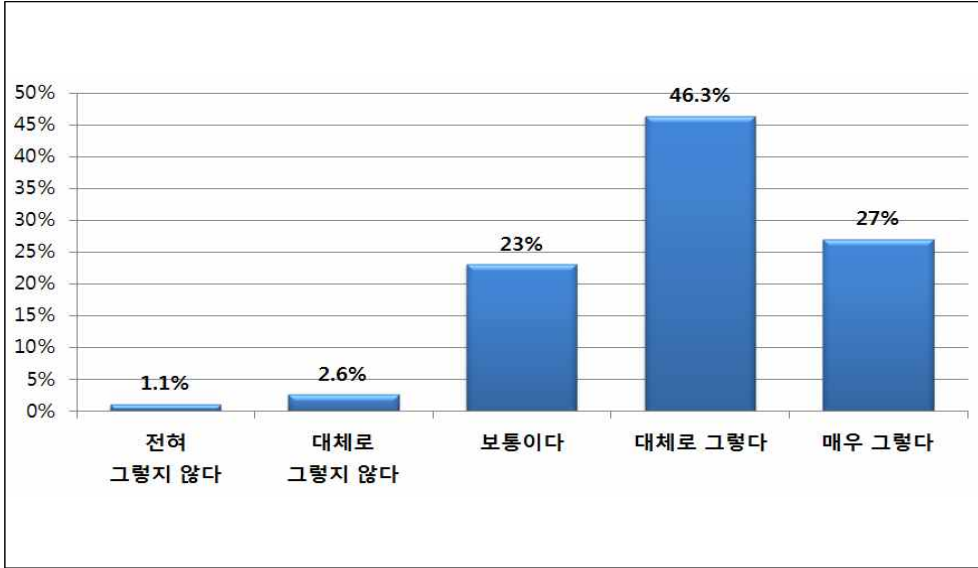
<표 3-45> 참여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1.8	5.5	23.2	35.4	33.9	69.4	3.94
성별	남성	3.8	4.6	19.8	34.4	37.4	71.8	3.97
	여성	0.0	6.4	26.4	36.4	30.7	67.1	3.91
지역	제주시 동	1.5	6.2	25.6	31.8	34.9	66.7	3.92
	제주시 읍·면	3.6	3.6	21.8	49.1	21.8	70.9	3.82
	서귀포시 동	0.0	0.0	5.9	29.4	64.7	94.1	4.59
	서귀포시 읍·면	0.0	25.0	0.0	50.0	25.0	75.0	3.75
장애 유형	지체	3.1	6.3	23.4	32.8	34.4	67.2	3.89
	시각	0.0	0.0	16.7	16.7	66.7	83.3	4.50
	청각	0.0	6.7	36.7	23.3	33.3	56.7	3.83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2.9	2.9	22.9	20.0	51.4	71.4	4.14
	뇌병변	0.0	11.7	21.7	53.3	13.3	66.7	3.68
	자폐성	0.0	0.0	10.5	31.6	57.9	89.5	4.47
	정신	33.3	0.0	16.7	50.0	0.0	50.0	2.83
	신장	0.0	0.0	41.7	33.3	25.0	58.3	3.83
중복	0.0	5.3	21.1	57.9	15.8	73.7	3.84	
장애 등급	1급	0.0	3.9	25.2	37.9	33.0	70.9	4.00
	2급	2.2	4.4	23.1	34.1	36.3	70.3	3.98
	3급	6.1	8.2	20.4	34.7	30.6	65.3	3.76
	4급	0.0	10.7	21.4	32.1	35.7	67.9	3.93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1.8	16.1	21.4	39.3	21.4	60.7	3.63
	차상위	0.0	4.5	36.4	27.3	31.8	59.1	3.86
	해당 없음	2.1	2.6	22.3	35.2	37.8	73.1	4.04

9) 학습 후 향상 정도

9-1) 필요한 정보 습득 만족 정도



[그림 3-20] 필요한 정보 습득 만족 정도

<표 3-46> 필요한 정보 습득 만족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1.1	2.6	23.0	46.3	27.0	73.3	3.96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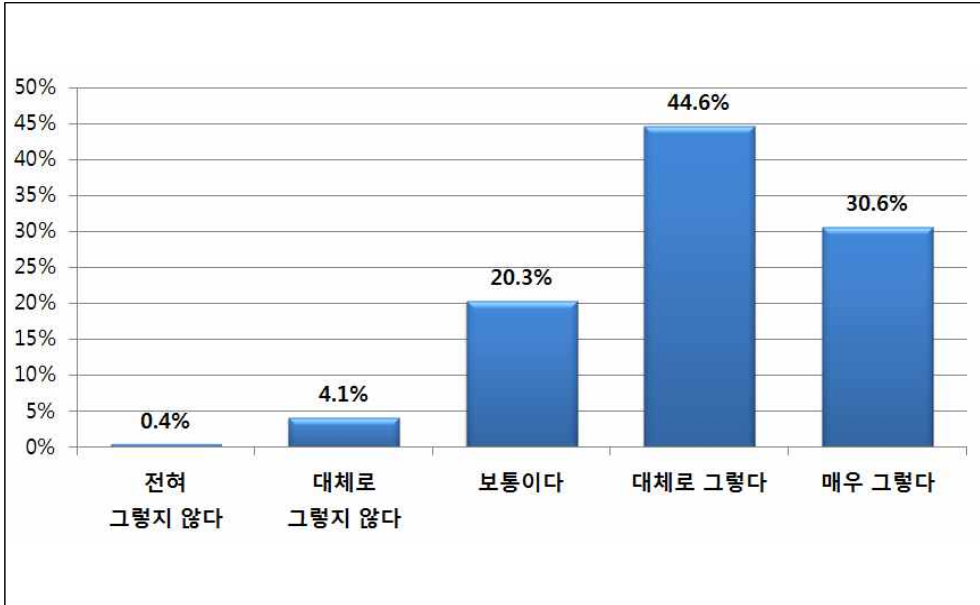
- 프로그램 통한 필요한 정보 습득 만족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73.3% (평균 3.96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3.7%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100%), 언어장애(100%), 2급(79.1%), 생활정도에서 해당 없음(76.7%)이 가장 많음

<표 3-47> 필요한 정보 습득 만족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1.1	2.6	23.0	46.3	27.0	73.3	3.96
지역	제주시 동	0.5	3.1	24.7	42.3	29.4	71.6	3.97
	제주시 읍·면	3.6	0.0	21.8	60.0	14.5	74.5	3.82
	서귀포시 동	0.0	5.9	11.8	47.1	35.3	82.4	4.12
	서귀포시 읍·면	0.0	0.0	0.0	50.0	50.0	100.0	4.50
장애 유형	지체	0.0	3.1	21.5	50.8	24.6	75.4	3.97
	시각	0.0	0.0	16.7	29.2	54.2	83.3	4.38
	청각	0.0	10.0	10.0	60.0	20.0	80.0	3.90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2.9	2.9	14.7	32.4	47.1	79.4	4.18
	뇌병변	0.0	0.0	39.0	49.2	11.9	61.0	3.73
	자폐성	0.0	0.0	15.8	47.4	36.8	84.2	4.21
	정신	33.3	0.0	16.7	33.3	16.7	50.0	3.00
	신장	0.0	8.3	25.0	50.0	16.7	66.7	3.75
중복	0.0	0.0	31.6	47.4	21.1	68.4	3.89	
장애 등급	1급	0.0	1.9	23.3	49.5	25.2	74.8	3.98
	2급	1.1	4.4	15.4	47.3	31.9	79.1	4.04
	3급	4.2	2.1	29.2	41.7	22.9	64.6	3.77
	4급	0.0	0.0	35.7	39.3	25.0	64.3	3.89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3.6	3.6	28.6	44.6	19.6	64.3	3.73
	차상위	0.0	0.0	33.3	42.9	23.8	66.7	3.90
	해당 없음	0.5	2.6	20.2	47.2	29.5	76.7	4.03

9-2) 학습욕구 충족 정도



[그림 3-21] 학습욕구 충족 정도

<표 3-48> 학습욕구 충족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0.4	4.1	20.3	44.6	30.6	75.3	4.01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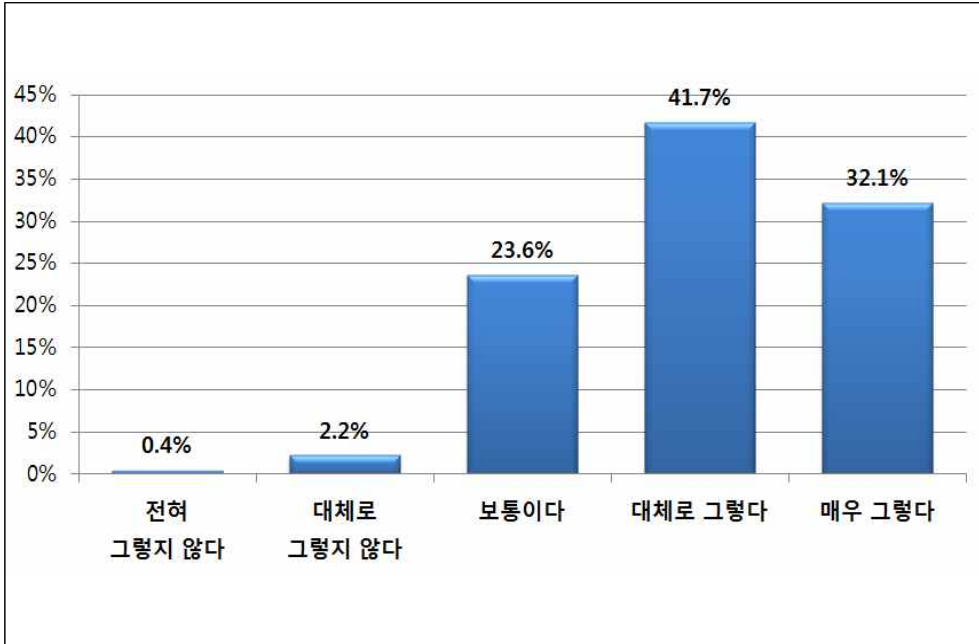
- 프로그램 통한 학습욕구 충족 만족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75.3%(평균 4.01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4.5%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100%), 언어장애(100%), 정신장애(100%), 1급(77.7%), 2급(79.1%), 생활정도에서 해당 없음(78.2%)이 가장 많음

<표 3-49> 학습욕구 충족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0.4	4.1	20.3	44.6	30.6	75.3	4.01
지역	제주시 동	0.5	4.1	24.1	39.0	32.3	71.3	3.98
	제주시 읍·면	0.0	3.6	12.7	67.3	16.4	83.6	3.96
	서귀포시 동	0.0	5.9	5.9	41.2	47.1	88.2	4.29
	서귀포시 읍·면	0.0	0.0	0.0	25.0	75.0	100.0	4.75
장애 유형	지체	0.0	1.6	20.3	51.6	26.6	78.1	4.03
	시각	0.0	4.2	12.5	37.5	45.8	83.3	4.25
	청각	0.0	13.3	16.7	33.3	36.7	70.0	3.93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2.9	0.0	17.1	25.7	54.3	80.0	4.29
	뇌병변	0.0	8.3	25.0	55.0	11.7	66.7	3.70
	자폐성	0.0	0.0	5.3	42.1	52.6	94.7	4.47
	정신	0.0	0.0	0.0	83.3	16.7	100.0	4.17
	신장	0.0	0.0	41.7	41.7	16.7	58.3	3.75
중복	0.0	0.0	36.8	42.1	21.1	63.2	3.84	
장애 등급	1급	0.0	3.9	18.4	47.6	30.1	77.7	4.04
	2급	0.0	4.4	16.5	44.0	35.2	79.1	4.10
	3급	2.0	2.0	30.6	40.8	24.5	65.3	3.84
	4급	0.0	7.1	21.4	42.9	28.6	71.4	3.93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0.0	10.7	19.6	42.9	26.8	69.6	3.86
	차상위	0.0	9.1	27.3	36.4	27.3	63.6	3.82
	해당 없음	0.5	1.6	19.7	46.1	32.1	78.2	4.08

9-3) 자신감과 적극성 향상 만족정도



[그림 3-22] 자신감과 적극성 향상 만족 정도

<표 3-50> 자신감과 적극성 향상 만족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0.4	2.2	23.6	41.7	32.1	73.8	4.03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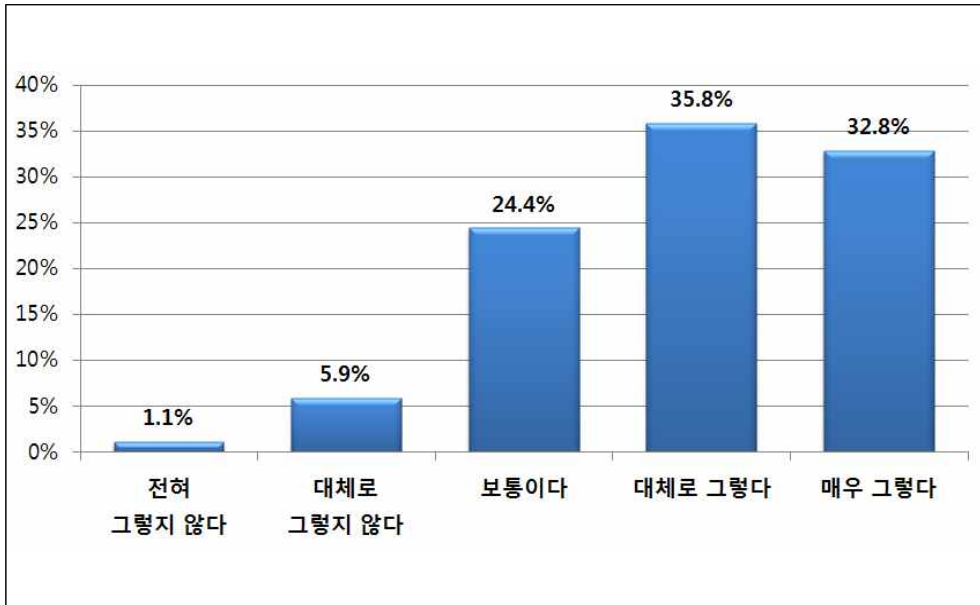
- 프로그램 통한 자신감, 적극성 향상 만족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73.8%(평균 4.03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2.6%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100%), 언어장애(100%), 정신장애(100%), 1급(79.6%), 2급(76.9%), 생활정도에서 해당 없음(77.2%)이 가장 많음

<표 3-51> 자신감과 적극성 향상 만족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0.4	2.2	23.6	41.7	32.1	73.8	4.03
지역	제주시 동	0.5	2.6	27.7	38.5	30.8	69.2	3.96
	제주시 읍·면	0.0	0.0	18.2	56.4	25.5	81.8	4.07
	서귀포시 동	0.0	5.9	0.0	35.3	58.8	94.1	4.47
	서귀포시 읍·면	0.0	0.0	0.0	25.0	75.0	100.0	4.75
장애 유형	지체	0.0	1.6	20.3	42.2	35.9	78.1	4.13
	시각	0.0	0.0	12.5	45.8	41.7	87.5	4.29
	청각	0.0	13.3	23.3	36.7	26.7	63.3	3.77
	언어	0.0	0.0	0.0	0.0	100.0	100.0	5.00
	지적	2.9	2.9	5.7	37.1	51.4	88.6	4.31
	뇌병변	0.0	0.0	35.0	50.0	15.0	65.0	3.80
	자폐성	0.0	0.0	21.1	31.6	47.4	78.9	4.26
	정신	0.0	0.0	0.0	50.0	50.0	100.0	4.50
	신장	0.0	0.0	41.7	41.7	16.7	58.3	3.75
	중복	0.0	0.0	47.4	36.8	15.8	52.6	3.68
장애 등급	1급	0.0	1.0	19.4	48.5	31.1	79.6	4.10
	2급	0.0	2.2	20.9	47.3	29.7	76.9	4.04
	3급	2.0	4.1	28.6	30.6	34.7	65.3	3.92
	4급	0.0	3.6	39.3	17.9	39.3	57.1	3.93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0.0	5.4	32.1	35.7	26.8	62.5	3.84
	차상위	0.0	0.0	27.3	45.5	27.3	72.7	4.00
	해당 없음	0.5	1.6	20.7	43.0	34.2	77.2	4.09

9-4) 자립심 향상 만족 정도



[그림 3-23] 자립심 향상 만족 정도

<표 3-52> 자립심 향상 만족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1.1	5.9	24.4	35.8	32.8	68.6	3.93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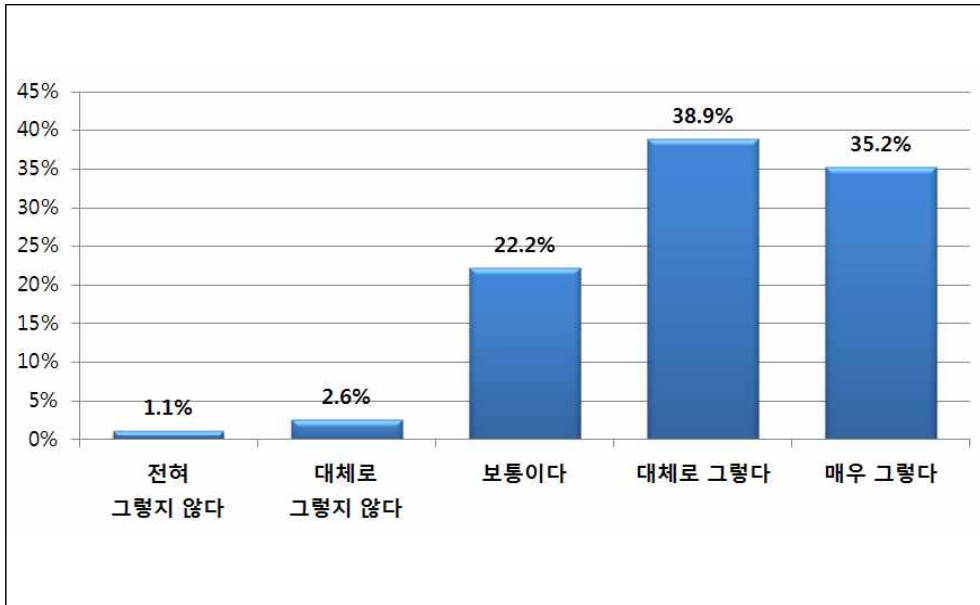
- 프로그램 통한 자립심 향상 만족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68.6%(평균 3.93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7.0%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100%), 언어장애(100%), 1급(72.8%), 생활정도에서 해당 없음(74.1%)이 가장 많음

<표 3-53> 자립심 향상 만족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1.1	5.9	24.4	35.8	32.8	68.6	3.93
지역	제주시 동	1.0	5.6	29.7	36.9	26.7	63.6	3.83
	제주시 읍·면	1.8	7.3	9.1	36.4	45.5	81.8	4.16
	서귀포시 동	0.0	5.9	17.6	23.5	52.9	76.5	4.24
	서귀포시 읍·면	0.0	0.0	0.0	25.0	75.0	100.0	4.75
장애 유형	지체	0.0	6.3	18.8	40.6	34.4	75.0	4.03
	시각	4.2	0.0	12.5	45.8	37.5	83.3	4.13
	청각	0.0	10.0	26.7	46.7	16.7	63.3	3.70
	언어	0.0	0.0	0.0	0.0	100.0	100.0	5.00
	지적	2.9	2.9	11.4	37.1	45.7	82.9	4.20
	뇌병변	0.0	11.7	23.3	28.3	36.7	65.0	3.90
	자폐성	0.0	0.0	26.3	42.1	31.6	73.7	4.05
	정신	16.7	0.0	33.3	33.3	16.7	50.0	3.33
	신장	0.0	0.0	58.3	16.7	25.0	41.7	3.67
중복	0.0	5.3	57.9	21.1	15.8	36.8	3.47	
장애 등급	1급	0.0	3.9	23.3	43.7	29.1	72.8	3.98
	2급	1.1	7.7	25.3	33.0	33.0	65.9	3.89
	3급	4.1	8.2	18.4	32.7	36.7	69.4	3.90
	4급	0.0	3.6	35.7	21.4	39.3	60.7	3.96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1.8	14.3	32.1	28.6	23.2	51.8	3.57
	차상위	0.0	0.0	36.4	31.8	31.8	63.6	3.95
	해당 없음	1.0	4.1	20.7	38.3	35.8	74.1	4.04

9-5) 사회관계 형성 만족 정도



[그림 3-24] 사회관계 형성 만족 정도

<표 3-54> 사회관계 형성 만족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1.1	2.6	22.2	38.9	35.2	74.1	4.04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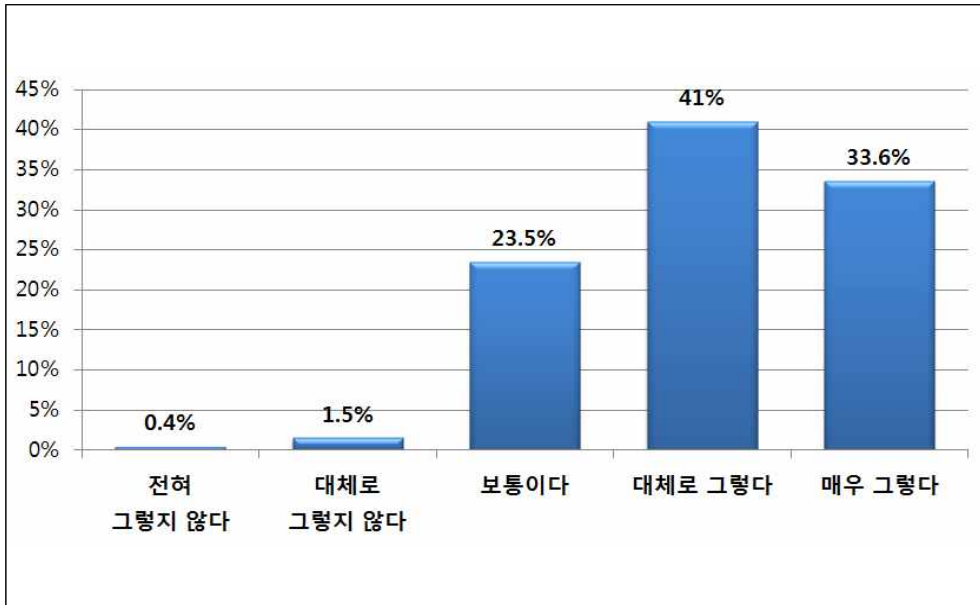
- 프로그램 통한 긍정적 사회관계 형성 만족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74.1%(평균 4.04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3.7%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100%), 언어장애(100%), 시각장애(91.7%), 1급(76.7%), 생활정도에서 해당 없음(77.6%)이 가장 많음

<표 3-55> 사회관계 형성 만족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1.1	2.6	22.2	38.9	35.2	74.1	4.04
지역	제주시 동	1.0	3.1	24.7	39.2	32.0	71.1	3.98
	제주시 읍·면	1.8	0.0	18.2	38.2	41.8	80.0	4.18
	서귀포시 동	0.0	5.9	11.8	35.3	47.1	82.4	4.24
	서귀포시 읍·면	0.0	0.0	0.0	50.0	50.0	100.0	4.50
장애 유형	지체	1.6	3.1	17.2	40.6	37.5	78.1	4.09
	시각	0.0	4.2	4.2	41.7	50.0	91.7	4.38
	청각	0.0	3.3	23.3	60.0	13.3	73.3	3.83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2.9	2.9	14.7	23.5	55.9	79.4	4.26
	뇌병변	1.7	0.0	30.0	28.3	40.0	68.3	4.05
	자폐성	0.0	0.0	26.3	31.6	42.1	73.7	4.16
	정신	0.0	0.0	16.7	83.3	0.0	83.3	3.83
	신장	0.0	8.3	25.0	58.3	8.3	66.7	3.67
중복	0.0	5.3	47.4	36.8	10.5	47.4	3.53	
장애 등급	1급	0.0	2.9	20.4	44.7	32.0	76.7	4.06
	2급	1.1	2.2	22.0	36.3	38.5	74.7	4.09
	3급	2.1	2.1	20.8	35.4	39.6	75.0	4.08
	4급	3.6	3.6	32.1	32.1	28.6	60.7	3.79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1.8	3.6	28.6	39.3	26.8	66.1	3.86
	차상위	0.0	0.0	36.4	40.9	22.7	63.6	3.86
	해당 없음	1.0	2.6	18.8	38.5	39.1	77.6	4.12

9-6)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정도



[그림 3-25] 평생교육 관심 증대 정도

<표 3-56> 평생교육 관심 증대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0.4	1.5	23.5	41.0	33.6	74.6	4.06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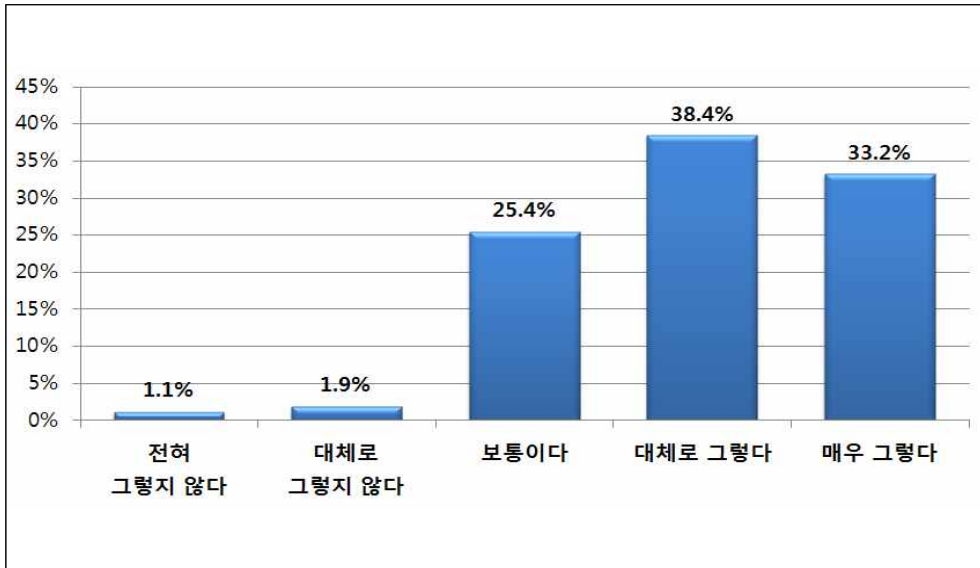
- 프로그램 통한 평생교육 관심도 증대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74.6% (평균 4.06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1.9%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제주시 읍·면(85.5%), 언어장애(100%), 1급(77.5%), 3급(77.1%), 생활정도에서 해당 없음(76.3%)이 가장 많음

<표 3-57> 평생교육 관심 증대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0.4	1.5	23.5	41.0	33.6	74.6	4.06
지역	제주시 동	0.0	2.1	26.6	38.0	33.3	71.4	4.03
	제주시 읍·면	1.8	0.0	12.7	58.2	27.3	85.5	4.09
	서귀포시 동	0.0	0.0	23.5	23.5	52.9	76.5	4.29
	서귀포시 읍·면	0.0	0.0	25.0	25.0	50.0	75.0	4.25
장애 유형	지체	0.0	0.0	23.8	39.7	36.5	76.2	4.13
	시각	0.0	0.0	16.7	33.3	50.0	83.3	4.33
	청각	0.0	3.3	20.0	53.3	23.3	76.7	3.97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0.0	2.9	26.5	23.5	47.1	70.6	4.15
	뇌병변	0.0	0.0	20.0	60.0	20.0	80.0	4.00
	자폐성	0.0	0.0	10.5	26.3	63.2	89.5	4.53
	정신	16.7	0.0	33.3	33.3	16.7	50.0	3.33
	신장	0.0	16.7	33.3	41.7	8.3	50.0	3.42
	중복	0.0	0.0	50.0	22.2	27.8	50.0	3.78
장애 등급	1급	0.0	1.0	21.6	39.2	38.2	77.5	4.15
	2급	0.0	2.2	26.7	36.7	34.4	71.1	4.03
	3급	2.1	2.1	18.8	45.8	31.3	77.1	4.02
	4급	0.0	0.0	28.6	53.6	17.9	71.4	3.89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1.8	1.8	26.8	41.1	28.6	69.6	3.93
	차상위	0.0	0.0	27.3	27.3	45.5	72.7	4.18
	해당 없음	0.0	1.6	22.1	42.6	33.7	76.3	4.08

9-7) 삶의 질 향상 만족 정도



[그림 3-26] 삶의 질 향상 만족 정도

<표 3-58> 삶의 질 향상 만족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1.1	1.9	25.4	38.4	33.2	71.6	4.01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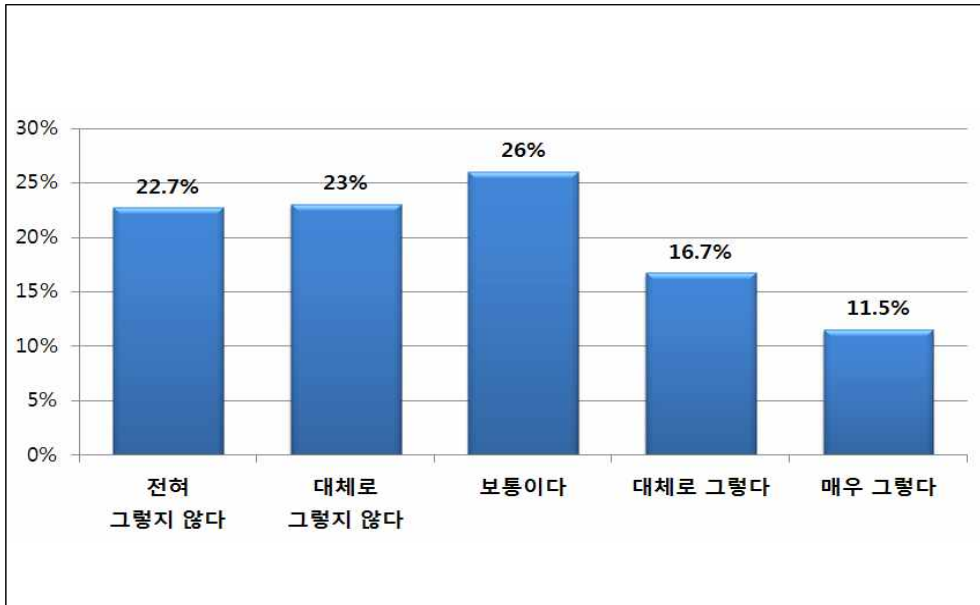
- 프로그램 통한 삶의 질 향상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71.6%(평균 4.01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3.0%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100%), 언어장애(100%), 1급(81.2%), 생활정도에서는 해당 없음(78.0%)에서 가장 많음

<표 3-59> 삶의 질 향상 만족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1.1	1.9	25.4	38.4	33.2	71.6	4.01
지역	제주시 동	0.5	2.1	27.6	39.1	30.7	69.8	3.97
	제주시 읍·면	3.6	0.0	21.8	41.8	32.7	74.5	4.00
	서귀포시 동	0.0	5.9	17.6	29.4	47.1	76.5	4.18
	서귀포시 읍·면	0.0	0.0	0.0	0.0	100.0	100.0	5.00
장애 유형	지체	0.0	3.1	25.0	39.1	32.8	71.9	4.02
	시각	0.0	0.0	16.7	50.0	33.3	83.3	4.17
	청각	0.0	3.3	26.7	53.3	16.7	70.0	3.83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2.9	2.9	14.3	37.1	42.9	80.0	4.14
	뇌병변	0.0	0.0	39.0	20.3	40.7	61.0	4.02
	자폐성	0.0	0.0	5.6	44.4	50.0	94.4	4.44
	정신	33.3	0.0	0.0	50.0	16.7	66.7	3.17
	신장	0.0	8.3	50.0	33.3	8.3	41.7	3.42
중복	0.0	0.0	27.8	50.0	22.2	72.2	3.94	
장애 등급	1급	1.0	0.0	17.8	47.5	33.7	81.2	4.13
	2급	1.1	3.3	27.8	31.1	36.7	67.8	3.99
	3급	2.0	2.0	30.6	28.6	36.7	65.3	3.96
	4급	0.0	3.6	35.7	46.4	14.3	60.7	3.71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3.6	1.8	41.1	32.1	21.4	53.6	3.66
	차상위	0.0	0.0	38.1	33.3	28.6	61.9	3.90
	해당 없음	0.5	2.1	19.4	40.8	37.2	78.0	4.12

9-8) 일자리와 연계 정도



[그림 3-27] 일자리와 연계 정도

<표 3-60> 일자리와 연계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 척도)	N
22.7	23.0	26.0	16.7	11.5	28.3	2.71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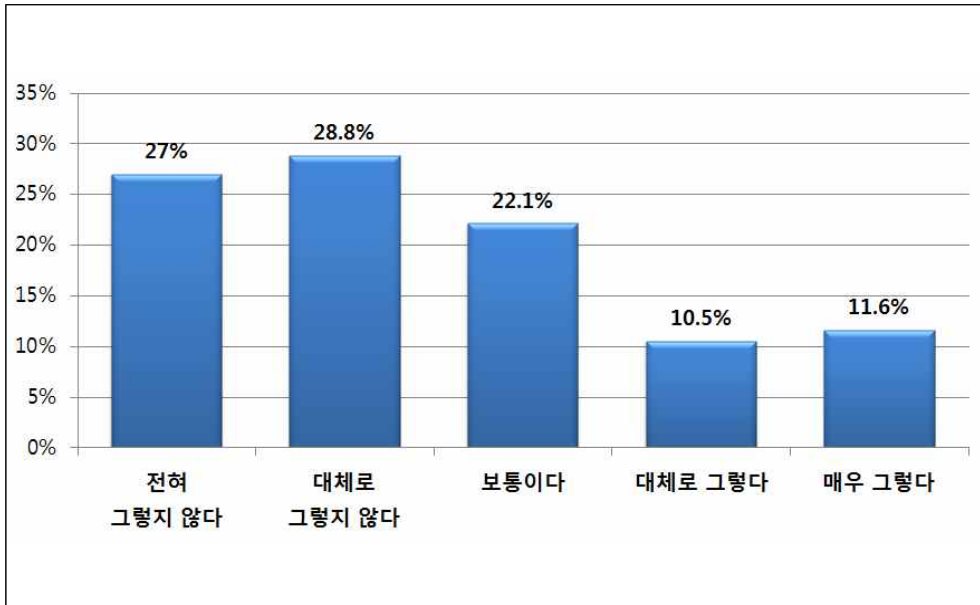
- 프로그램 통한 일자리와의 연계성 만족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는 28.3% (평균 2.71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45.7%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동(52.9%), 언어장애(100%), 1급(30.7%), 4급(32.1%), 차상위(47.6%)에서 가장 많음

<표 3-61> 일자리와 연계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22.7	23.0	26.0	16.7	11.5	28.3	2.71
지역	제주시 동	23.8	24.4	24.9	14.0	13.0	26.9	2.68
	제주시 읍·면	27.3	16.4	30.9	20.0	5.5	25.5	2.60
	서귀포시 동	0.0	23.5	23.5	35.3	17.6	52.9	3.47
	서귀포시 읍·면	0.0	50.0	25.0	25.0	0.0	25.0	2.75
장애 유형	지체	17.2	23.4	25.0	25.0	9.4	34.4	2.86
	시각	25.0	16.7	8.3	29.2	20.8	50.0	3.04
	청각	10.0	16.7	40.0	26.7	6.7	33.3	3.03
	언어	0.0	0.0	0.0	0.0	100.0	100.0	5.00
	지적	25.7	37.1	17.1	5.7	14.3	20.0	2.46
	뇌병변	32.2	18.6	33.9	5.1	10.2	15.3	2.42
	자폐성	42.1	31.6	5.3	15.8	5.3	21.1	2.11
	정신	33.3	16.7	0.0	33.3	16.7	50.0	2.83
	신장	0.0	33.3	33.3	16.7	16.7	33.3	3.17
중복	16.7	16.7	50.0	11.1	5.6	16.7	2.72	
장애 등급	1급	30.7	15.8	22.8	18.8	11.9	30.7	2.65
	2급	15.4	28.6	28.6	17.6	9.9	27.5	2.78
	3급	22.4	24.5	30.6	10.2	12.2	22.4	2.65
	4급	17.9	28.6	21.4	17.9	14.3	32.1	2.82
생활 정도	기초생활 수급	37.5	23.2	23.2	10.7	5.4	16.1	2.23
	차상위	14.3	14.3	23.8	19.0	28.6	47.6	3.33
	해당 없음	19.3	24.0	27.1	18.2	11.5	29.7	2.79

9-9) 자격증 취득 정도



[그림 3-28] 자격증 취득 정도

<표 3-62> 자격증 취득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27.0	28.8	22.1	10.5	11.6	22.1	2.51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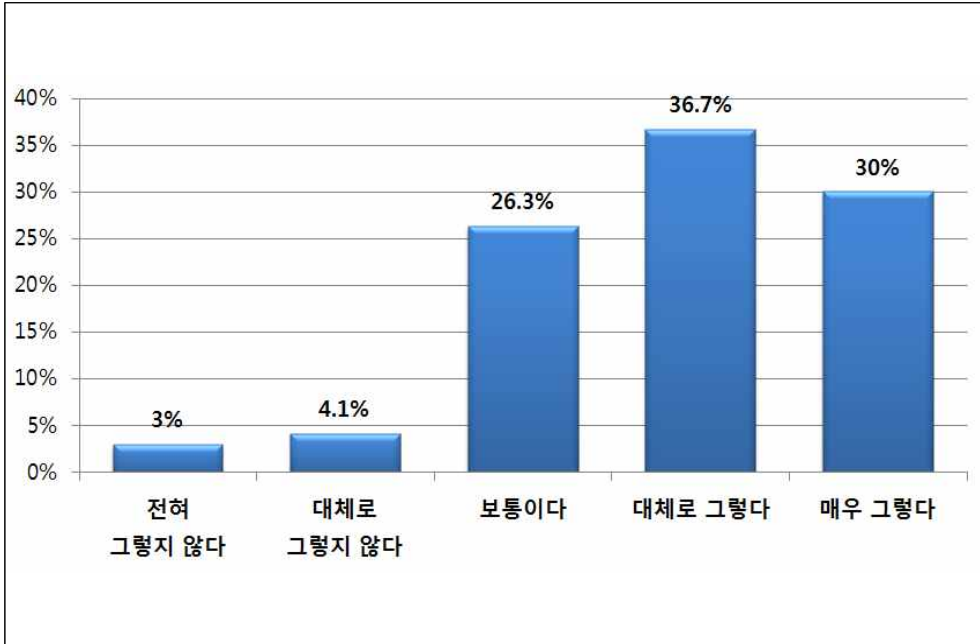
- 프로그램 통한 '자격증 취득' 조사결과, '긍정적인 평가'는 22.1%(평균 2.51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55.8%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동(35.3%), 언어장애(100%), 2급(28.6%), 생활정도에서 차상위(30.0%)에서 가장 많음

<표 3-63> 자격증 취득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27.0	28.8	22.1	10.5	11.6	22.1	2.51
지역	제주시 동	27.7	24.1	26.2	11.0	11.0	22.0	2.53
	제주시 읍·면	30.9	45.5	5.5	12.7	5.5	18.2	2.16
	서귀포시 동	11.8	23.5	29.4	0.0	35.3	35.3	3.24
	서귀포시 읍·면	0.0	50.0	25.0	0.0	25.0	25.0	3.00
장애 유형	지체	23.4	25.0	26.6	10.9	14.1	25.0	2.67
	시각	37.5	37.5	12.5	8.3	4.2	12.5	2.04
	청각	10.0	16.7	30.0	30.0	13.3	43.3	3.20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26.5	35.3	17.6	2.9	17.6	20.6	2.50
	뇌병변	35.6	37.3	11.9	6.8	8.5	15.3	2.15
	자폐성	44.4	38.9	5.6	5.6	5.6	11.1	1.89
	정신	50.0	0.0	33.3	16.7	0.0	16.7	2.17
	신장	0.0	33.3	33.3	16.7	16.7	33.3	3.17
	중복	22.2	11.1	55.6	0.0	11.1	11.1	2.67
장애 등급	1급	36.0	21.0	23.0	8.0	12.0	20.0	2.39
	2급	15.4	37.4	18.7	14.3	14.3	28.6	2.75
	3급	29.2	31.3	22.9	8.3	8.3	16.7	2.35
	4급	28.6	25.0	28.6	10.7	7.1	17.9	2.43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41.1	26.8	16.1	7.1	8.9	16.1	2.16
	차상위	15.0	25.0	30.0	5.0	25.0	30.0	3.00
	해당 없음	24.1	29.8	23.0	12.0	11.0	23.0	2.56

9-10) 자존감 향상 정도



[그림 3-29] 자존감 향상 정도

<표 3-64> 자존감 향상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3.0	4.1	26.3	36.7	30.0	66.7	3.87	272

-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 요소’에서 ‘프로그램 통한 자존감 향상’ 조사결과, ‘긍정적인 평가’는 66.7%(평균 3.87점,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7.1%로 나타남
 - ‘긍정적인 평가’는 서귀포시 읍·면(100%), 언어장애(100%), 1급(70.6%), 생활정도에서는 해당 없음(71.9%)에서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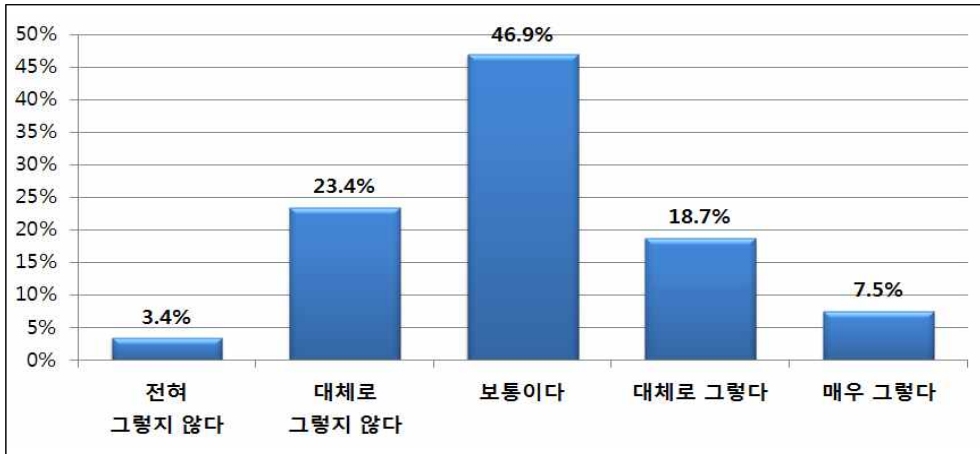
<표 3-65> 자존감 향상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3.0	4.1	26.3	36.7	30.0	66.7	3.87
지역	제주시 동	2.6	3.6	29.4	33.0	31.4	64.4	3.87
	제주시 읍·면	5.5	5.5	18.2	52.7	18.2	70.9	3.73
	서귀포시 동	0.0	5.9	23.5	23.5	47.1	70.6	4.12
	서귀포시 읍·면	0.0	0.0	0.0	50.0	50.0	100.0	4.50
장애 유형	지체	1.6	3.1	28.1	28.1	39.1	67.2	4.00
	시각	0.0	0.0	12.5	50.0	37.5	87.5	4.25
	청각	0.0	10.0	36.7	40.0	13.3	53.3	3.57
	언어	0.0	0.0	0.0	50.0	50.0	100.0	4.50
	지적	2.9	5.7	11.4	31.4	48.6	80.0	4.17
	뇌병변	8.3	1.7	31.7	38.3	20.0	58.3	3.60
	자폐성	0.0	15.8	15.8	31.6	36.8	68.4	3.89
	정신	0.0	0.0	33.3	33.3	33.3	66.7	4.00
	신장	0.0	0.0	41.7	41.7	16.7	58.3	3.75
	중복	5.6	0.0	33.3	50.0	11.1	61.1	3.61
장애 등급	1급	2.9	4.9	21.6	37.3	33.3	70.6	3.93
	2급	2.2	3.3	26.4	38.5	29.7	68.1	3.90
	3급	6.1	4.1	24.5	38.8	26.5	65.3	3.76
	4급	0.0	3.6	46.4	25.0	25.0	50.0	3.71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5.4	7.1	39.3	28.6	19.6	48.2	3.50
	차상위	4.5	4.5	22.7	36.4	31.8	68.2	3.86
	해당 없음	2.1	3.1	22.9	39.1	32.8	71.9	3.97

4.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1)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도



[그림 3-30]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도

<표 3-66>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의 응답	평균 (5점 척도)	N
3.4	23.4	46.9	18.7	7.5	26.2	3.03	465

○ 본인(장애인)에게 도움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로는 ‘동의하는 의견’이 26.2%(평균 3.03점, 5점 척도)에 불과했으며, ‘동의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견’이 2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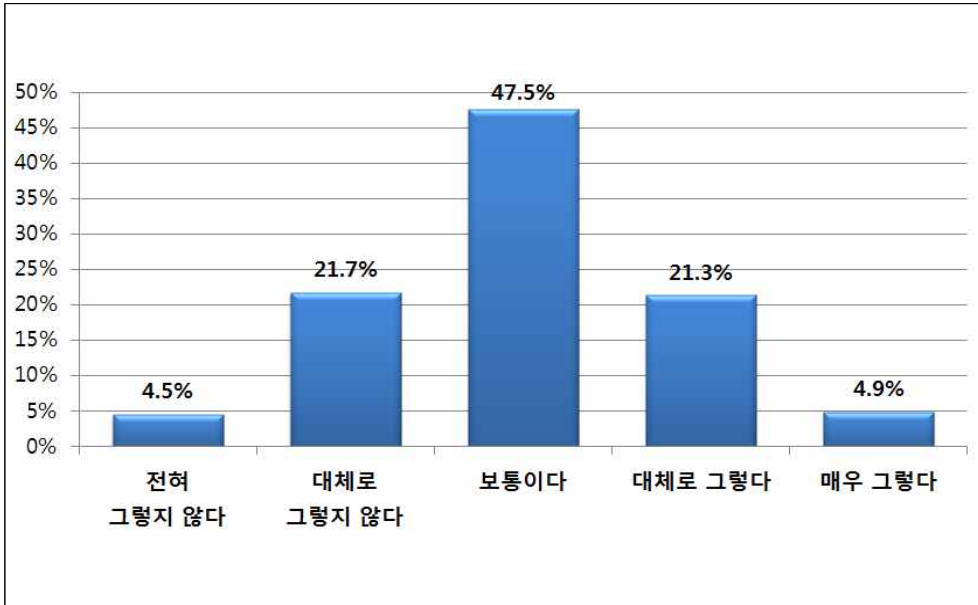
- ‘동의 의견’은 언어장애(60.0%), 3급(31.8%), 생활정도 차상위(32.4%)에서 가장 많고,
- ‘부동의 의견’은 제주시 읍·면(35.1%), 자폐성장애(38.5%), 중복장애(40.0%), 1급(29.9%), 3급(28.0%), 해당 없음(31.3%)에서 많음

<표 3-67>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부동의 의견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의 의견	평균 (5점척도)
전체		3.4	23.4	26.9	46.9	18.7	7.5	26.2	3.03
지역	제주시 동	3.1	21.5	24.6	48.3	19.4	7.7	27.1	3.07
	제주시 읍·면	4.3	30.9	35.1	41.5	19.1	4.3	23.4	2.88
	서귀포시 동	6.1	18.2	24.2	48.5	15.2	12.1	27.3	3.09
	서귀포시 읍·면	0.0	30.8	30.8	46.2	7.7	15.4	23.1	3.08
장애 유형	지체	4.0	22.2	26.3	45.5	22.2	6.1	28.3	3.04
	시각	2.9	31.4	34.3	22.9	25.7	17.1	42.9	3.23
	청각	0.0	11.1	11.1	57.1	25.4	6.3	31.7	3.27
	언어	0.0	0.0	0.0	40.0	40.0	20.0	60.0	3.80
	지적	6.8	20.5	27.4	45.2	13.7	13.7	27.4	3.07
	뇌병변	0.0	30.0	30.0	48.6	15.7	5.7	21.4	2.97
	자폐성	7.7	30.8	38.5	42.3	15.4	3.8	19.2	2.77
	정신	2.6	26.3	28.9	44.7	21.1	5.3	26.3	3.00
	신장	9.5	9.5	19.0	61.9	14.3	4.8	19.0	2.95
	중복	2.9	37.1	40.0	54.3	5.7	0.0	5.7	2.63
장애 등급	1급	4.1	25.9	29.9	44.2	19.0	6.8	25.9	2.99
	2급	3.7	21.3	25.0	51.2	15.9	7.9	23.8	3.03
	3급	1.9	26.2	28.0	40.2	25.2	6.5	31.8	3.08
	4급	4.3	17.0	21.3	55.3	12.8	10.6	23.4	3.09
생활 정도	기초생활 수급	2.7	17.0	19.6	58.0	17.0	5.4	22.3	3.05
	차상위	2.9	5.9	8.8	58.8	23.5	8.8	32.4	3.29
	해당 없음	3.8	27.6	31.3	41.7	18.8	8.2	27.0	3.00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도



[그림 3-31]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정도

<표 3-68>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정도(전체)

(단위 : %, 점,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N
4.5	21.7	47.5	21.3	4.9	26.2	3.00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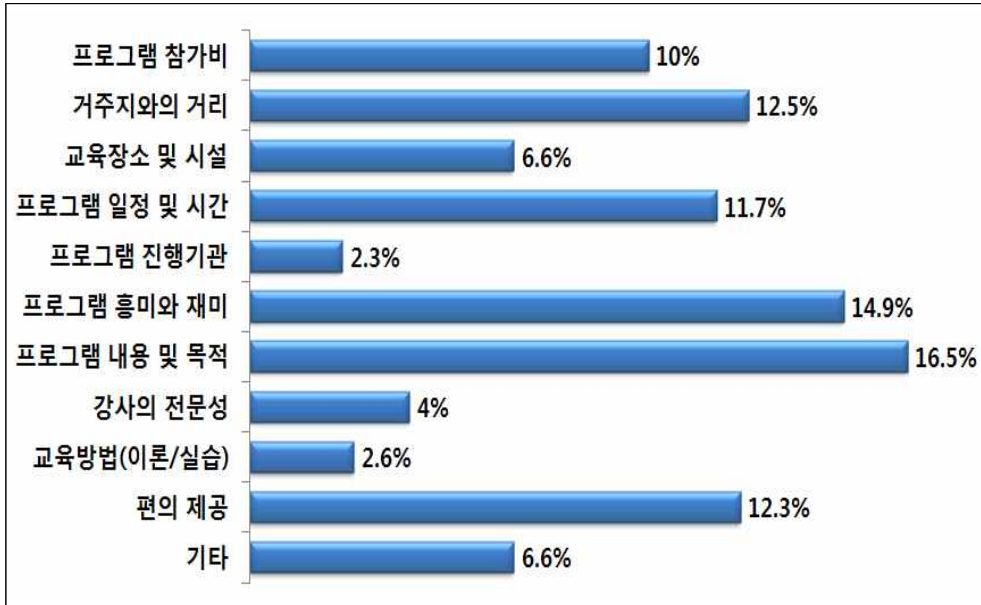
-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는 26.2%(평균 3.00점, 5점 척도)에 불과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26.2%로 나타남
 - ‘긍정 의견’은 제주시 동(30.2%), 시각장애(62.9%), 언어장애(60.0%), 4급(31.9%), 생활정도에서는 해당 없음(28.2%)에서 많고,
 - ‘부정 의견’은 서귀포시 읍·면(30.8%), 정신장애(47.4%), 1급(27.9%), 2급(28.0%)에서 많음

<표 3-69>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정도(세부)

(단위 : %, 점)

분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부정 평가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척도)
전체		4.5	21.7	26.2	47.5	21.3	4.9	26.2	3.00
지역	제주시 동	5.2	21.5	26.8	43.1	24.0	6.2	30.2	3.04
	제주시 읍·면	3.2	20.2	23.4	59.6	14.9	2.1	17.0	2.93
	서귀포 동	3.0	24.2	27.3	54.5	15.2	3.0	18.2	2.91
	서귀포 읍·면	0.0	30.8	30.8	53.8	15.4	0.0	15.4	2.85
장애 유형	지체	6.1	21.2	27.3	51.5	19.2	2.0	21.2	2.90
	시각	0.0	14.3	14.3	22.9	48.6	14.3	62.9	3.63
	청각	1.6	20.6	22.2	41.3	30.2	6.3	36.5	3.19
	언어	0.0	0.0	0.0	40.0	40.0	20.0	60.0	3.80
	지적	6.8	26.0	32.9	34.2	24.7	8.2	32.9	3.01
	뇌병변	1.4	7.1	8.6	72.9	17.1	1.4	18.6	3.10
	자폐성	15.4	23.1	38.5	50.0	7.7	3.8	11.5	2.62
	정신	0.0	47.4	47.4	39.5	7.9	5.3	13.2	2.71
	신장	4.8	23.8	28.6	52.4	19.0	0.0	19.0	2.86
중복	8.6	25.7	34.3	54.3	8.6	2.9	11.4	2.71	
장애 등급	1급	7.5	20.4	27.9	49.7	18.4	4.1	22.4	2.91
	2급	4.3	23.8	28.0	47.0	21.3	3.7	25.0	2.96
	3급	0.9	23.4	24.3	44.9	24.3	6.5	30.8	3.12
	4급	4.3	14.9	19.1	48.9	23.4	8.5	31.9	3.17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2.7	21.4	24.1	53.6	17.9	4.5	22.3	3.00
	차상위	5.9	20.6	26.5	52.9	14.7	5.9	20.6	2.94
	해당 없음	5.0	21.9	27.0	44.8	23.2	5.0	28.2	3.01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요인(복수응답)



[그림 3-32]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요인10)(복수응답)

<표 3-70>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요인(복수응답)(전체)

(단위 : %, 명)

프로그램 참가비	거주지와의 거리	교육장소 및 시설	프로그램 일정 및 시간	프로그램 진행기관	프로그램 흥미와 재미	프로그램 내용 및 목적	강사의 전문성	교육방법(이론/실습)	편의 제공	기타	N
10.0	12.5	6.6	11.7	2.3	14.9	16.5	4.0	2.6	12.3	6.6	459

-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① 프로그램 내용 및 목적(16.5%), ② 프로그램 흥미와 재미(14.9%), ③ 거주지와의 거리(12.5%), ④ 편의 제공(12.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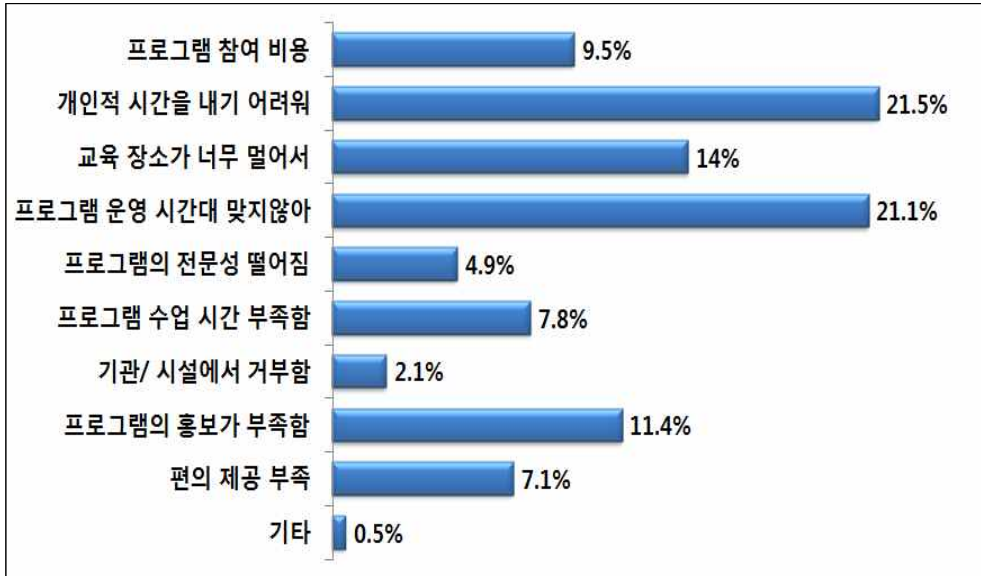
10) (1순위 빈도*2점+ 2순위 빈도*1점)/100

<표 3-71>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요인(복수응답)(세부)

(단위 : %)

분류		프로그램 참가비	거주지와의 거리	교육 장소 및 시설	프로 그램 일정 및 시간	프로 그램 진행 기관	프로 그램 흥미 와 재미	프로 그램 내용 및 목적	강사 의 전문 성	교육 방법 (이론/ 실습)	편의 제공	기타
전체		10.0	12.5	6.6	11.7	2.3	14.9	16.5	4.0	2.6	12.3	6.6
성별	남성	9.0	11.9	8.3	12.4	2.5	13.3	14.9	5.1	2.7	12.5	7.4
	여성	11.1	13.0	4.6	11.0	2.1	16.5	18.3	2.7	2.5	12.1	6.0
지역	제주시 동	9.8	10.6	7.4	11.1	2.3	15.8	15.8	4.3	2.7	12.9	7.2
	제주시 읍·면	14.3	19.4	4.8	10.3	2.2	12.5	15.0	2.2	2.6	10.3	6.6
	서귀포 동	3.1	6.1	4.1	19.4	3.1	13.3	28.6	5.1	2.0	13.3	2.0
	서귀포 읍·면	2.6	25.6	5.1	17.9	2.6	12.8	12.8	5.1	2.6	10.3	2.6
장애 유형	지체	14.0	12.3	7.5	5.8	1.0	15.4	23.3	4.1	2.4	8.9	5.1
	시각	2.9	8.7	5.8	21.2	2.9	26.9	6.7	3.8	1.9	15.4	3.8
	청각	10.2	16.5	4.5	10.8	4.0	11.9	14.2	4.0	4.0	10.8	9.1
	언어	0.0	28.6	7.1	28.6	0.0	0.0	7.1	14.3	0.0	14.3	0.0
	지적	6.2	9.1	6.7	12.9	2.9	17.7	16.3	4.8	3.3	17.7	2.4
	뇌병변	7.2	21.3	8.2	14.5	2.4	11.1	11.1	1.0	2.9	7.7	12.6
	자폐성	0.0	9.5	6.8	13.5	1.4	12.2	33.8	1.4	0.0	14.9	6.8
	정신	33.6	6.5	4.7	3.7	3.7	15.0	14.0	0.0	2.8	14.0	1.9
	신장	5.3	7.0	12.3	19.3	3.5	15.8	10.5	8.8	0.0	12.3	5.3
중복	5.1	8.2	3.1	13.3	0.0	11.2	17.3	10.2	3.1	16.3	12.2	
장애 등급	1급	6.3	10.3	6.3	11.2	1.6	14.7	20.0	4.2	1.4	13.5	10.5
	2급	11.4	12.5	5.8	11.2	2.1	14.6	16.4	3.7	2.5	13.1	6.7
	3급	13.4	14.4	7.4	11.7	2.7	15.7	14.0	4.0	3.3	10.4	3.0
	4급	9.3	15.5	8.5	15.5	4.7	14.7	10.9	3.9	5.4	10.1	1.6
생활 정도	기초생활 수급	14.6	11.8	8.6	10.5	4.1	14.0	9.6	3.2	4.5	12.4	6.7
	차상위	9.0	17.0	5.0	8.0	4.0	13.0	18.0	3.0	2.0	12.0	9.0
	해당 없음	8.5	12.2	6.1	12.6	1.5	15.4	18.7	4.3	2.1	12.3	6.3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운 점



[그림 3-3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운 요인¹¹⁾(복수응답)

<표 3-7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운 요인(복수응답)(전체)

(단위 : %, 명)

프로그램 참여 비용	개인적 시간을 내기 어려워	교육 장소가 너무 멀어서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맞지않아	프로그램의 전문성 떨어짐	프로그램 수업 시간 부족함	기관/ 시설에서 거부함	프로그램의 홍보가 부족함	편의 제공 부족	기타	N
9.5	21.5	14.0	21.1	4.9	7.8	2.1	11.4	7.1	0.5	459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건강, 직업, 외부환경 등, 21.5%), ②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21.1%), ③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14.0%), ④ 프로그램의 홍보가 부족함(11.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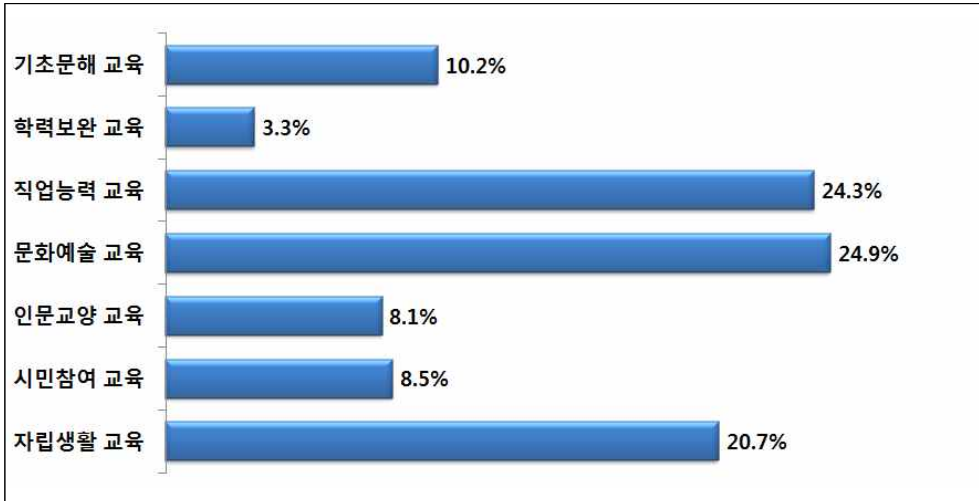
11) (1순위 빈도*2점+ 2순위 빈도*1점)/100

<표 3-73>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움 점(복수응답)(세부)

(단위 : %)

분류		프로그램 비용	개인적 시간을 내기 어려워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	프로그램 운영시간 대 맞지 않아서	프로그램의 전문성 떨어짐	프로그램 이수시간 부족함	기관/시설에서 거부함	프로그램의 홍보가 부족함	편의제공부족	기타
전체		9.5	21.5	14.0	21.1	4.9	7.8	2.1	11.4	7.1	0.5
성별	남성	9.5	23.0	13.7	19.3	6.2	7.0	2.5	10.6	8.1	0.0
	여성	9.5	20.2	14.3	22.8	3.8	8.4	1.8	12.0	6.1	1.0
지역	제주시 동	10.1	20.9	10.8	22.5	4.8	8.4	2.4	13.4	6.0	0.7
	제주시 읍·면	9.0	20.6	26.5	15.5	3.9	5.8	1.9	4.5	12.3	0.0
	서귀포 동	4.5	34.1	4.5	25.0	11.4	4.5	0.0	13.6	2.3	0.0
	서귀포 읍·면	8.3	16.7	33.3	16.7	0.0	16.7	0.0	0.0	8.3	0.0
장애 유형	지체	18.1	22.6	10.7	19.2	4.5	5.1	2.3	13.6	4.0	0.0
	시각	0.0	11.8	2.9	33.8	5.9	27.9	2.9	13.2	1.5	0.0
	청각	11.8	21.2	17.6	25.9	1.2	9.4	0.0	7.1	3.5	2.4
	언어	0.0	0.0	33.3	66.7	0.0	0.0	0.0	0.0	0.0	0.0
	지적	5.3	26.6	11.7	18.1	7.4	2.1	3.2	10.6	12.8	2.1
	뇌병변	5.2	21.3	26.4	14.4	4.0	4.6	1.1	10.9	12.1	0.0
	자폐성	3.8	11.5	9.6	32.7	9.6	13.5	3.8	7.7	7.7	0.0
	정신	22.2	38.9	5.6	11.1	16.7	0.0	0.0	5.6	0.0	0.0
	신장	0.0	28.1	3.1	18.8	6.3	3.1	0.0	34.4	6.3	0.0
중복	20.0	24.4	8.9	22.2	0.0	8.9	6.7	2.2	6.7	0.0	
장애 등급	1급	11.4	23.5	10.4	19.7	6.9	8.3	2.1	9.3	8.3	0.0
	2급	6.6	23.0	15.2	22.2	3.3	5.8	2.5	11.9	8.6	0.8
	3급	7.6	19.4	19.4	20.1	3.5	8.3	2.8	13.2	5.6	0.0
	4급	15.3	12.5	13.9	25.0	5.6	11.1	0.0	13.9	0.0	2.8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7.5	25.0	15.0	16.9	8.1	6.9	2.5	9.4	6.3	2.5
	차상위	28.1	22.8	10.5	15.8	0.0	7.0	0.0	8.8	7.0	0.0
	해당없음	8.1	20.3	14.1	23.0	4.5	8.1	2.3	12.2	7.3	0.0

5)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영역(복수응답)



[그림 3-34]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영역(복수응답)

<표 3-74>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영역(복수응답, 전체)

(단위 : %, 명)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N
10.2	3.3	24.3	24.9	8.1	8.5	20.7	449

-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는, ① 문화예술 교육 (24.9%), ② 직업능력 교육(24.3%), ③ 자립생활 교육(20.7%), ④ 기초 문해 교육(10.2%)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교육’ 의견은 제주시 읍·면(27.0%), 시각장애(39.4%), 4급 (28.0%)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 ‘직업능력 교육’ 의견은 서귀포시 동(32.3%), 청각장애(33.3%), 3급 (27.2%), 생활정도에서 해당없음(27.6%)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 ‘자립생활 교육’ 의견은 서귀포시 동(27.1%), 언어장애(40.0%), 1급 (25.2%)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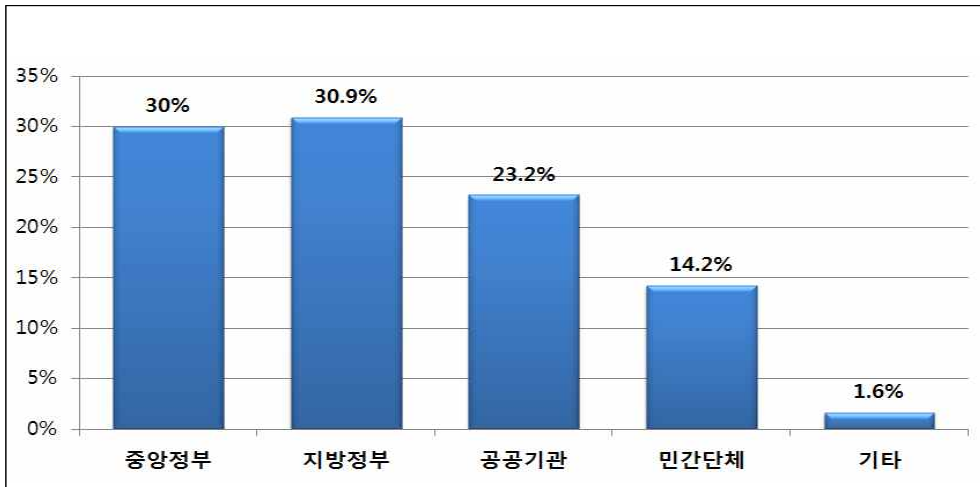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 3-75> 장애인 위한 평생학습 가장 필요한 영역(복수응답, 세부)

(단위 : %)

분류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전체		10.2	3.3	24.3	24.9	8.1	8.5	20.7
지역	제주시 동	12.2	3.5	22.5	25.5	9.1	7.9	19.3
	제주시 읍·면	4.1	3.0	27.3	27.0	8.2	7.5	22.8
	서귀포시 동	5.2	1.0	32.3	20.8	2.1	11.5	27.1
	서귀포시 읍·면	16.7	5.6	27.8	2.8	0.0	25.0	22.2
장애 유형	지체	7.9	2.2	26.2	28.3	6.8	9.3	19.4
	시각	9.1	4.0	10.1	39.4	15.2	6.1	16.2
	청각	12.6	8.6	33.3	19.0	10.3	8.6	7.5
	언어	20.0	0.0	0.0	20.0	0.0	20.0	40.0
	지적	14.3	0.5	26.2	18.6	4.8	6.2	29.5
	뇌병변	8.3	3.9	22.3	23.8	8.3	12.6	20.9
	자폐성	1.4	0.0	30.1	30.1	1.4	4.1	32.9
	정신	8.9	7.1	23.2	27.7	5.4	8.0	19.6
	신장	14.0	1.8	22.8	22.8	14.0	3.5	21.1
중복	13.7	0.0	17.9	21.1	13.7	10.5	23.2	
장애 등급	1급	8.3	1.0	21.1	24.9	8.3	11.2	25.2
	2급	10.9	4.7	25.9	24.1	7.7	7.3	19.4
	3급	11.6	4.0	27.2	24.6	8.0	7.6	16.9
	4급	10.4	4.0	22.4	28.0	9.6	6.4	19.2
생활 정도	기초생활 수급	10.9	4.2	17.7	25.7	8.4	11.9	21.2
	차상위	15.6	6.3	14.6	25.0	12.5	6.3	19.8
	해당 없음	9.4	2.6	27.6	24.6	7.6	7.6	20.6

6)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

[그림 3-35]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¹²⁾(복수응답)

<표 3-76>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복수응답, 전체)

(단위 : %, 명)

중앙정부	지방정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타	N
30.0	30.9	23.2	14.2	1.6	449

○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지방정부’(30.9%)와 ‘중앙정부’(30.0%)을 제시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공기관’ 23.2%, ‘민간단체’ 14.2% 등의 순으로 제시함

- ‘지방정부’ 강조 의견은 서귀포시 읍·면(38.2%), 자폐성장애(40.3%), 생활 정도에서 차상위(37.5%)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 ‘중앙정부’ 강조 의견은 서귀포시 동(34.0%), 자폐성장애(41.7%), 4급(36.9%)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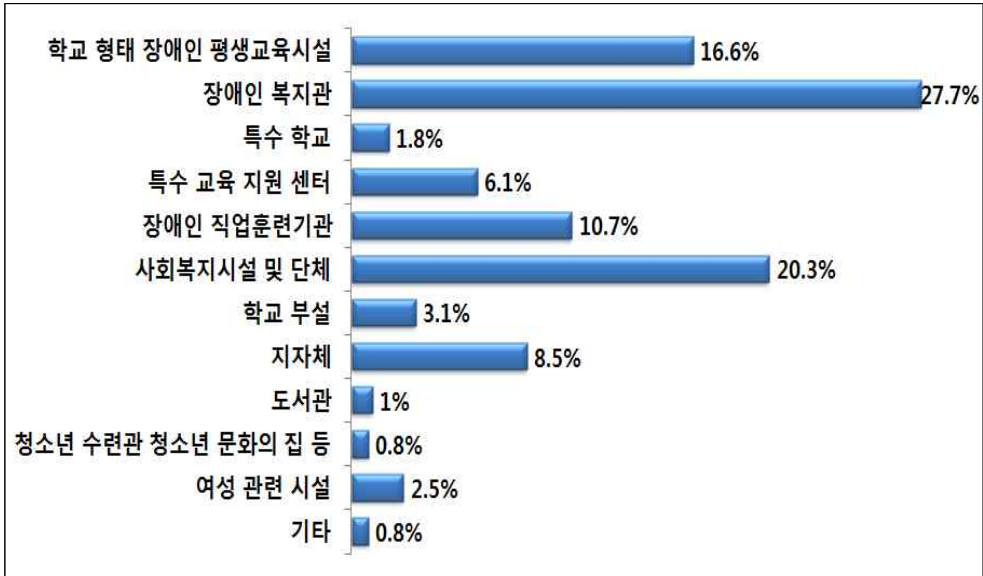
12) (1순위 빈도*2점+ 2순위 빈도*1점)/100

<표 3-77>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복수응답, 세부)

(단위 : %)

분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타
전체		30.0	30.9	23.2	14.2	1.6
지역	제주시 동	29.7	30.6	23.3	14.4	2.0
	제주시 읍·면	30.3	30.3	21.8	16.6	1.1
	서귀포시 동	34.0	34.0	22.3	9.6	0.0
	서귀포시 읍·면	26.5	38.2	32.4	2.9	0.0
장애 유형	지체	37.8	33.9	17.0	10.6	0.7
	시각	32.6	26.7	30.2	10.5	0.0
	청각	23.7	27.1	31.6	13.0	4.5
	언어	0.0	30.0	40.0	30.0	0.0
	지적	36.1	32.7	19.5	10.7	1.0
	뇌병변	18.2	31.0	23.6	25.6	1.5
	자폐성	41.7	40.3	15.3	2.8	0.0
	정신	22.9	30.3	29.4	16.5	0.9
	신장	28.8	28.8	28.8	13.5	0.0
	중복	31.4	24.5	20.6	18.6	4.9
장애 등급	1급	29.2	28.3	22.4	16.6	3.5
	2급	27.6	33.5	25.1	13.0	0.9
	3급	32.2	30.1	23.1	14.0	0.7
	4급	36.9	32.8	18.9	11.5	0.0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27.1	27.5	21.9	20.9	2.6
	차상위	29.2	37.5	21.9	11.5	0.0
	해당 없음	31.1	31.4	23.7	12.3	1.4

7) 평생교육 수강 희망기관



[그림 3-36] 평생교육 수강 희망 기관(복수응답)

<표 3-78> 평생교육 수강 희망 기관(복수응답, 전체)

(단위 : %, 명)

학교 형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장애인 복지관	특수 학교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장애인 직업 훈련 기관	사회 복지 시설 및 단체	학교 부설	지 자 체 (센터, 학습 관)	도 서 관	청 소 년 수 련 관 청 소 년 문 화 의 집 등	여 성 관련 시설	기 타	N
16.6	27.7	1.8	6.1	10.7	20.3	3.1	8.5	1.0	0.8	2.5	0.8	459

- 평생학습을 받고 싶은 기관으로는 ① 장애인복지관(27.7%), ②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20.3%), ③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16.6%), ④ 장애인 직업훈련기관(10.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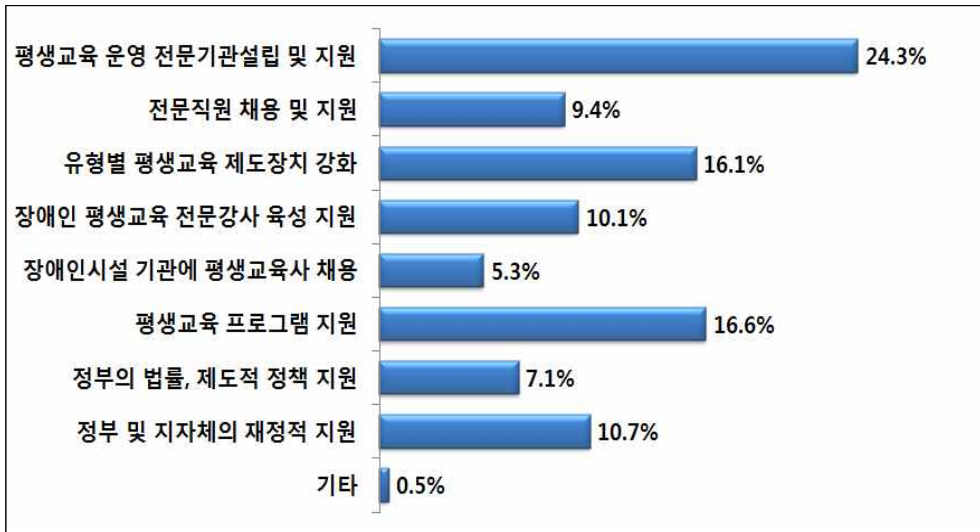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 3-79> 평생교육 수강 희망 기관(복수응답, 세부)

(단위 : %)

분류	학교 형태 평생 교육 시설	장애 인 복지 관	특수 학교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장애 인 직업 훈련 기관	사회 복지 시설 및 단체	학교 부설	지 자 체	도 서 관	청소 년 수련 관 청소 년 문화 집 등	여 성 관 련 시 설	기타	
전체	16.6	27.7	1.8	6.1	10.7	20.3	3.1	8.5	1.0	0.8	2.5	0.8	
지역	제주시 등	18.3	29.4	2.0	6.8	10.6	3.2	8.7	1.2	0.8	1.6	0.4	
	제주시 읍·면	15.2	20.8	2.2	5.6	12.3	3.7	5.6	0.7	0.7	2.6	2.6	
	서귀포 동	7.3	22.9	0.0	2.1	11.5	1.0	13.5	0.0	2.1	11.5	0.0	
	서귀포 읍·면	10.3	46.2	0.0	5.1	0.0	25.6	0.0	10.3	0.0	2.6	0.0	
장애 유형	지체	14.0	30.4	0.0	5.6	7.3	14.0	5.9	15.0	0.7	1.0	5.9	0.0
	시각	4.5	64.0	0.0	2.2	2.2	20.2	2.2	2.2	1.1	0.0	1.1	0.0
	청각	9.1	40.6	0.0	3.4	10.3	24.0	2.3	5.1	2.9	0.0	1.7	0.6
	언어	0.0	40.0	20.0	0.0	30.0	10.0	0.0	0.0	0.0	0.0	0.0	0.0
	지적	27.1	17.4	4.8	9.7	10.1	18.8	1.4	7.2	0.0	1.0	2.4	0.0
	뇌병변	13.8	29.1	1.0	8.4	11.3	28.6	0.0	5.4	0.5	1.5	0.5	0.0
	자폐성	42.9	7.1	7.1	8.6	15.7	5.7	2.9	5.7	0.0	0.0	0.0	4.3
	정신	11.7	11.7	0.0	2.7	13.5	27.0	9.9	9.0	3.6	1.8	4.5	4.5
	신장	12.5	17.9	7.1	7.1	25.0	7.1	0.0	21.4	0.0	0.0	1.8	0.0
중복	23.4	19.1	1.1	6.4	11.7	29.8	1.1	4.3	0.0	1.1	0.0	2.1	
장애 등급	1급	18.9	28.1	2.9	5.6	11.6	20.3	3.6	4.8	1.0	0.7	1.5	1.0
	2급	19.6	23.5	1.7	8.1	9.2	18.8	3.0	9.6	1.5	1.5	2.8	0.9
	3급	11.4	30.0	0.7	4.7	11.8	22.9	2.7	10.1	0.7	0.3	3.7	1.0
	4급	9.8	36.9	1.6	4.1	10.7	19.7	2.5	12.3	0.0	0.0	2.5	0.0
생활 활 정 도	기초생 활수 급	11.0	32.6	1.9	3.4	10.3	24.5	3.8	6.0	0.3	1.6	2.5	2.2
	차상위	21.1	35.8	0.0	8.4	10.5	14.7	0.0	4.2	0.0	2.1	2.1	1.1
	해당 없음	18.2	25.0	2.0	6.9	10.8	19.4	3.2	9.8	1.4	0.5	2.6	0.3

8)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주요 요인

[그림 3-37]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주요 요인¹³⁾(복수응답)

<표 3-8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주요 요인(복수응답, 전체)

(단위 : %, 명)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전문기관설립(지정) 및 지원	전문직원 채용 및 지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인 평생교육 제도장치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강사 육성 지원	장애인 시설 기관에 평생교육사 채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부의 법률, 제도적 정책 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기타	N
24.3	9.4	16.1	10.1	5.3	16.6	7.1	10.7	0.5	459

-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은 ①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전문기관설립(지정) 및 지원(24.3%),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16.6%), ③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인 평생교육 제도장치 강화(16.1%) 순으로 나타남

13) (1순위 빈도*2점+ 2순위 빈도*1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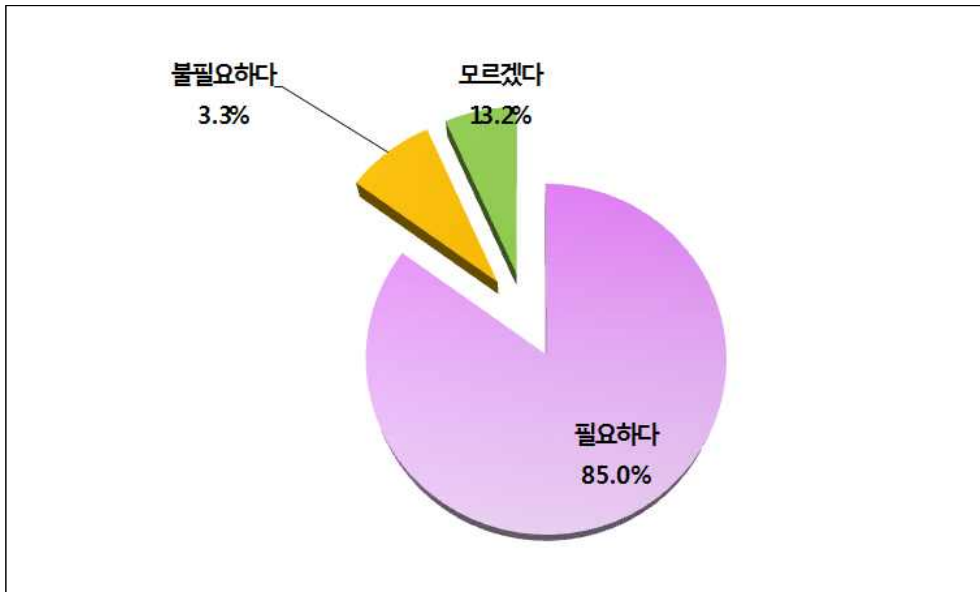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표 3-81>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주요 요인(복수응답, 세부)

(단위 : %)

분류		장애인 평생교육운영전문기관 설립(지정) 및 지원	전문직 채용 및 지원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인 평생교육제도 장치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육성 지원	장애인 시설 기관에 평생교육사 채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부의 법률, 제도적 정책 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기타
전체		24.3	9.4	16.1	10.1	5.3	16.6	7.1	10.7	0.5
지역	제주시 동	24.2	10.9	16.3	9.3	5.1	16.9	6.9	9.9	0.5
	제주시 읍·면	26.1	4.9	17.5	11.2	6.7	12.3	8.6	12.3	0.4
	서귀포시 동	17.7	6.3	11.5	13.5	4.2	24.0	6.3	16.7	0.0
	서귀포시 읍·면	31.4	14.3	11.4	11.4	2.9	20.0	2.9	2.9	2.9
장애 유형	지체	27.3	9.8	14.7	15.0	4.9	13.3	7.7	7.0	0.3
	시각	22.6	13.1	17.9	8.3	8.3	19.0	3.6	4.8	2.4
	청각	24.6	14.0	9.9	11.7	8.2	16.4	1.8	11.7	1.8
	언어	20.0	20.0	0.0	20.0	0.0	20.0	0.0	20.0	0.0
	지적	24.9	9.3	16.6	10.2	2.4	16.1	8.3	12.2	0.0
	뇌병변	26.6	10.3	26.1	5.4	4.4	12.3	7.9	6.9	0.0
	자폐성	21.9	4.1	19.2	5.5	0.0	19.2	20.5	9.6	0.0
	정신	10.2	4.6	11.1	8.3	9.3	26.9	6.5	23.1	0.0
	신장	18.9	3.8	15.1	13.2	7.5	20.8	3.8	17.0	0.0
중복	31.9	6.4	12.8	6.4	5.3	18.1	6.4	12.8	0.0	
장애 등급	1급	31.0	6.7	15.5	8.4	5.3	17.2	6.2	9.3	0.5
	2급	20.2	10.8	15.3	13.8	2.8	17.8	6.9	11.6	0.9
	3급	21.3	12.5	17.2	5.7	8.4	17.2	8.4	9.1	0.0
	4급	24.3	5.6	18.7	13.1	7.5	6.5	7.5	16.8	0.0
생활 정도	기초생활 수급	18.4	8.7	17.5	9.7	8.4	17.5	7.8	11.3	0.6
	차상위	28.9	13.4	19.6	9.3	4.1	9.3	5.2	10.3	0.0
	해당 없음	25.9	9.2	15.2	10.3	4.3	17.0	7.0	10.6	0.5

9)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필요 정도



[그림 3-38]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필요 정도

<표 3-82>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필요 정도(전체)

(단위 : %, 명)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모르겠다	N
83.5	3.3	13.2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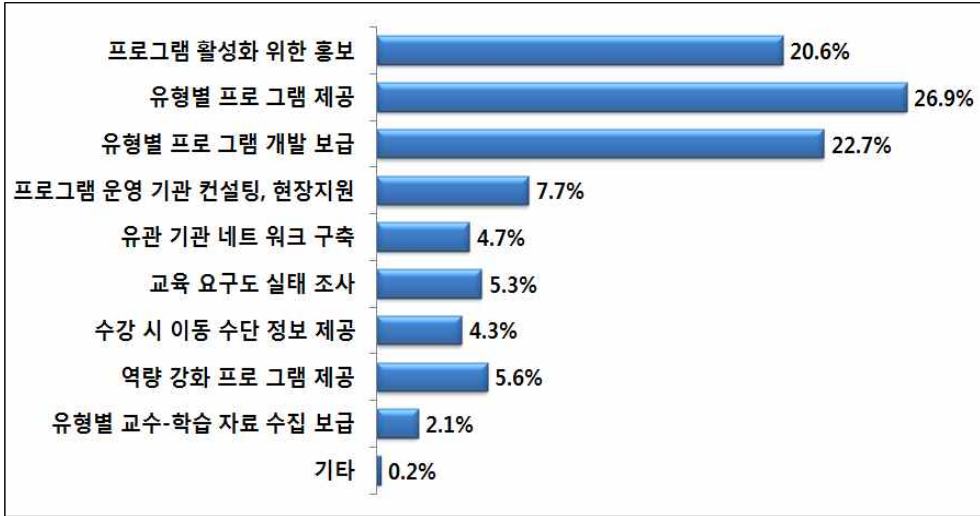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83.5%가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3%이며,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13.2%인 것으로 조사됨
 -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주시 동지역(83.7%)과 제주시 읍·면지역(86.8%), 뇌병변장애(94.0%), 중복장애(94.3%), 자폐성장애(92.3%), 1급(86.4%), 4급(87.5%), 생활정도에서 차상위(94.1%)에서 가장 많음.

<표 3-83> 평생학습 제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세부)

(단위 : %)

분류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모르겠다
전체		83.5	3.3	13.2
지역	제주시 등	83.7	2.8	13.5
	제주시 읍·면	86.8	4.4	8.8
	서귀포시 등	78.1	3.1	18.8
	서귀포시 읍·면	69.2	7.7	23.1
장애 유형	지체	89.7	4.1	6.2
	시각	63.3	3.3	33.3
	청각	73.4	3.1	23.4
	언어	75.0	0.0	25.0
	지적	80.8	1.4	17.8
	뇌병변	94.0	4.5	1.5
	자폐성	92.3	3.8	3.8
	정신	71.1	5.3	23.7
	신장	85.7	0.0	14.3
	중복	94.3	2.9	2.9
장애 등급	1급	86.4	4.8	8.8
	2급	79.0	2.5	18.5
	3급	84.9	1.9	13.2
	4급	87.5	5.0	7.5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83.8	7.2	9.0
	차상위	94.1	2.9	2.9
	해당 없음	82.3	1.9	15.8

9-1)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의 주요 역할



[그림 3-39]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의 주요 역할¹⁴⁾

<표 3-8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의 주요 역할(전체)

(단위 : %, 명)

프로그램 활성화 홍보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보급	프로그램 운영 기관 컨설팅 현장지원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요구도 실태 조사	수강 시 이동 수단 정보 제공	유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유형별 교수-학습 자료 수집 보급	기타	N
20.6	26.9	22.7	7.7	4.7	5.3	4.3	5.6	2.1	0.2	459

- 장애인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기관의 주요역할로는 ①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26.9%), ②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2.7%), ③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20.6%), ④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별 컨설팅 및 현장지원(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14) (1순위 빈도*2점+ 2순위 빈도*1점)/100

<표 3-85> 평생학습 전문기관 주요 역할(세부)

(단위 : %)

분류	프로그램 활성화 홍보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보급	프로그램 운영기관 별 컨설팅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요구도 실태조사	수강시 이동수단 정보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유형별 교수-학습 자료 수집 보급	기타	
전체	20.6	26.9	22.7	7.7	4.7	5.3	4.3	5.6	2.1	0.2	
지역	제주시 동	20.5	26.8	21.9	8.4	5.5	5.0	3.8	6.1	2.0	0.0
	제주시 읍·면	20.1	28.6	26.9	5.6	3.4	3.4	4.7	4.7	1.7	0.9
	서귀포시 동	20.0	24.0	18.7	8.0	1.3	10.7	8.0	5.3	4.0	0.0
	서귀포시 읍·면	30.8	23.1	19.2	3.8	3.8	15.4	3.8	0.0	0.0	0.0
장애 유형	지체	25.9	24.7	20.8	4.6	3.1	5.0	7.3	6.2	1.5	0.8
	시각	30.4	17.9	23.2	10.7	10.7	1.8	0.0	3.6	1.8	0.0
	청각	19.6	23.9	18.1	9.4	8.0	9.4	2.9	8.0	0.7	0.0
	언어	57.1	0.0	14.3	28.6	0.0	0.0	0.0	0.0	0.0	0.0
	지적	21.3	25.9	24.1	6.9	5.2	7.5	2.3	4.6	2.3	0.0
	뇌병변	20.9	26.7	25.1	8.6	1.6	4.8	4.8	4.8	2.7	0.0
	자폐성	11.1	36.1	30.6	5.6	8.3	2.8	1.4	2.8	1.4	0.0
	정신	20.0	28.8	15.0	7.5	5.0	7.5	5.0	7.5	3.8	0.0
	신장	5.9	27.5	23.5	7.8	9.8	0.0	13.7	9.8	2.0	0.0
중복	13.4	38.1	26.8	11.3	1.0	2.1	0.0	4.1	3.1	0.0	
장애 등급	1급	16.2	34.7	24.7	8.8	4.0	3.4	3.2	4.5	0.5	0.0
	2급	16.2	22.3	25.5	6.1	5.3	7.7	6.6	7.4	2.4	0.5
	3급	30.1	24.1	16.9	8.3	4.1	5.3	2.3	5.3	3.8	0.0
	4급	28.7	22.8	19.8	7.9	6.9	3.0	5.0	4.0	2.0	0.0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21.8	28.0	21.0	5.2	3.3	4.8	5.2	5.9	4.1	0.7
	차상위	32.3	26.0	21.9	5.2	2.1	5.2	2.1	3.1	2.1	0.0
	해당 없음	18.7	26.7	23.3	8.9	5.6	5.4	4.2	5.8	1.3	0.0

5. 응답자(해당 장애인) 현황

- 이번 조사에 응한 장애인들의 성별을 보면, 남성(53.7%), 여성(46.3%)이었고, 결혼형태별로는 기혼자(53.5%), 미혼자(46.5%)이며, 연령별로는 50대(25.6%)와 60대 이상(22.6%)이 다수를 차지함

<표 3-86> 장애인 응답자 현황(성, 결혼여부, 연령)

(단위 : %, 명)

분류		성		결혼형태		연령					N
		남성	여성	기혼	미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53.7	46.3	53.5	46.5	17.1	14.9	19.8	25.6	22.6	469
지역	제주시 동	54.3	45.7	57.3	42.7	16.8	15.2	20.1	23.8	24.1	328
	제주시 읍·면	55.8	44.2	43.2	56.8	12.6	14.7	21.1	30.5	21.1	95
	서귀포시 동	45.5	54.5	45.5	54.5	30.3	18.2	18.2	21.2	12.1	33
	서귀포시 읍·면	46.2	53.8	53.8	46.2	23.1	0.0	7.7	46.2	23.1	13
장애 유형	지체	55.6	44.4	65.7	34.3	5.1	10.1	28.3	38.4	18.2	99
	시각	34.3	65.7	94.3	5.7	0.0	2.9	8.6	11.4	77.1	35
	청각	43.8	56.3	62.5	37.5	12.5	21.9	14.1	18.8	32.8	64
	언어	80.0	20.0	60.0	40.0	0.0	20.0	20.0	20.0	40.0	5
	지적	52.1	47.9	21.9	78.1	42.5	27.4	17.8	5.5	6.8	73
	뇌병변	59.2	40.8	53.5	46.5	7.0	16.9	25.4	39.4	11.3	71
	자폐성	69.2	30.8	34.6	65.4	61.5	3.8	15.4	19.2	0.0	26
	정신	55.3	44.7	23.7	76.3	7.9	15.8	26.3	44.7	5.3	38
	신장	59.1	40.9	95.5	4.5	0.0	0.0	18.2	22.7	59.1	22
중복	58.3	41.7	47.2	52.8	33.3	13.9	8.3	16.7	27.8	36	
장애 등급	1급	62.2	37.8	59.5	40.5	18.2	9.5	20.3	25.0	27.0	148
	2급	51.8	48.2	44.0	56.0	20.5	21.7	21.7	21.1	15.1	166
	3급	43.9	56.1	49.5	50.5	15.9	15.9	19.6	30.8	17.8	107
	4급	56.3	43.8	77.1	22.9	4.2	6.3	12.5	31.3	45.8	48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59.8	40.2	46.4	53.6	3.6	13.4	26.8	32.1	24.1	112
	차상위	63.9	36.1	75.0	25.0	11.1	8.3	16.7	33.3	30.6	36
	해당 없음	50.5	49.5	53.6	46.4	22.4	16.2	17.8	22.4	21.2	321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 장애원인을 보면, ‘후천적 질병’에 의한 장애가 32.9%로 가장 많고, ‘선천적’(27.7%), ‘후천적 사고’(22.7%)임. 장애인 대부분이 ‘자가’ 형태로 거주함

<표 3-87> 장애인 응답자 현황(장애원인, 거주형태)

(단위 : %, 명)

분류	장애원인				거주형태					N	
	선천적	후천적 사고	후천적 질병	모름	자가	장애인 시설	임대	그룹홈	기타		
전체	27.7	22.7	32.9	16.8	62.9	2.8	25.2	1.5	7.7	469	
지역	제주시 동	30.2	19.6	33.3	16.8	62.2	3.4	24.7	1.8	7.9	328
	제주시 읍·면	13.8	34.0	31.9	20.2	63.2	1.1	27.4	1.1	7.4	95
	서귀포시 동	35.5	22.6	35.5	6.5	72.7	3.0	21.2	0.0	3.0	33
	서귀포시 읍·면	46.2	15.4	23.1	15.4	53.8	0.0	30.8	0.0	15.4	13
장애 유형	지체	15.3	45.9	35.7	3.1	62.6	0.0	30.3	1.0	6.1	99
	시각	8.6	28.6	60.0	2.9	71.4	0.0	28.6	0.0	0.0	35
	청각	37.7	16.4	36.1	9.8	65.6	3.1	26.6	0.0	4.7	64
	언어	40.0	20.0	40.0	0.0	20.0	0.0	60.0	0.0	20.0	5
	지적	43.8	8.2	11.0	37.0	57.5	6.8	12.3	5.5	17.8	73
	뇌병변	15.5	18.3	42.3	23.9	54.9	1.4	40.8	1.4	1.4	71
	자폐성	73.1	0.0	3.8	23.1	80.8	0.0	3.8	3.8	11.5	26
	정신	6.3	40.6	34.4	18.8	73.7	7.9	10.5	0.0	7.9	38
	신장	0.0	22.7	59.1	18.2	50.0	9.1	31.8	0.0	9.1	22
	중복	55.6	2.8	22.2	19.4	66.7	0.0	22.2	0.0	11.1	36
장애 등급	1급	41.8	24.0	24.7	9.6	68.2	2.0	22.3	0.7	6.8	148
	2급	29.7	23.4	27.8	19.0	64.5	4.2	22.3	1.8	7.2	166
	3급	16.8	15.0	45.8	22.4	55.1	2.8	29.9	2.8	9.3	107
	4급	2.1	33.3	45.8	18.8	58.3	0.0	33.3	0.0	8.3	48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19.8	33.3	36.0	10.8	44.6	3.6	40.2	0.9	10.7	112
	차상위	28.6	37.1	28.6	5.7	63.9	0.0	30.6	0.0	5.6	36
	해당 없음	30.4	17.3	32.3	20.1	69.2	2.8	19.3	1.9	6.9	321

- 동거형태를 보면, ‘가족과 동거’가 57.8%로 가장 많고, ‘단독거주’도 19.8%나 됨
- 활동보조인 활용여부를 보면, ‘이용한다’는 장애인이 20.9%이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의 대부분인 79.1%나 되었음

<표 3-88> 장애인 응답자 현황(동거형태, 활동보조원 이용현황)

(단위 : %, 명)

분류		동거 형태					활동보조원		N
		단독거주	부모동거	가족동거	지인동거	기타	이용함	이용안함	
전체		19.8	17.7	57.8	3.2	1.5	20.9	79.1	469
지역	제주시 동	19.2	16.2	59.1	4.0	1.5	21.0	79.0	328
	제주시 읍·면	22.1	26.3	47.4	2.1	2.1	23.2	76.8	95
	서귀포시 동	12.1	15.2	72.7	0.0	0.0	18.2	81.8	33
	서귀포시 읍·면	38.5	0.0	61.5	0.0	0.0	7.7	92.3	13
장애 유형	지체	36.4	10.1	49.5	3.0	1.0	28.3	71.7	99
	시각	25.7	2.9	65.7	2.9	2.9	14.3	85.7	35
	청각	25.0	15.6	57.8	0.0	1.6	1.6	98.4	64
	언어	40.0	20.0	20.0	0.0	20.0	0.0	100.0	5
	지적	5.5	24.7	61.6	6.8	1.4	19.2	80.8	73
	뇌병변	14.1	16.9	66.2	1.4	1.4	23.9	76.1	71
	자폐성	0.0	34.6	61.5	3.8	0.0	76.9	23.1	26
	정신	21.1	39.5	31.6	5.3	2.6	5.3	94.7	38
	신장	9.1	9.1	72.7	9.1	0.0	4.5	95.5	22
	중복	16.7	13.9	69.4	0.0	0.0	27.8	72.2	36
장애 등급	1급	21.6	17.6	57.4	2.0	1.4	45.9	54.1	148
	2급	14.5	21.7	57.8	4.8	1.2	12.7	87.3	166
	3급	20.6	16.8	59.8	1.9	0.9	6.5	93.5	107
	4급	31.3	6.3	54.2	4.2	4.2	4.2	95.8	48
생활 정도	기초생활수급	31.3	20.5	40.2	5.4	2.7	17.0	83.0	112
	차상위	25.0	25.0	50.0	0.0	0.0	33.3	66.7	36
	해당 없음	15.3	15.9	64.8	2.8	1.2	20.9	79.1	321

제4장 조사결과(Ⅱ) : 기관실태조사

1. 조사기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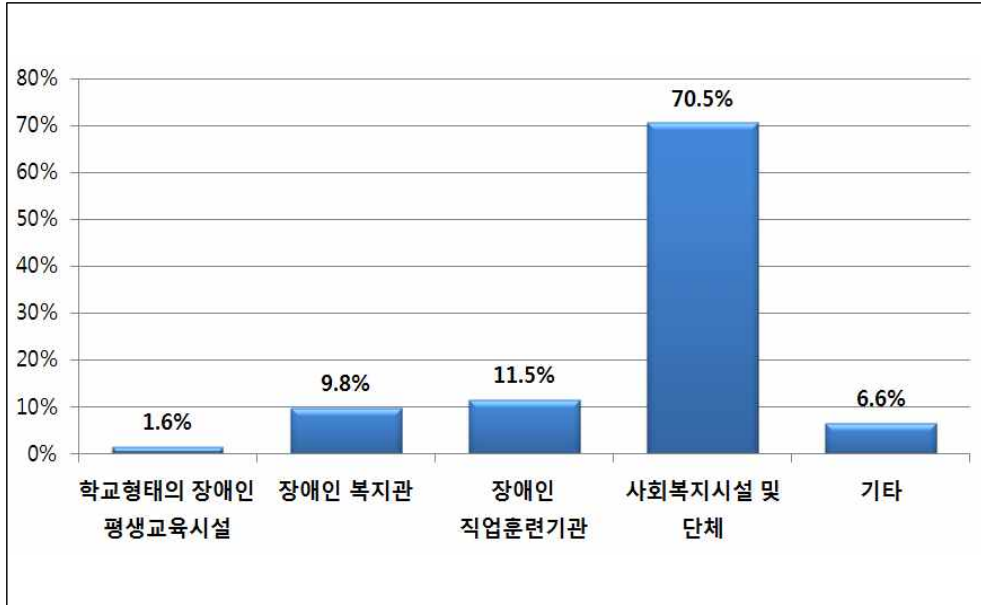
<표 4-1> 평생교육 기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대상 시설수	응답시설 수(비율)	비고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1	11 (10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3	2 (66.6)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	- -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6	6 (1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5	10 (66.6)	
	장애인 활동지원시설	2	2 (100)	
	기타 시설	2	2 (10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2 (100)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	1 (10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8	5 (62.5)	
장애인 단체		17	13 (76.5)	
기타 복지시설		7	7 (100)	
총 계		73	61 (83.5)	

주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6년 12월 기준) 중 장애인기관(시설) 현황자료 관련 장기 보호 목적인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함

1) 기관 유형



[그림 4-1] 평생교육 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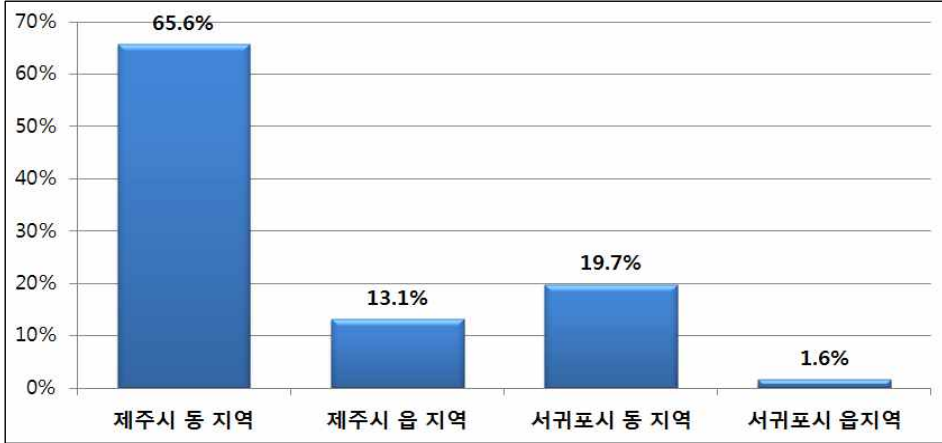
<표 4-2> 평생교육 기관 유형

(단위 : 개,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기타	N
1	6	7	43	4	61
1.6	9.8	11.5	70.5	6.6	

- ‘조사에 응한 61개 기관(단체, 협회 등)의 기관유형’을 조사한 결과, ‘사회 복지 시설 및 단체’가 43개(7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장애인 직업 훈련기관’ 7개(11.5%), ‘장애인복지관’ 6개(9.8%), ‘기타’ 4개(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기관 소재지, 설립주체, 운영형태



[그림 4-2] 평생교육 기관 소재지, 설립주체, 운영형태

<표 4-3> 평생교육 기관 소재지, 설립주체, 운영형태

(단위 : 개, %)

소재지	제주시 동 지역	제주시 읍 지역	서귀포시 동 지역	서귀포시 읍 지역	N
빈도	40	8	12	1	61
백분율	65.6	13.1	19.7	1.6	
설립주체	국가/지자체		법인	개인	N
빈도	3		54	4	61
백분율	4.9		88.5	6.6	
운영형태	직영		위탁		N
빈도	49		12		61
백분율	80.3		19.7		

○ 소재지

- 조사에 응한 61개 기관(단체, 협회 등)의 소재지를 보면, ① 제주시 동 지역(40개, 65.6%), ② 서귀포시 동지역(12개, 19.7%), ③ 제주시 읍 지역(8개, 13.1%), ④ 서귀포시 읍 지역(1개, (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설립주체

- 조사에 응한 61개 기관(단체, 협회 등)의 설립주체를 보면 ① 법인(54개, 88.5%), ② 개인(4개, 6.6%), ③ 국가/지자체(3개, (4.9%) 순으로 나타남

○ 운영형태

- 조사에 응한 61개 기관(단체, 협회 등)의 운영형태로는 ① 직영(49개, 80.3%)로 대부분으로 차지했고, ② 위탁은 12개(19.7%)인 것으로 조사됨

3) 직원 및 교(강)사 현황

<표 4-3> 직원 및 교(강)사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직원현황			교(강)사 현황		
	총계	남성	여성	총계	1년 미만	1년 이상
사례수	61	55	59	31	16	29
평균	14.0	6.8	8.7	9.5	3.4	8.2
최소값	1	1	1	1	1	1
최대값	60	33	40	50	10	43

- 직원 현황으로는 평균 14명의 직원이 있고, 최소 1명, 최대 60명인 것으로 조사됨

- 교(강)사 현황으로는 평균 9.5명의 직원이 있고, 최소 1명, 최대 50명인 것으로 조사됨

- 교(강)사의 근무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평균 3.4명이고, 최소 1명, 최대 10명이었으며, '1년 이상'인 경우는 평균 8.2명, 최소 1명, 최대 43명인 것으로 나타남

4) 평생교육사 보유 현황

<표 4-4> 평생교육사 보유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평생교육사 현황			자격급수 현황		
	총계	남성	여성	1급	2급	3급
사례수	12	6	10	0	11	1
평균	1.50	1.17	1.10	0.0	1.45	2.00
최소값	1	1	1	0	3	2
최대값	3	2	2	0	3	2

- 평생교육사 보유 현황을 보면 평균 1.5명의 평생교육사를 보유하고 있고, 최소 1명, 최대 3명인 것으로 조사됨
 - 남성의 경우 평균 1.17명, 최소 1명, 최대 2명이었음. 여성의 경우 평균 1.10명, 최소 1명, 최대 2명인 것으로 조사됨
- 평생교육사 자격증 급수는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전혀 없었고, 2급 자격증 소지자는 11개 기관에 평균 1.45명, 최소 3명, 최대 3명이었으며, 3급 자격증 소지자는 1개 기관에 평균 2.00명, 최소 2명, 최대 2명임

5) 강의실 보유 현황

<표 4-5> 강의실 보유 현황

구분	강의실 수(실)	강의실 총 수용규모(명)
사례수	48	45
평균	2.08	48.4
최소값	1	2
최대값	8	400

- 장애인 관련 기관(협회 등)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의실 수는 평균 2.08개이며, 최소 1개, 최대 8개실인 것으로 조사됨
- 강의실 총 수용규모는 평균 48.4명이며, 최소 2명, 최대 400명인 것으로 조사됨
- 기타시설 보유 현황
 - 기타시설 보유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 4-6> 기타 시설 보유 현황

시설(수)	빈도	시설(수)	빈도	시설(수)	빈도
교육실 1	1	프로그램실 4	1	휴게실 1	1
다목적실 1	2	휴게실 1	3	도자기공방 1	1
다목적실 2	1	도자기공방 1	1	상담실 1	1
상담실 1	2	상담실 1	1	에어로빅실 1	1
생활실 1	1	에어로빅실 1	1	운동실 1	2
원예온실 1	1	운동실 1	2	음악실 1	2
인터넷카페 1	1	음악실 1	2	주방 1	1
장애인도서관 1	1	주방 1	1	집단활동실 1	1
전시실 1	1	집단활동실 1	1	탕비실 1	2
체육실 1	3	탕비실 1	2	프로그램실 1	1
프로그램실 1	2	프로그램실 1	1	휴게실 1	1

6) 장애인 접근성

〈표 4-7〉 장애인 접근성(시각/청각 장애인 지원 여부)

(단위 : 개, %)

시각 장애인 지원 여부	예	아니오	N
빈도	24	37	61
백분율	39.3	60.7	
청각 장애인 지원 여부	예	아니오	N
빈도	9	52	61
백분율	14.8	85.2	

○ 시각장애인 지원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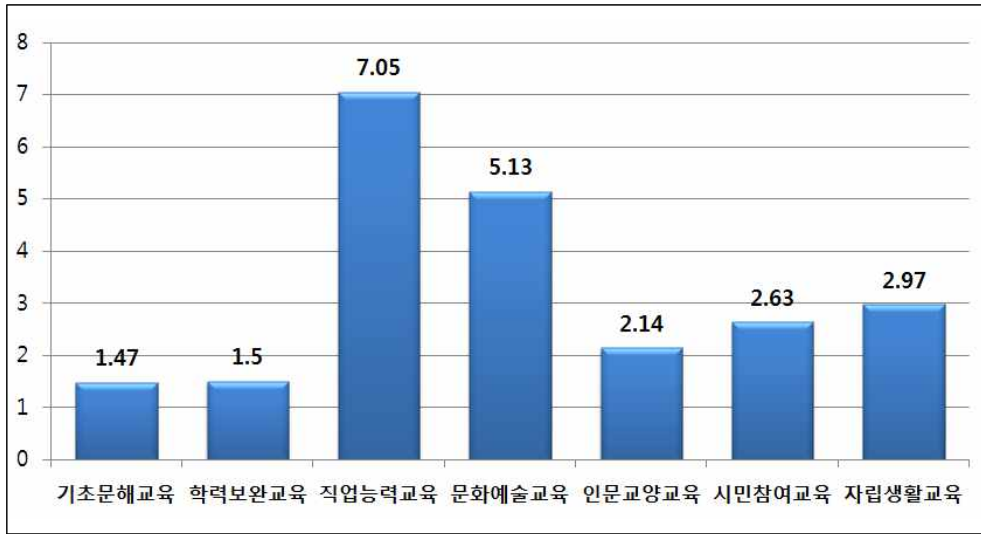
- 조사에 응한 61개 기관(단체, 협회 등)의 시각장애인 지원 여부를 살펴 보면, ‘지원한다’는 기관이 24개(39.3%)이며,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관이 37개(60.7%)인 것으로 조사됨

○ 청각장애인 지원여부

- ‘지원한다’는 기관이 9개(14.8%)이며,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관이 52개(85.2%)인 것으로 조사됨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기관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그림 4-3]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표 4-8>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단위 : 개, %)

구분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사례수	17	4	19	40	21	16	29
평균	1.47	1.50	7.05	5.13	2.14	2.63	2.97
최소값	1	1	1	1	1	1	1
최대값	3	3	77	19	5	14	11

-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① 기초문해 교육(평균 1.47회), ② 학력보완 교육(평균 1.50회), ③ 직업능력 교육(평균 7.05회), ④ 문화예술 교육(평균 5.13회), ⑤ 인문교양 교육(평균 2.14회), ⑥ 시민참여 교육(평균 2.63회), ⑦ 자립생활 교육(평균 2.97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됨

2) 프로그램 주 운영 시간대

<표 4-9>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주 운영시간대

구분	평일 새벽/ 아침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저녁	주말 오전	주말 오후	평일 오전/ 오후	N
기초문해 교육	-	47.1	11.8	-	-	5.9	35.3	17
학력보완 교육	-	33.3	-	-	-	-	66.7	3
직업능력 교육	-	16.7	16.7	-	-	-	66.7	18
문화예술 교육	5.3	15.8	42.1	-	-	-	36.8	38
인문교양 교육	-	14.3	28.6	-	19.0	4.8	33.3	21
시민참여 교육	-	26.7	33.3	6.7	13.3	-	20.0	15
자립생활 교육	-	21.4	21.4	3.6	7.1	-	46.4	28

- 프로그램 운영시간대는 ① 기초문해 교육(평일 오전, 47.1%), ② 학력보완 교육(평일 오전/오후, 66.7%), ③ 직업능력 교육(평일 오전/오후, 66.7%), ④ 문화예술 교육(평일 오후, 42.1%), ⑤ 인문교양 교육(평일 오전/오후, 33.3%), ⑥ 시민참여 교육(평일 오후, 33.3%), ⑦ 자립생활 교육(평일 오전/오후, 46.4%)로 조사되었음

3) 프로그램 학습비 부담 여부

<표 4-10>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학습비 부담 여부

(단위 : 개, %)

구분	무료(국가/지자체)	유료	소계	N
기초문해 교육	76.5	23.5	100%	17
학력보완 교육	100.0	0.0	100%	3
직업능력 교육	84.2	15.8	100%	19
문화예술 교육	87.2	12.8	100%	39
인문교양 교육	85.7	14.3	100%	21
시민참여 교육	87.5	12.5	100%	16
자립생활 교육	75.0	25.0	100%	28

- 2017년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학습비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부담으로 인해 무료의 경우 ① 기초문해 교육(76.5%), ② 학력보완 교육(100%), ③ 직업능력 교육(84.2%), ④ 문화예술 교육(87.2%), ⑤ 인문교양 교육(85.7%), ⑥ 시민참여 교육(87.5%), ⑦ 자립생활 교육(75.0%) 순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1인 학습비 부담에 따른 비용은 ① 기초문해 교육은 평균 6만원(4명 응답), ② 직업능력 교육은 평균 6천원(9명 응답), ③ 문화예술 교육은 평균 2만원(11명 응답), ④ 인문교양 교육은 평균 1만원(6명 응답), ⑤ 시민참여 교육은 평균 2.5만원(4명 응답), ⑥ 자립생활 교육은 평균 8만원(9명 응답)으로 응답하였음

4) 프로그램 수강인원

<표 4-11>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인원

(단위 : 명, %)

구분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총인원	N	15	3	16	36	18	14	25
	평균	20.7	12.3	28.8	57.4	65.8	58.9	41.2
	최소	5	4	1	5	8	10	4
	최대	100	20	125	600	305	181	300
남성	N	15	2	14	35	17	12	23
	평균	11.7	5.5	16.1	56.9	28.6	29.8	25.2
	최소	2	4	4	2	5	3	2
	최대	55	7	81	783	107	81	200
여성	N	15	1	11	32	17	13	22
	평균	9	6	10	25.8	41.1	32.1	18.5
	최소	2	6	1	1	5	4	1
	최대	45	6	30	139	198	101	100

- 2017년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총인원은 ① 기초 문해 교육(평균 20.7명), ② 학력보완 교육(평균 12.3명), ③ 직업능력 교육(평균 28.8명), ④ 문화예술 교육(평균 57.4명), ⑤ 인문교양 교육(평균 65.8명), ⑥ 시민참여 교육(평균 58.9명), ⑦ 자립생활 교육(평균 41.2명)이 참여하였음
- 프로그램의 수강 총인원 중 남성은 ① 문화예술 교육(평균 56.9명), ② 시민 참여 교육(평균 29.8명), ③ 인문교양 교육(평균 28.6명), ④ 자립생활 교육(평균 25.2명) 순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됨
- 프로그램 수강 총인원 중 여성은 ① 인문교양 교육(평균 41.1명), ② 시민 참여 교육(평균 32.1명), ③ 문화예술 교육(평균 25.8명), ④ 자립생활 교육(평균 18.5명) 순임

5) 프로그램 영역별 참여대상자

<표 4-12>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대상자

(단위 : 명, %)

구분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지체	7.9	25.0	7.8	11.3	14.3	12.2	7.5
시각	7.9		2.0	5.7	8.9	9.8	6.0
청각	13.2		5.9	6.6	7.1	4.9	3.0
언어	2.6	37.5	3.9	4.7	5.4	4.9	3.0
지적	31.6	12.5	25.5	26.4	21.4	22.0	34.3
자폐성	15.8		21.6	15.1	10.7	14.6	23.9
	47.4		47.1	41.5	32.1	36.6	58.2
정신			9.8	5.7	5.4	7.3	4.5
신장			3.9	2.8	5.4	2.4	1.5
심장	2.6		2.0	0.9	1.8	2.4	
호흡기			2.0	0.9			1.5
장루,요루			2.0	0.9	1.8	2.4	
뇌전증	2.6		3.9	2.8	3.6	2.4	3.0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는 ① 기초문해 교육은 ‘지적장애’(31.6%), ② 학력보완 교육은 ‘언어장애’(37.5%), ③ 직업능력 교육은 ‘지적장애’(25.5%)와 ‘자폐성장애’(21.6%), ④ 문화예술 교육은 ‘지적장애’(26.4%), ⑤ 인문교양 교육은 ‘지적장애’(21.4%), ⑥ 시민참여 교육은 ‘지적장애’(22.0%), ⑦ 자립생활 교육은 ‘지적장애’(34.3%)와 ‘자폐성장애’(23.9%)가 가장 많았음

6)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기간

<표 4-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

(단위 : %)

구분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1개월			4.0		16.0	33.3	10.9
3개월			12.0	8.9	8.0	6.7	9.1
6개월	16.7		20.0	11.1	16.0	6.7	7.3
1년	72.2	60.0	36.0	53.3	44.0	13.3	50.9
1년이상	11.1	40.0	28.0	30.8	16.0	40.0	21.8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① 기초문해 교육은 1년(72.2%), ② 학력보완 교육은 1년(60.0%), ③ 직업능력 교육은 1년(36.0%), ④ 문화예술 교육은 1년(53.3%), ⑤ 인문교양 교육은 1년(44.0%), ⑥ 시민참여 교육은 1개월(33.3%), 1년 이상(40.0%)로, ⑦ 자립생활 교육은 1년이 50.9%로 가장 많았음

7) 프로그램 총 학습시간

<표 4-14>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총 학습시간

(단위 : 개, 시간)

구분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N	12	2	12	30	14	12	21
평균	99	581	1,264	261	34	71	833
최소	10	36	20	32	5	3	1
최대	240	1,125	9,909	1,920	100	360	10,786

- 프로그램의 총 학습시간으로는 ① 기초문해 교육(평균 99시간), ② 학력보완 교육(평균 581시간), ③ 직업능력 교육(평균 1,264시간), ④ 문화예술 교육(평균 261시간), ⑤ 인문교양 교육(평균 34시간), ⑥ 시민참여 교육(평균 71시간), ⑦ 자립생활 교육(평균 833시간)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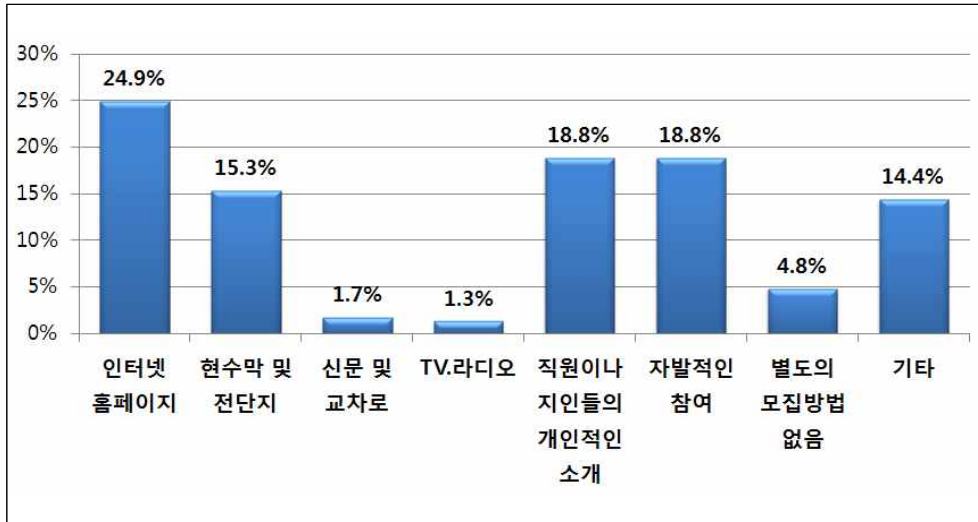
8) 프로그램 1일 학습시간

<표 4-15>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1일 학습시간

구분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1시간	56.3	20.0		21.1	15.8	26.7	33.3
2시간	31.3	40.0	53.3	52.6	36.8	40.0	37.0
3시간	6.3		20.0	10.5	5.3	6.7	3.7
4시간	6.3	20.0	20.0	13.2	10.5	20.0	11.1
5시간 이상		20.0	6.7	2.6	31.6	6.7	14.8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1일 학습시간은 ① 기초문해 교육은 ‘1시간’이 56.3%, ② 학력보완 교육은 ‘2시간’이 40.0%, ③ 직업능력 교육은 ‘2시간’이 53.3%, ④ 문화예술 교육은 ‘2시간’이 52.6%, ⑤ 인문교양 교육은 ‘2시간’이 36.8%, ⑥ 시민참여 교육은 ‘2시간’이 40.0%, ⑦ 자립생활 교육은 2시간이 37.0%로 가장 많음

3.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매체



[그림 4-4] 교육생 모집 홍보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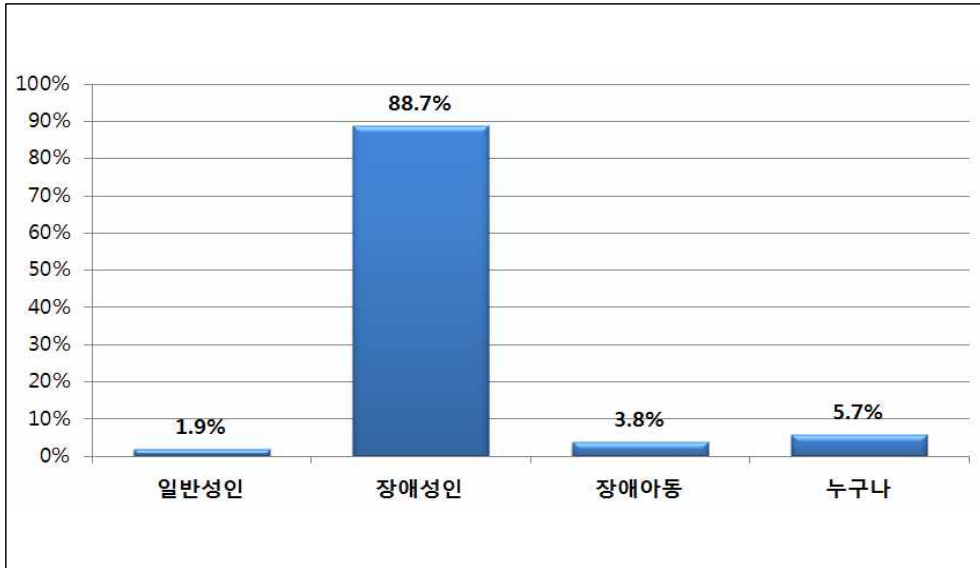
<표 4-16> 교육생 모집 홍보매체(복수응답)

(단위 : 명, %)

인터넷 홈페이지	현수막 및 전단지	신문 및 교차로	TV.라디오	직원이나 지인들의 개인적인 소개	자발적인 참여	별도의 모집방법 없음	기타
57	35	4	3	43	43	11	33
24.9	15.3	1.7	1.3	18.8	18.8	4.8	14.4

○ 교육생 모집을 위해서는 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24.9%), ② 직원이나 지인들의 개인적인 소개(18.8%), ③ 자발적인 참여(18.8%), ④ 기타 방법(14.4%) 등이었음. ‘별도의 모집방법이 없다’는 응답도 4.8%인 것으로 조사됨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주요 대상



[그림 4-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주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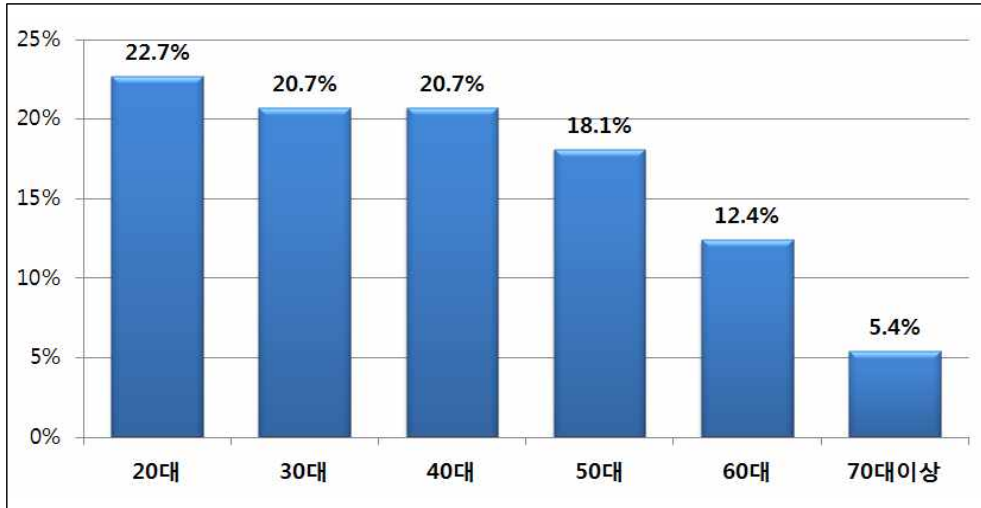
<표 4-17>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주요 대상자

(단위 : 명, %)

일반성인	장애인	장애아동	누구나	N
1	47	2	3	53
1.9	88.7	3.8	5.7	

-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요 대상자는 주로 ‘장애인’이 대상인 경우가 47개(8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은 ‘누구나’ 대상인 경우가 3개(5.7%)이며, ‘장애아동’ 2개(3.8%), ‘일반성인’ 1개(1.9%) 순으로 조사됨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연령대



[그림 4-6]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연령대

<표 4-18>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연령대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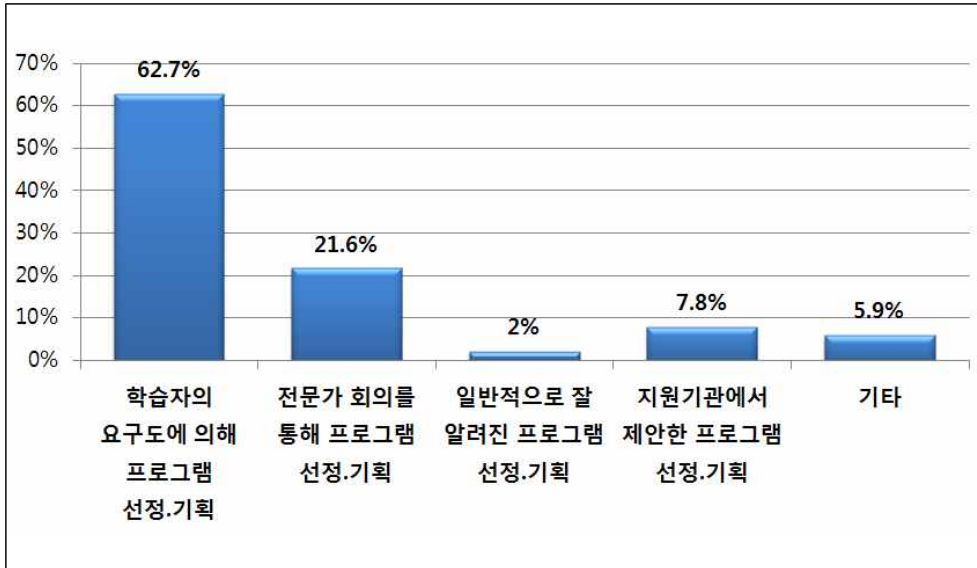
(단위 : 명,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N
68	62	62	54	37	16	299
22.7	20.7	20.7	18.1	12.4	5.4	

-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① 20대(22.7%), ② 30대(20.7%), ③ 40대(20.7%), ④ 50대(18.1%),
 ⑤ 60대(12.4%), ⑥ 70대이상(5.4%)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15) (1순위 빈도*3점+ 2순위 빈도*2점+ 3순위 빈도*1점)/100

6.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기획방법



[그림 4-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기획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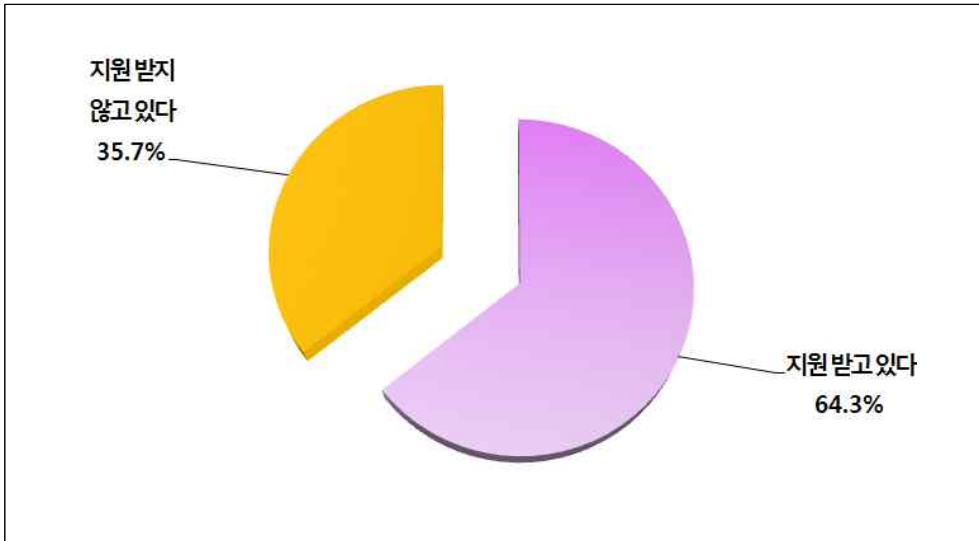
<표 4-1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기획방법

(단위 : 개, %)

학습자의 요구도에 의해 프로그램 선정·기획	전문가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선정·기획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프로그램 선정·기획	지원기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선정·기획	기타	N
32	11	1	4	3	51
62.7	21.6	2.0	7.8	5.9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정·기획하는 방법으로는 ① 학습자의 요구(62.7%), ② 전문가 회의(21.6%), ③ 지원기관에서 제안(7.8%), ④ 기타(5.9%), 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프로그램 선정·기획(2.0%) 순으로 조사됨

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여부



[그림 4-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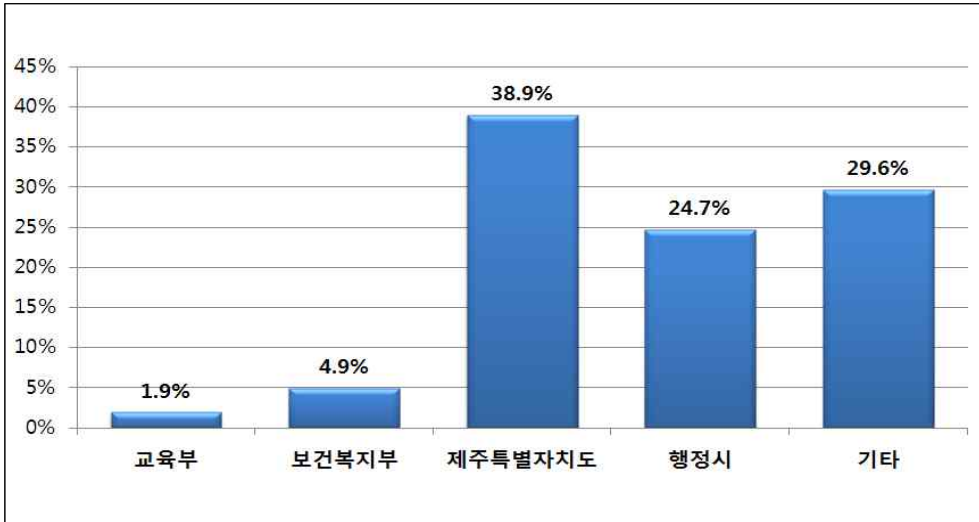
<표 4-20>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여부

(단위 : 개, %)

지원 받고 있다	지원 받지 않고 있다	N
36	20	56
64.3	35.7	

- 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예산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한 응답은 36개 기관 64.3%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지원 받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20개 기관 35.7%인 것으로 조사됨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기관



[그림 4-9]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기관

<표 4-2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기관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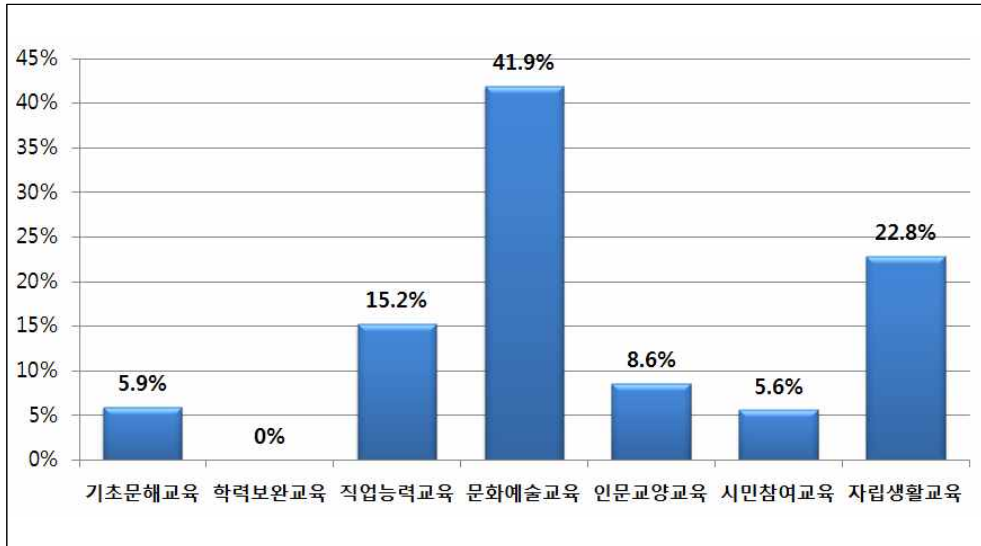
(단위 : 개, %)

교육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기타	N
3	8	63	40	48	162
1.9	4.9	38.9	24.7	29.6	

- ① 제주특별자치도(38.9%), ② 기타 방법이나 기관(29.6%), ③ 행정시 (24.7%), ④ 보건복지부(4.9%), ⑤ 교육부(1.9%) 순으로 나타남
- ‘기타’ 기관은 주로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애인체육회, 후원금,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중앙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회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6) (1순위 빈도*3점+ 2순위 빈도*2점+ 3순위 빈도*1점)/100

8.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학습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그림 4-10] 장애인 학습자 선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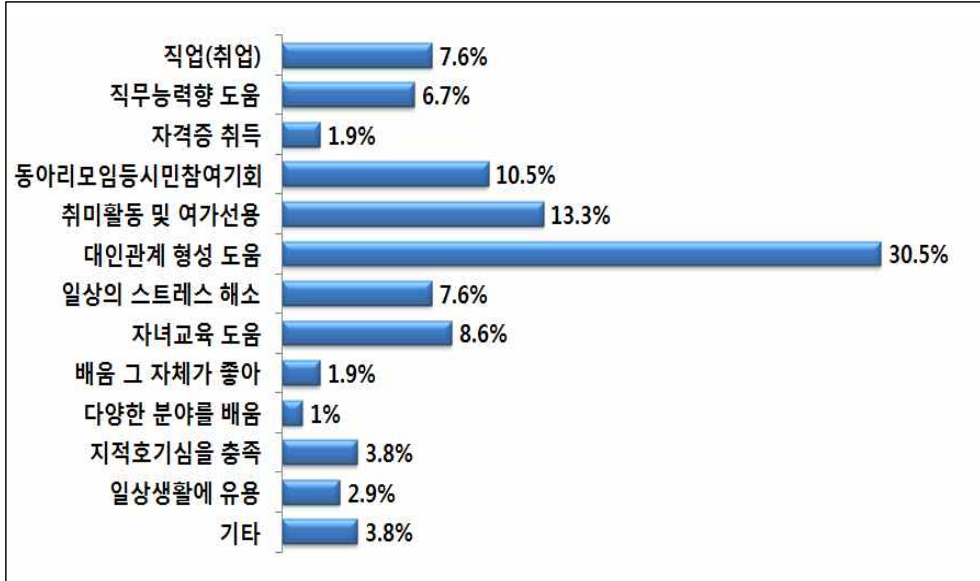
<표 4-22> 장애인 학습자 선호 프로그램

(단위 : 개, %)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18	-	46	127	26	17	69
5.9	-	15.2	41.9	8.6	5.6	22.8

- 장애인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① 문화예술 교육(41.9%), ② 자립생활 교육(22.8%), ③ 직업능력 교육(15.2%), ④ 인문교양 교육(8.6%), ⑤ 기초문해 교육(5.9%), ⑥ 시민참여 교육(5.6%)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음

9.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 목적



[그림 4-11]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 목적(복수응답)

<표 4-23>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참여 목적(복수응답)

(단위 : 개, %)

직업(취업)	직무능력향상 도움	자격증 취득	동아리모임등시민참여기회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대인관계형성 도움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	자녀교육 도움	배움 그 자체가 좋아	다양한 분야를 배움	지적호기심을 충족	일상생활에 유용	기타
8	7	2	11	14	32	8	9	2	1	4	3	4
7.6	6.7	1.9	10.5	13.3	30.5	7.6	8.6	1.9	1.0	3.8	2.9	3.8

- 기관이 생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으로는 ①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어서(30.5%), ②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13.3%), ③ 동아리 모임 등 시민참여 기회(10.5%), ④ 자녀교육에 도움(8.6%), ⑤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7.6%) 등의 순으로 조사됨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담당자의 전반적 의견

<표 4-24>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 의견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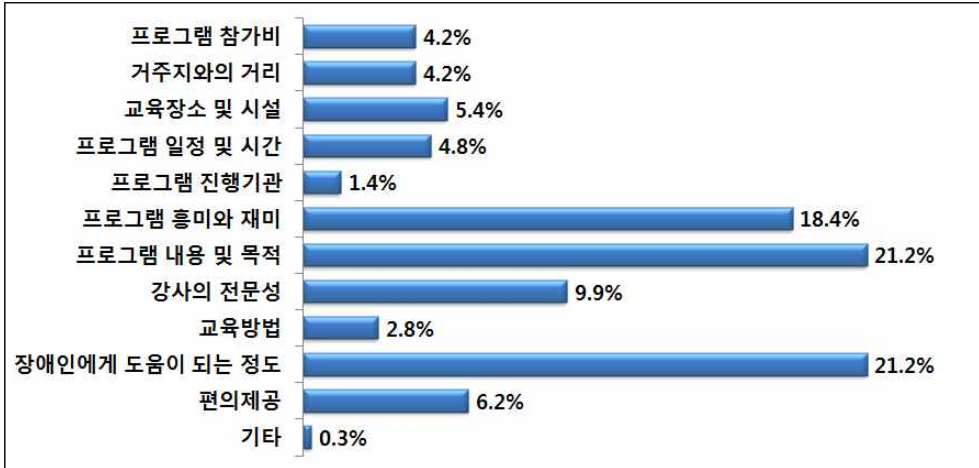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평가	평균 (5점 척도)
①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홍보가 잘 되고 있다.	3.8	13.2	50.9	28.3	3.8	32.1	3.15
② 프로그램 운영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7	5.6	22.2	51.9	16.7	68.5	3.72
③ 장애인에게 도움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0.0	9.3	13.0	59.3	18.5	77.8	3.87
④ 장애인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0.0	1.9	27.8	57.4	13.0	70.4	3.81
⑤ 장애인의 학습참여를 위해 교통편 제공 및 편의시설 제공이 잘되고 있다.	3.8	13.2	22.6	26.4	34.0	60.4	3.74
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	3.8	34.0	35.8	24.5	1.9	26.4	2.87
⑦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0.0	0.0	20.4	55.6	24.1	79.6	4.04
⑧ 강사 및 직원은 평생학습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0.0	3.8	22.6	50.9	22.6	73.6	3.92
⑨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장애인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1.9	1.9	16.7	51.9	27.8	79.6	4.02

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장애성인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다	0.0	5.6	13.0	68.5	13.0	81.5	3.89
---	-----	-----	------	------	------	------	------

- 기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충분한 지원(26.4%)과 ① 평생교육 홍보(32.1%)에 대해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 그러나 ⑩ 전반적 만족도(81.5%)는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⑦ 삶의 질 향상에 기여(79.6%), ⑨ 프로그램이 장애인 맞춤형으로 운영(79.6%), ③ 장애인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제공(77.8%), ⑧ 강사 및 직원 업무관련 전문성(73.6%)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11.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선 고려사항



[그림 4-1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우선 고려 사항(복수응답)

<표 4-2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고려 사항¹⁷⁾(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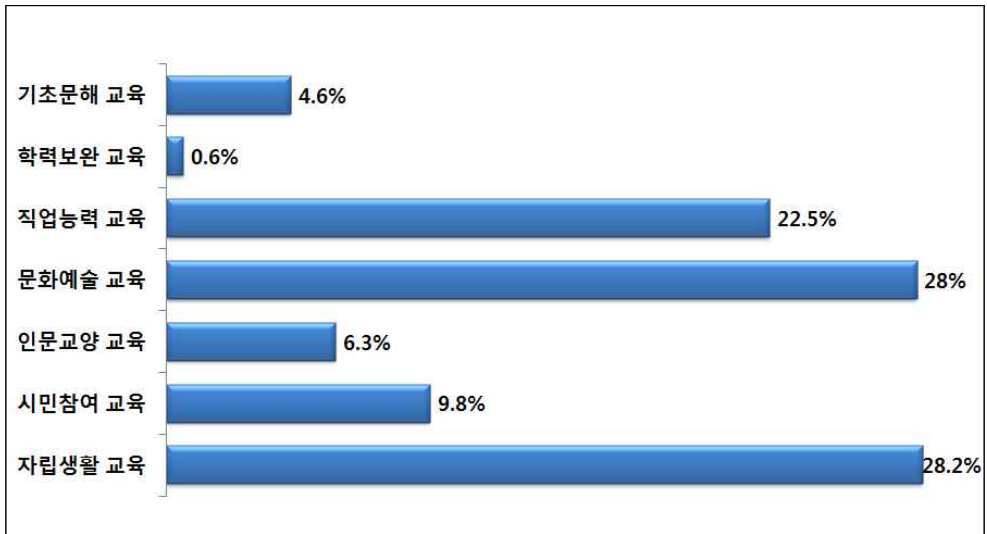
(단위 : 개, %)

프로그램 참가비	거주지와의 거리	교육장소 및 시설	프로그램 일정 및 시간	프로그램 진행기관	프로그램 흥미와 재미	프로그램 내용 및 목적	강사의 전문성	교육방법	장애인에게 도움	편의제공	기타	N
15	15	19	17	5	65	75	35	10	75	22	1	59
4.2	4.2	5.4	4.8	1.4	18.4	21.2	9.9	2.8	21.2	6.2	0.3	100%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① 프로그램 내용 및 목적(21.2%), ②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21.2%), ③ 프로그램 흥미와 재미(18.4%), ④ 강사의 전문성(9.9%), ⑤ 편의 제공(편의시설, 수화통역,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17) (1순위 빈도*3점+ 2순위 빈도*2점+ 3순위 빈도*1점)/100

2) 프로그램 운영시 가장 필요한 영역



[그림 4-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호 영역(복수응답)

<표 4-26>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호 영역¹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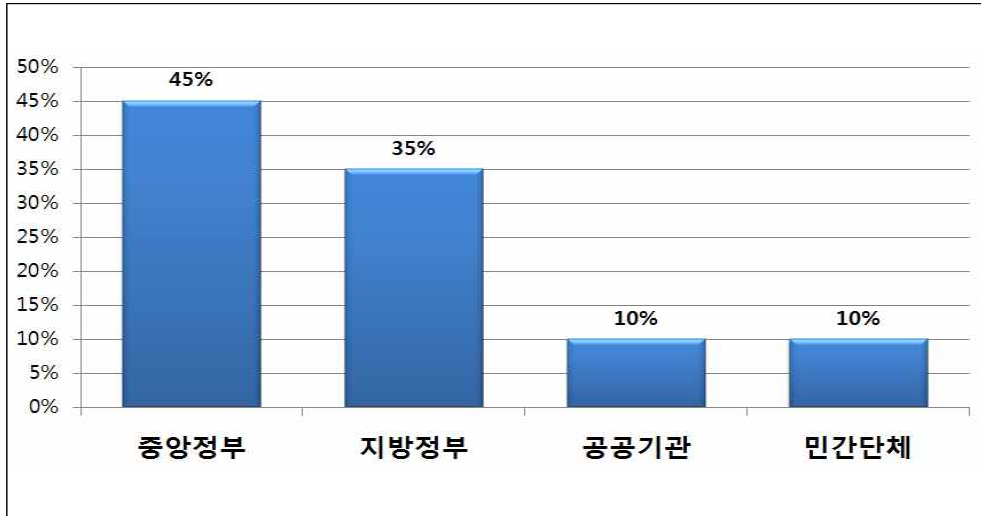
(단위 : 개, %)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교육	N
16	2	78	97	22	34	98	59
4.6	0.6	22.5	28.0	6.3	9.8	28.2	100%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영역은 ① 자립생활 교육(28.0%), ② 문화예술 교육(28.0%), ③ 직업능력 교육(22.5%), ④ 시민참여 교육(9.8%), ⑤ 인문교양 교육(6.3%), ⑥ 기초문해 교육(4.6%) 순으로 제시함

18) (1순위 빈도*3점+ 2순위 빈도*2점+ 3순위 빈도*1점)/100

3)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



[그림 4-14]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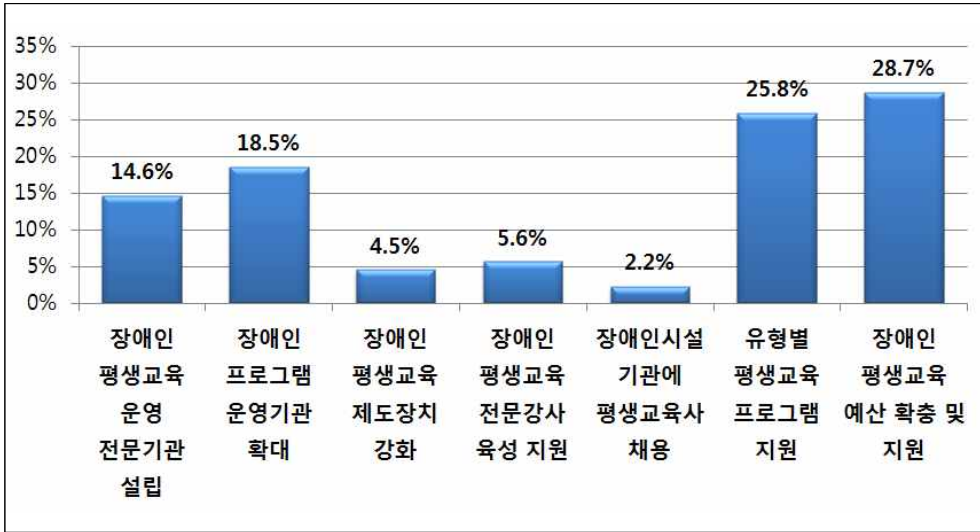
<표 4-27>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

(단위 : 개,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N
27	21	6	6	60
45.0	35.0	10.0	10.0	100%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로는 ① 중앙정부(45.0%), ② 지방정부(35.0%) 순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③ 공공기관(10.0%), ④ 민간단체(10.0%) 등의 순으로 제시함

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행방안



[그림 4-15]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선행 방안(복수응답)

<표 4-28>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선행방안¹⁹⁾(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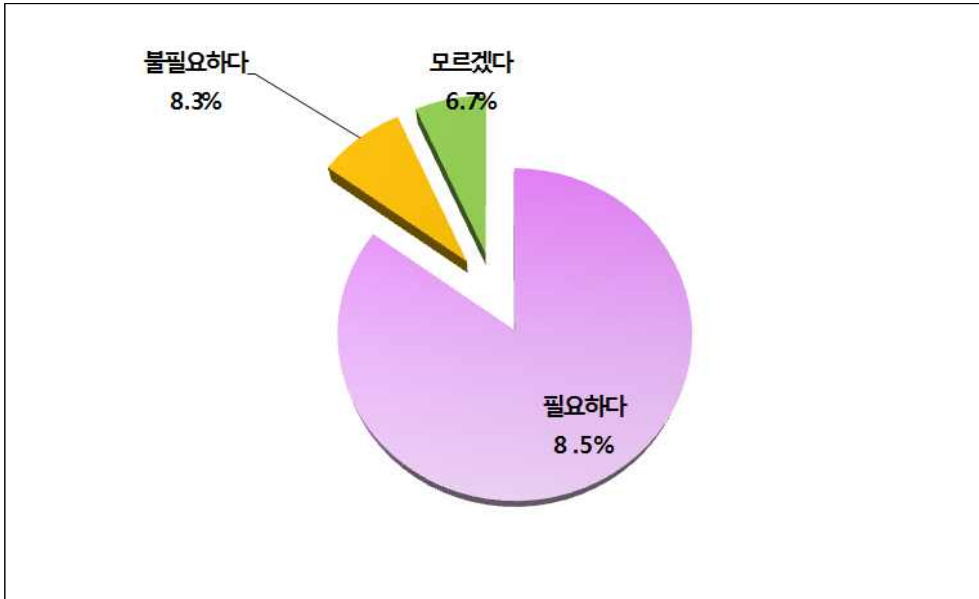
(단위 : 개, %)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전문기관(거점기관) 설립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제도장치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강사 육성 지원	장애인시설 기관에 평생교육사 채용	장애인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 및 지원	N
26	33	8	10	4	46	51	58
14.6	18.5	4.5	5.6	2.2	25.8	28.7	100%

-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①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충 및 지원(28.7%), ② 장애인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25.8%), ③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18.5%), ④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전문기관(거점기관) 설립(14.6%) 순임

19) (1순위 빈도*2점+ 2순위 빈도*1점)/100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그림 4-1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관 설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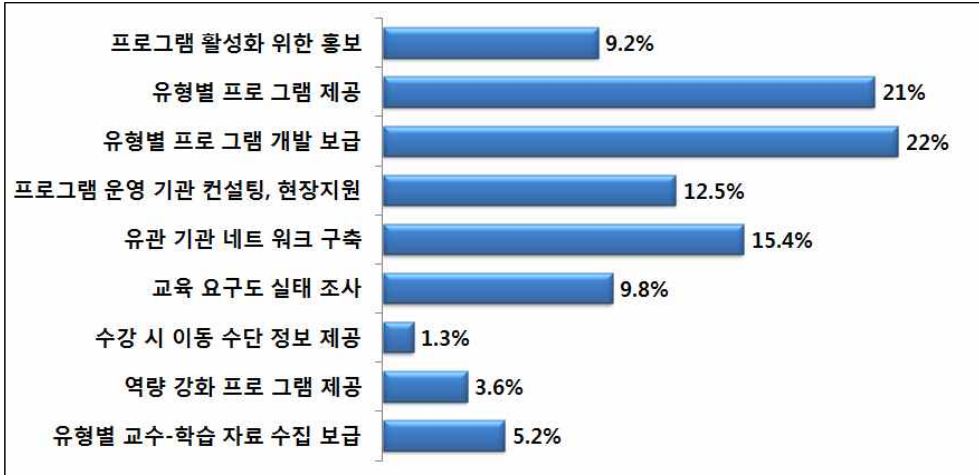
<표 4-29> 평생학습 제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단위 : 개, %)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모르겠다	N
51	5	4	60
85.0	8.3	6.7	

-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하는 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5.0%가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8.3%이며,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6.7%인 것으로 조사됨

5-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관의 주요역할



[그림 4-1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관의 주요 역할(복수응답)

<표 4-30>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관의 주요역할²⁰⁾(복수응답)

(단위 : 개, %)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홍보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보급	프로그램 운영 기관별 컨설팅 현장 지원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요구도 실태 조사	수강 시 이동 수단 정보 제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유형별 교수-학습 자료 수집 보급	N
28	64	67	38	47	30	4	11	16	51
9.2	21.0	22.0	12.5	15.4	9.8	1.3	3.6	5.2	100%

- 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주요 역할로는 ①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2.0%), ②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21.0%), ③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15.4%), ④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별 컨설팅 및 현장지원(12.5%) 순으로 제시함

20) (1순위 빈도*3점+ 2순위 빈도*2점+ 3순위 빈도*1점)/100

제5장 종합 정리 및 시사점

- 본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한 『2018년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로 제주지역 거주 장애성인들의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 경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요조사를 수행하였음. 더불어 장애인 유관기관(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반여건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음
 - 조사는 제주지역 거주 장애성인(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유형별 및 등급별, 지역별 구분을 통해 450명 이상 무작위로 추출하여 1: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음.
 - 기관(시설)현황 조사는 장애인 관련 등록 기관(시설) 103개 중 장애인 돌봄이 중심인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73개에 대하여 개별 방문 및 면접을 통해 전수조사(유효표본 61개)를 실시하였음
 - 이외에도 장애인 기관(단체) 관계자 대상(15개)으로 초점집단면담조사를 5회 실시하여 양적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 개인 실태조사 영역은 크게 네 부분으로 ①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경험, ② 평생교육 참여동기 및 학습자의 의식변화 정도, ③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④ 응답자(해당 장애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 기관 실태조사는 ① 기관(시설) 일반현황 및 평생교육 운영 현황, ② 평생교육 세부 프로그램 운영 현황, ③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④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 초점집단면담조사는 ① 장애인 기관(시설)에서의 평생교육 운영 정도 및 운영 프로그램 종류, ②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애인들의 참여 및 반응, ③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애로점, ④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려 및 발전 방안으로 나누어 면담을 실시함

1. 종합 정리

1) 개인 실태조사 결과

-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참여경험 부문 결과에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83.2%)이지만 실제 참여 경험은 42.0%로 절반 수준 정도임. 평생교육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①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재(29.0%),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8.9%), ③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1.1%)로 나타났음. 또한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에 대한 재차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56.1%) 약간 높기는 하나 참여하지 않겠다와 모르겠다의 반응을 합친 부정적 의견 또한 높은 결과(43.9%)를 보여주고 있음
 -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 정도는 장애유형별, 등급별, 생활정도별에 상관없이 모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단, 지역별로는 제주시(평균 84.0%)가 서귀포시(평균 66.3%) 보다는 높은 편으로, 서귀포시를 다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동지역(78.8%)이 읍·면지역(53.8%)보다 높은 편으로 지역적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부재(29.0%)가 가장 높으며,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서귀포시 동지역(44.4%)과 서귀포시 읍·면(36.8%)이 제주시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는(18.9%)로 지역별로는 편차가 없지만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34.8%), 자폐성(28.6%), 언어(25.0%)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장애등급별에서는 1급(23.6%), 2급(20.6%)에서 높은 결과를 보임. ③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1.1%)는 지역별로 차이가 별로 없으며, 장애유형별, 등급별로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평생교육 참여 미경험자 중 향후 참여에 대한 의향 또한 높지 않았음. 향후에도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전반적으로 서귀포시 (동 12.5%, 읍·면 22.2%)가 제주시보다 높은 편임. 모르겠다는 반응 또한 서귀포시 읍·면 지역(55.6%)이 매우 높음. 장애유형으로는 신장(60.0%)장애 유형에서

매우 높은 답변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참여 미경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① 문화예술교육(33.9%), ② 직업능력교육(25.0%)임. 이는 전반적으로 지역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생활정도별에서 매우 고른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음

-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 평균 개수가 2개 이내로 나타남. 대부분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고 있었음. 참여 프로그램 개수가 2개 이내이지만 기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연계시켜 살펴보면 기관(시설)에서는 대부분 장기적·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선호 프로그램과 참여 프로그램이 대부분 시민참여 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자립생활교육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년간(2016년~2017년)과 올 해(2018년) 참여한 프로그램 평균 개수는 비슷함. 또한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① 시민참여교육(평균 2.09개), ② 학력보완교육(평균 1.77개), ③ 문화예술교육(1.73개)임. 올 해 2018년에 참여 프로그램은 ① 시민참여교육(평균 1.68개), ② 문화예술교육과 직업능력교육(평균 1.49개), ③ 자립생활교육(평균 1.42개)임
 - 주요 참여 시간대는 대부분 평일 오전과 오후가 대다수로 평일 저녁 및 주말 교육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습비는 학력보완 교육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료로서 개인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음
 -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다른 프로그램 영역보다 ① 학력보완교육(42.1%), ② 기초문해교육(53.4%)이 낮게 나타남. 또한 중도 포기 교육과정으로는 ① 인문교양교육(11.1%), ② 시민참여교육(8.7%), ③ 문화예술교육(8.5%) 순으로 나타남.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도 포기 사유로는 이용시설(학습 및 교통) 불편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음
 - 향후 개설을 희망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 문화예술 교육(24.9%), ② 직업능력 교육(24.3%), ③ 자립생활교육(20.7%)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 또한 가장 이용이 편리하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관(시설)로는 ① 장애인복지관(27.7%), ② 사회복지시설(단체)(20.3%), ③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16.6%)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은 대부분 ① 장애인복지관(24.9%), ② 기타 시설(19.2%), ③ 학교형태 시설(14.2%)순으로 나타남. 또한 평생교육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기관(시설)로는 ① 장애인복지관(27.7%), ② 사회복지시설(단체)(20.3%), ③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16.6%)순으로 나타남
 - 교육과정 참여를 위해 이동시간은 대부분 ① 30분 거리(35.3%), ② 1시간 이내(32.0%)로 근접한 시설 선호와 함께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① 자가용(29.9%), ② 장애인콜택시(28.4%)임
 - 그러나 장애유형 중 ① 언어의 경우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 미만(100%), ② 2시간 미만은 뇌병변(41.7%)임. 지역별로는 제주시 읍·면지역의 경우 2시간 미만이 35.7%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유형별,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교통수단 중 콜택시 이용은 지역별로는 제주시 읍·면(46.4%)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장애유형별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① 지체(48.4%), ② 뇌병변(68.3%)이 높은 편이며, 자가용 이용은 ① 자폐성(89.5%), ② 신장(53.8%), ③ 청각(40.0%)순으로 나타남. 버스 이용률은 ① 중복(42.1%), ② 청각(40.0%), ③ 지적(23.5%)에서, 시설차량 이용은 ① 시각(83.3%), ② 정신(66.7%), ② 중복(31.6%)순임. 따라서 장애유형별 교통수단을 달리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매우 적은 편(3.0%)이었음. 장애유형별로도 활동보조인 활용은 많지 않았음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취득 경로는 ① 장애인 복지시설(52.3%), ② 지인의 소개(20.8%)로 대부분 특정 이용 시설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를 통한 정보 취득은 매우 미약한 수준임. 이는 장애인 기관(시설)에서 대부분 이용하는 홍보 방법이 인터넷 매체임을 감안할 때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대부분 후천적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55.6%)를 겪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소통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장애 유형별 학습 안내 및 홍보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 참여동기 및 목적은 ① 개인적인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21.2%), ②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16.4%), ③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10.5%)로 지역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생활정도별에서 고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기관(시설)에서 평생교육 과정 개설 목적과도 일치하고 있어 자칫 개인적 성향에 따라 호불호(好不好)로 나눌 가능성이 높음
 - 반면, 향후 개설 희망 프로그램 중 직업능력 교육(24.3%)이 차순위로서 이에 대한 제고도 필요한 상황임
- 평생교육 참여시 ① 교육장소 접근성, ② 교육기관 이용의 편리성, ③ 직원의 친절성, ④ 일정과 시간 운영의 적절성, ⑤ 강사의 전달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긍정적 답변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장애유형에서 시각과 언어 장애유형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① 비용 지원정도, ② 수강료 적절성, ③ 안내(홍보)와 관련해서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려해 나가야 할 부분임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만족도(학습공간, 교육내용, 지식 전달성 등)는 매우 높은 편(69.4%)으로 개인적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결과를 보임. 하지만 사회적 활용과 연계된 측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긍정적인 효과로는 ① 정보습득(73.3%), ② 학습욕구 충족(75.3%), ③ 자신감과 적극성 향상(73.8%), ④ 자립심 향상(68.6%), ⑤ 사회관계 형성(74.1%), ⑥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74.6%), ⑦ 삶의 질 향상(71.6%), ⑧ 자존감 향상(66.7%)로 대부분 개인적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매우 높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 그러나 ① 일자리와 연계(28.3%), ② 자격증 취득(22.1%)과 관련해서는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평생교육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정도와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상호 연계되어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5-1>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만족도 간 상호연계

구 분		지역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프로그램 제공	부정 (26.8%)	① 제주시 읍·면 (35.2%) ② 서귀포시 읍·면 (30.8%)	① 자폐성(38.5%) ② 시각(34.3%) ③ 뇌병변(30.0%)	- 1~4급 모두 고른 분포(20%대)를 보임
	긍정 (26.2%)	- 4개 지역별 20%대 이상의 고른 양상을 보임	① 언어(60.0%) ② 시각(42.9%) ③ 청각(31.7%)	- 3급(31.8%)이 높은 비율을 보임 그 외 등급에서는 고른 분포(20%대)를 보임
프로그램 지원	부정 (26.2%)	① 서귀포시 읍·면 (30.8%) ② 서귀포시 동 지역(27.3%)	① 정신(47.4%) ② 자폐(38.5%) ③ 지적(32.9%)	- 1급(27.9%)과 2급 (28.0)에서 높게 나타남
	긍정 (26.2%)	- 제주시 동지역 (30.2%)을 제외 하고 3개지역은 20% 미만대임	① 시각(62.9%) ② 언어(60.0%) ③ 청각(36.5%)	- 4급(31.9%)에서 높게 나타남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60.9%)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선행조건으로는 우선 ① 전문기관 설립 및 지원(24.3%),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16.6%), ③ 제도 강화(16.1%) 순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긍정적 의견(83.5%)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주요역할에서도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개발·보급(49.9%)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2) 기관실태조사 결과

-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은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65.6%)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강)사 및 평생교육사를 보유한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매우 소수로 평균 1명 정도에 해당함. 반면 시설 중 강의실(다목적실) 보유 비율은 높은 편임. 이외에도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학습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단, 대부분 장애유형별 보호시설이 많아 시각 및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학습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

- 기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수와 장애인이 참여한 평균 프로그램 수(평균 2개 이내)는 비슷함.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영역으로는 기관(시설)에서 지난 1년 간 ① 직업능력개발 교육(평균 7.05회)을 가장 많이 운영하였음. 그 다음으로 ② 문화예술교육(평균 5.13회), ③ 자립생활 교육(평균 2.97회)로 운영하였음. 장애 성인이 참여한 프로그램 영역과 기관(시설)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영역에서 참여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표 5-2> 장애 성인 참여 프로그램 영역과 기관운영 프로그램 영역 간 차이

구 분		지역별
개인	과거 및 올해 학습자가 참여한 프로그램(평균 개수) 순	① 시민참여교육 ② 학력보완교육 ③ 문화예술교육
	향후 개설이 필요한 프로그램 영역 (복수응답)	① 문화예술교육(24.9%) ② 직업능력교육(24.3%) ③ 자립생활교육(20.7%)
기관 (시설)	과거 및 올 해 프로그램 운영 (평균 개수) 순	① 직업능력 교육 ② 문화예술교육 ③ 자립생활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 영역 (복수응답)	① 인문교양교육(65.8%) ② 시민참여 교육(58.9%), ③ 문화예술 교육(57.4%)
	제공 프로그램 중 장애인 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역 (복수응답)	① 문화예술교육(41.9%) ② 자립생활교육(22.8%) ③ 직업능력교육(15.2%)
	향후 개설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영역(복수응답)	① 자립생활 교육(28.2%) ② 문화예술교육(28.0%) ③ 직업능력 교육(22.5%)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의 중요성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기관(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 장애인 기관(시설)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대부분 평일 오전/오후에 운영(학력보완 및 직업능력 교육은 66.7%. 자립생활교육 46.4%, 문화예술 및 기초문해 교육은 36.8%와 35.3%)함으로써 사실상 장애인들이 참여 시간대와 선호 시간대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 또한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대부분 1년 또는 1년 이상 비율이 높아 기관(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은 장기적·지속적 형태임을 알 수 있음
- 프로그램 학습비 개인 부담액은 자립생활 교육(평균 8만원), 기초문해 교육(평균 6만원)대로 그 외는 무료가 대부분임. 또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집체교육(20명 ~ 60명 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기간도 1년 또는 1년 이상이 대부분으로 지속적·반복적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부담과 함께 강의 진행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필요함. 이와 연계해서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35.7%에 해당되고 있으며,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제주특별자치도(38.9%)에서 받고 있음
 -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대부분 지적 장애 유형에 쏠림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지적 장애인 대상으로 기초문해교육(31.6%), 직업능력교육(25.5%), 문화예술교육(26.4%), 인문교양교육(21.4%), 시민참여교육(22.0%), 자립생활교육(34.4%)인 반면 나머지 장애유형에서는 미미한 수준으로 운영하였음
 - 특히,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 대상자를 한정해서 살펴볼 경우 기관(시설)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초문해교육(47.4%), 직업능력교육(47.1%), 문화예술교육(41.5%), 자립생활교육(58.2%)로 매우 특정화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부분 기관(시설)에서는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2시간 정도 운영이 가장 많음. 하지만 참여 학습자 연령은 20대(22.7%)부터 30대(20.7%), 40대(20.7%), 50대(18.1%)로 노년층에 해당하는 60대 이상(17.8%) 대한 배려가 필요함
- 평생교육 참여 목적으로는 ① 대인관계 형성 도움(30.5%)이 가장 높고 ②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13.3%)로 평생교육 학습 참여자와 운영 주체인

기관(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목적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선정 방법으로도 학습자의 요구(62.7%)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기관(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설시 학습 참여자의 의도를 맞춰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서는 기관(시설) 관계자들은 정부로서 80%에 해당되는 답변을 보였음. 지방정부(35.0%)보다는 중앙정부(45.0%)의 중요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내 장애인 기관(시설)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64.3%)로 그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은 38.9%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의존율이 큼을 알 수 있음
- 또한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85.0%로 장애인 개인보다 기관(시설) 관계자들이 매우 높은 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 전문기관의 역할 측면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2.0%)과 제공(21.0%)로 개인상태와 같은 의견을 내고 있음

3) 초점집단면담조사 결과

- 대부분 시설들은 장애인 보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성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요구와 함께 시설 관계자 또한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 (장애인 대상) 경증 장애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회참여 및 직업생활과 관련한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 프로그램 종류가 적어 진로선택에 대한 고려시 매우 한정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산 필요하며, 특히 자폐 및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보인 특징적 행동으로 비장애인과 갈등 발생의 경우가 있음(특히 성추행, 스토킹, 위협 등의 오해가 발생이 되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 발생). 따라서 일반적인 장애 인식 교육이 아닌 실제 사례(장애유형별 장애인의 특징적 행동과 반응)에 대해 교육내용을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전혀 거의 없음. 1차 보호자들로서 지원 프로그램 필요. 특히 장애치료에 대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절실
 - 장애인의 1차 보호자이면서 평생 함께 생활해 나가야 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보호, 지도, 소통 방법 등 교육이 필요함. 또한 장기적 보호생활에 따른 육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인한 개별 관리를 위해 가족 대상 개별 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일상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장애인 대상 교육 지원사업(특히, 실습 및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시행시 장애인 보호자 및 관계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가 필요함
(예 : 발달장애인 1인 + 보호자 1인 + 보조강사 1인 이상 + (추가)시설내 관계자(응급상황 대비)= 총 3인 이상 교육과정 운영시 참여할 수밖에 없음)
- 장애유형별, 등급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기관(시설) 및 종사자들의 적극 활용과 협조가 필요함. 특히, 기존의 민간부문에 대한 활용성 제고를 통해 효과를 가시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장애인들의 특성상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 예측불허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특히, 발달장애와 정신 장애유형) 기존 시설(단체)의 관계자들의 연수와 재교육을 통해 특정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가 되어야 함
 - 장애 교육을 진행하는 관계자(강사 및 보조강사)는 장애 유형별 현장 대처 능력이 필수임. 따라서 시설 관계자 및 보호자가 함께 참여와 함께 사전 이러한 교육과 경험이 필요함. 따라서 비형식적·무형식적 평생교육 영역에서 장애인 기관(단체) 실무자 및 관계자들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 및 재교육을 통해 평생교육 서비스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함
- 평생교육 6대 영역에서 ‘학력인정과정’은 장애인의 유형 및 연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수교육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학교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제도적으로 시행이 잘 되고 있음. 또한 경증 신체장애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특히, 중증 및 지적 능력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의 경우) 고등학력 취득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임. 따라서 국가가 시행

하는 정책 중 온라인 등을 활용한 학력보완 과정보다는 체험형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현재로서는 효과적이라 사료됨

- 더불어 장애인 시설에서는 일차적인 보호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단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생활자립형 및 장애 유형별에 따른 신체·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장애인 시설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 장애인 본인들이 평생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임

○ 장애성인용 전문 학습시설이 필요함. 이를 통해 보호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외에 사회변화 트렌드 반영 및 장애유형별 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함께 장기적, 정례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성 및 홍보, 교류 확대 등에서 수월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기타

- 지역내 장애인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후천성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정적·정기적으로 반복 교육이 필요함. 특히, 고령자 일수록 소통방법(수화, 점자 등)을 포함하여 건강유지법, 주변인들과 생활하는 법 등을 통해 일상에서 우선 가족들과의 마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따라서 고령 장애인들의 경우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음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함. 또한 대부분 가족들의 배려가 적어 새로운 활동 및 체험 과정 참여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과정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시설에서는 학습여건이 좋지 않아 필요시 이동을 통해 통합교육 실시도 바람직함. 이를 통해 다른 기관(시설)의 장애인들과도 교류활동을 할 수 있어 사회활동 체험의 기회로도 유용함
- 장애인 시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장애 유형별, 등급별, 지역별로 학습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학습장비 지원 필요함. 더불어 지적 능력과 상관없는 경우(예 : 시청각, 농아, 뇌병변, 지체 등)에는 통합학습이 효과적임

2. 시사점²¹⁾

1) 맞춤형·체감형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관련

- 제주지역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지역별, ② 장애유형별, ③ 소득별에 대한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경우, 장애유형별 및 등급별에 대한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앞으로 맞춤형의 접근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함
 - 평생교육(평생학습)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참여 경험 및 향후 참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편임. 또한 참여 경험이 없거나 참여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이유는 장애유형 및 등급과 상관없이 ① 정보부재,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필요성을 못 느껴서 라는 다수 의견을 보이고 있음(이와 관련해서 설문 응답자 중 보호자 의견 반영률이 높음을 감안할 필요는 있음)
 -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96.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기관(시설) 대부분이 제주시 동지역(65.6%)에 위치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 수 및 참여인원은 제주시가 매우 활발한 편임. 하지만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② 연령대는 높을수록, ③ 장애유형 중 시각과 자폐성 장애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애유형 전반에서(특히 정신장애의 경우 참여율, 만족도, 긍정효과성 모두 낮음), ④ 소득이 높을수록, ⑤ 여성보다는 남성이 만족도는 낮게 나오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기관(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학습) 및 정보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을 제고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개인 만족도 향상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① 시설 이용의 편리성, ② 강사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기관(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할 때 장애유형 및 등급과는 무관하게 두 요인에 대한 적극적 고려와

21) 이하의 내용은 <부록 3>의 추가분석 결과를 포함함

함께 기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좀 더 홍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 거주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의 활동 반경과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한 학습기관(대부분 복지관, 1시간 이내)을 선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이동(교통) 서비스(자가용, 장애인 콜택시)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분 대중교통인 버스 이용도 하고 있음
- 다만, 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시설로서의 이용의 편리성 정도가 교육 참여율 및 만족도, 긍정적 효과까지 연계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 향후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습기관(시설)의 학습 관련 시설 및 장애인 이용 편리성 확충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함
- 장애인 개인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희망과정과 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황은 사실상 거의 일치하고 있음. 향후 장애인 기관(시설)에서 인터넷, 일간지 등을 활용한 홍보보다는 기관(시설) 이용자 및 회원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평생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전략방안 관련

-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관(시설)에서는 다양성 및 질적 향상 측면 고려를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 부각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주요 고려요인으로는 ① 재정 지원 확대, ② 학습시설의 편리성 제고, ③ 프로그램 선호 영역(현재 트렌드) 반영을 통해 평생교육 서비스망을 확충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장애인 학습자들의 대부분 참여목적은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과 대인관계 형성 도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기관(시설) 관계자들 또한 이를 우선시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목적이 매우 특정화되어 있어서 한정된 자원으로 지속해서 운영하다 보니 장애유형과 연령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오히려 평생교육의 필요성 및 지속 참여에 대한 감쇄효과를 가져오고 있었음. 따라서 직무능력 향상,

직업(취업) 도움, 일상생활에 유용 등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매우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평생교육 참여 및 개설 희망 영역, 기관에서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통 영역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선호하고 있었음. 학습 참여율과 프로그램 수도 가장 많음. 차순위로 희망 및 개설 프로그램 영역으로는 직업능력 교육 영역이었으나 실제 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임. 또한 자립생활교육 프로그램도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희망 프로그램 영역을 살펴보면,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문화예술 교육, 직업능력 교육, 자립생활교육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장애인들의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학습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개인 만족도 결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제주시 지역 학습자들이 서귀포시 지역보다는, 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함

3) 사회통합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 지적능력과 무관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개인 및 시설 관계자 다수가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 평생학습 유관기관(시설) 보안을 통해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등과 3등급 이하의 경우 학습참여가 사회참여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많이 할수록 평생교육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높음.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일반 평생교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약사항이 많은 편으로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는 학습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통합교육 확대는 매우 바람직함

- 장애 성인기부터는 일상적·지속적인 교육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임. 따라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예측가능한 학습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면담 및 개인별, 기관(시설)별 조사결과 공통으로 ① 전문기관 설립 및 지원, ② 제도적 기반 조성을 꼽고 있음. 그 중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강한 긍정과 함께 주요역할로는 개인과 기관(시설) 모두 공통으로 현장의 실질적 서비스 기능(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개발 및 제공)를 제시하고 있음. 즉 장애성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교” 형태의 운영을 통해 장기적·정례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4) 생애주기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려를 통해 평생교육을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환경변화를 고려한 노년층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함
 -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및 필요성에 대해 20대, 30대, 40대 순으로 인지 및 참여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또한 제주도 동지역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 인적·물적자원의 제약성으로 매 년 또는 기관(시설)에서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짐에 따라 만족도 저하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 평균 수명 및 장애인의 고령화 진행 속도, 1인 가구 증가 등에 맞춰 자립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예로 성인기 이 후 보호자들과 어쩔 수 없이 독립적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경우와 한정된 활동으로 인한 노년층 장애인의 경우 등 개인 생활 및 위생 관리, 정보 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시설)의 평생교육과 연계한 효율성 측면(자료포락 분석(DEA) 적용)은 사실상 상대적 격차가 클 수밖에 없음.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은 복지 측면과의 연계적 특성이 강함에 따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시설(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간 직원의 수, 강의실 보유 및 규모와 관련해서 시설별 차이가 큰 편임. 따라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자 이용 등과 연계할 경우 시설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편차를 보일 수 밖에 없음. 이를 고려하여 공공의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인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유진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 등 민간의 다양한 기관(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문지원기관(시설)의 주요역할로서 현장에서 실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유형별, 등급별, 지역별, 소득별 등을 감안해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일정 그룹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내 다양한 자원 활용이 매우 중요함. 더불어 이러한 기능적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활발한 운영을 독려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정책 제언

- 다음은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시설) 지원 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대상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① ‘평생교육사’ 자격 요구 경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의 ‘특수교원’ 자격증에 대해서 대체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별도, 일정 기간동안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1급과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증 인정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인 기관(시설) 참여 확대 및 관심 유도 필요)
 - ② 교육대상자를 장애인으로만 한정해서 인원 제한하지 않기(보호자 및 활동보조자 참여로 원활한 교육 진행)
-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중 우선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 예로,

- ① 장애인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제공
- ② 장애인의 고령화 대비 교육 프로그램
- ③ 발달장애인 성인기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④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우선 실시 등
 - ▶ (예) 장애유형별 어르신 건강체조, 노년기 복장 및 개인 위생관리, 요리, 용돈(금융)관리, 보이스피싱 대처하기, 정보화 교육 등
- 지역내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사전 정보 제공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인증제 도입 및 학습도구 설치 지원
- 직업능력 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및 직업재활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취업과 인력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학습비 지원
 - (예) 평생교육사 및 강사는 장애 이해 및 돌발상황 대응 교육을, 장애인 시설 종사자는 평생교육사 및 특수교육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지역내 공공부문 시설 활용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 우선적으로 지역 학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을 대상으로 일부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공간 할애 필요
- 장애아동 대상 바우처 사업을 장애성인과 보호자에게도 확대 적용
- 장애유형별 학습도구 보급 지원
- “(가칭) 장애인 평생교육 학교”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의 일상화 지원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제주지역 장애인 기관 및 시설 현황

【부록 3】 개인 및 기관 실태조사 영향요인 및 효율성 분석 결과 요약

【부록 4】 제주지역 장애인 기관(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례

【부록 5】 관련 법령 내용(발췌)

【부록 1】 설문지(개인용 · 기관용)

□ □ - □ □ □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설문지 (개인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과)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향후 제주지역 장애인을 위한 수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모든 내용을 본 연구를 위한 통계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및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의 규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정책 발굴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 안 열

- ▶ 담 당 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사연구부 홍정순, 김동민
▶ 연 락 처 : 064)744-9852, dudb0722@hanmail.net

※【설문지 응답자】는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표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본인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주변 지인 분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최대한 장애인 입장에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구 분	관 계		
응답자	① 본 인	② 부 모	③ 형제/자매
	④ 활동보조원(자원봉사자)	⑤ 장애인시설(기관) 종사자	
	⑥ 사회복지사	⑦ 교사	⑧ 기타()

※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으신 분에 한해 빈칸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 귀하께서 과거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와 2018년 현재 참여한 프로그램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근 2년간(2016년~2017년) 참여 프로그램 수	2018년 현재 참여 프로그램 수
1. 기초문해교육	() 개	() 개
2. 학력보완교육	() 개	() 개
3. 직업능력향상교육	() 개	() 개
4. 문화예술교육	() 개	() 개
5. 인문교양교육	() 개	() 개
6. 시민참여교육	() 개	() 개
7. 자립생활교육	() 개	() 개

[참조] 프로그램 영역 및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① 기초문해교육	일상생활의 문해활용능력 개발 및 중증의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자립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한글교실, 장애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컴퓨터문해교육반, 스스로학교, 신변 자립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
② 학력보완교육	학교이외의 교육을 통해 초·중·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초·중·고등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독학사강좌, 대학비학점강좌, 방송대 등)
③ 직업능력교육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택하여 그것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판단, 습관 등을 개발하고 이런 능력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의식교육, 직업탐색교육, 자격증 취득/인증, 취업준비/채취업 교육, 컴퓨터 자격취득과정, 지도자양성과정, 점역교정사양성과정, 직장예절교육, 현장교육 및 직무연수 등)
④ 문화예술교육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활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 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평생교육 (레저 스포츠강좌, 건강스포츠강좌, 음악, 미술, 공연, 사진, 염색, 공예, 건강 관리,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생활문화강좌 등)
⑤ 인문교양교육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성인 심리재활, 보조기기 활용교육, 보건/장애인 성교육, 시낭송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인문학, 철학 강좌 등)
⑥ 시민참여교육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평생교육 (장애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주권교육, 장애인기자단, 수화교실, 휠체어 지키미 교육, 지역나눔활동, 장애인활동가 양성과정, 수화통역사 양성과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봉사활동 동아리 등)
⑦ 자립생활교육	신변자립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 보조기기 활용교육, 재활 교육, 중도실명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성인재활(심리, 언어, 인지, 음악, 미술 치료 등) 등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문4. 귀하가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문항입니다. 가장 최근(2017년도 이후 현재까지)에 참여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만족 정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구 분	보기(1)	보기(2)	자기부담 학습비	보기(3)	보기(4)	보기(5)
	주요수강 시간대	학습비 부담여부		만족도	중도 포기여부	중도 포기사유
1. 기초문해교육			()만원			
2. 학력보완교육			()만원			
3. 직업능력향상교육			()만원			
4. 문화예술교육			()만원			
5. 인문교양교육			()만원			
6. 시민참여교육			()만원			
7. 자립생활교육			()만원			

[문항 보기]

(1) 주요 수강 시간대	(2) 학습비 부담여부	(3) 만족도	(4) 중도포기 여부
① 평일 새벽/아침(05:00~09:00) ② 평일 오전(09:00~13:00) ③ 평일 오후(13:00~17:00) ④ 평일저녁(17:00~21:00) ⑤ 주말오전(09:00~13:00) ⑥ 주말오후(09:00~13:00)	① 본인 ② 본인의 직계가족 ③ 본인의 직장 ④ 일부 부담(본인+지원금) ⑤ 무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① 예 ② 아니오
(5) 중도 포기한 사유			
①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② 교육시설이 불편해서 ③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 ④ 교통편이 불편해서 ⑤ 강의 수준이 마음에 안들어서 ⑥ 건강상의 이유로 ⑦ 기타()			

문5. 귀하가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습기관에 대해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유형	표시(√)
① 학교의 평생교육(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② 학교 부설 : 대학교 평생교육원	
③ 학교형태 : 대안학교, 고등기술학교,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야학	
④ 사내 대학형태	
⑤ 원격대학형태 : 인터넷, 사이버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관	
⑥ 사업장 부설 : 유통업체, 산업체, 백화점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	
⑦ 시민단체 부설 : 여성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기관	
⑧ 언론기관 부설 : 각종 신문사, 방송사 등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기관	
⑨ 지식인력개발 관련 : 산업교육기관 등 노동부 연계 시설 등	
⑩ 제주도,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⑪ 도서관 : 공공도서관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⑫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⑬ 여성관련시설 :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⑭ 복지관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⑮ 문화원 : 지방문화원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⑯ 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원 등	
⑰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⑱ 기타 기관/시설 :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장애인 단체, 농업기술센터 등	

문6. 귀하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까지 대략 이동시간은 어느정도입니까?

-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30분 미만
 ④ 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문7. 귀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 ② 버스 ③ 장애인 콜택시 ④ 시설차량
 ⑤ 도보 ⑥ 활동보조인 제도 활동 ⑦ 기타()

문8. 귀하는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계신가요?

1순위	2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시청, 동사무소 등)	② 장애인 복지시설 기관
③ 지역신문 및 방송매체	④ 인터넷
⑤ 특수교육 지원센터	⑥ 지인의 소개
⑦ 가족의 소개	⑧ 자원봉사자
⑨ 현수막 및 팸플렛	⑩ 기타()

II.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학습효과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9. 귀하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동기 및 목적에 대해 우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③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⑤ 동아리 모임 등 시민(사회) 참여기회 확대
⑦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⑨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⑪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⑬ 지적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⑮ 기 타() | ② 직업(취업)을 얻기 위해서
④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⑥ 개인적인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⑧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⑩ 기초문자 이해 교육을 위해서
⑫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
⑭ 일상생활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

문10. 귀하가 현재 수강 중이거나 수강한 적이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당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① 교육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② 교육훈련기관의 시설과 설비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③ 교육훈련기관의 직원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④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이 충분히 지원된다	①	②	③	④	⑤
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프로그램의 일정과 시간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⑦ 강사는 교육내용을 잘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⑧ 유관기관(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안내(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1. 귀하가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문항별로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당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② 나의(장애인 본인) 학습욕구가 충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자신감과 적극성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④ 자립심이 강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⑦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⑧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⑩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문항입니다.

문12. 귀하는 본인(장애인)에게 도움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3. 귀하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4. 귀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① 프로그램 참가비 ② 거주지와의 거리 ③ 교육장소 및 시설
 ④ 프로그램 일정 및 시간 ⑤ 프로그램 진행기관 ⑥ 프로그램 흥미와 재미
 ⑦ 프로그램 내용 및 목적 ⑧ 강사의 전문성 ⑨ 교육방법(이론/실습)
 ⑩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⑪ 편의제공(편의시설, 수화통역,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
 ⑫ 기타()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문15. 귀하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프로그램 참여 비용(경제적인 부담)
- ②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건강, 직업, 외부환경 등)
- ③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
- ④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 ⑤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떨어져
- ⑥ 프로그램의 수업시간이 부족함
- ⑦ 기관/시설에서 거부함
- ⑧ 프로그램의 홍보가 부족함
- ⑨ 편의제공 부족하다(보조인력, 수화통역, 편의시설 등)
- ⑩ 기타()

문16. 귀하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기초문해교육(한글교실, 신수교실, 장애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컴퓨터 문해교육반 등)
- ② 학력보완교육(초·중·고등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독학사강좌, 대학비학점강좌, 방송대 등)
- ③ 직업능력교육(직업의식교육, 직업탐색교육, 자격증 취득/인증, 취업준비/채취업 교육, 자격취득과정, 지도자양성과정, 점역교정사양성과정, 직장에질 및 적용교육, 직무연수 등)
- ④ 문화예술교육(레저스포츠, 음악, 미술, 공연, 사진, 염색, 공예, 건강관리,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
- ⑤ 인문교양교육(보건/장애인 성교육, 시낭송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인문학, 철학강좌 등)
- ⑥ 시민참여교육(장애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주권교육, 장애인기자단, 수화교실, 휠체어지킴이교육, 지역나눔활동, 장애인활동가 양성과정, 수화통역사 양성과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등)
- ⑦ 자립생활교육(신변자립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 보조기기 활용교육, 재활교육,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성인재활(심리, 언어, 인지, 음악, 미술치료 등) 등)

문17. 귀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공공기관 ④ 민간단체 ⑤ 기타()

문18. 귀하는 평생교육을 받고 싶은 기관이 있다면 어디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② 장애인 복지관
- ③ 특수학교
- ④ 특수교육지원센터
- ⑤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 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⑦ 학교부설(초중등·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 ⑧ 지자체(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 ⑨ 도서관
- ⑩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등
- ⑪ 여성관련 시설
- ⑫ 기타 ()

문19. 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	-----

- ①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전문기관설립(지정) 및 지원
 ② 전문직원 채용 및 지원
 ③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인 평생교육 제도장치 강화
 ④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강사 육성 지원
 ⑤ 장애인시설 기관에 평생교육사 채용
 ⑥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⑦ 정부의 법률, 제도적 정책 지원
 ⑧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⑨ 기타()

문20. 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20-1로 이동) ② 불필요하다 ③ 모르겠다

문20-1.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면 이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	-----

- 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
 ②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③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기관별 컨설팅 및 현장지원
 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⑥ 장애인 평생교육 요구도 및 실태조사
 ⑦ 장애인 평생교육 수강 시 이동수단 정보 제공
 ⑧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⑨ 장애 유형별 교수-학습자료 수집 및 보급
 ⑩ 기타()

문21.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설문지 (기관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과)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제주지역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모든 내용을 본 연구를 위한 통계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및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의 규정에 의거, 비밀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 안 열

- ▶ 담 당 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조사연구부 홍정순, 김동민
- ▶ 연 락 처 : 064)744-9852, dudb0722@hanmail.net

문2. 귀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문항 보기]에서 번호를 선택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영역(2017년 기준)					
프로그램 영역	개설 수	(1)	(2)	1인 학습자 부담비용	수강인원
		주요개설 시간대	학습비 부담여부		
1. 기초문해교육	()개			()만원	총()명 남()명 여()명
2. 학력보완교육	()개			()만원	총()명 남()명 여()명
3. 직업능력향상교육	()개			()만원	총()명 남()명 여()명
4. 문화예술교육	()개			()만원	총()명 남()명 여()명
5. 인문교양교육	()개			()만원	총()명 남()명 여()명
6. 시민참여교육	()개			()만원	총()명 남()명 여()명
7. 자립생활교육	()개			()만원	총()명 남()명 여()명
합 계				()만원	총()명 남()명 여()명

[문항 보기]

(1) 주요 운영 시간대	(2) 학습비 부담 여부
① 평일새벽/아침(05:00~09:00) ② 평일오전(09:00~13:00) ③ 평일오후(13:00~17:00) ④ 평일저녁(17:00~21:00) ⑤ 주말오전(09:00~13:00) ⑥ 주말오후(09:00~13:00)	① 무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유료

프로그램 영역별 참여대상자 및 적정운영 시간(2017년 기준)				
프로그램 영역	(1) 참여 대상자	(2) 운영기간	(3) 총 학습시간	(4) 1일 학습시간
1. 기초문해교육				
2. 학력보완교육				
3. 직업능력향상교육				
4. 문화예술교육				
5. 인문교양교육				
6. 시민참여교육				
7. 자립생활교육				

[문항 보기]

(1) 참여 대상자 (중복장애의 경우, 복수 선택 가능)	① 지체장애 ② 시각장애 ③ 청각장애 ④ 언어장애 ⑤ 지적장애 ⑥ 뇌병변장애 ⑦ 자폐성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간면장애 ⑭ 장루, 요루장애 ⑮ 뇌전증 장애
(2) 운영기간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③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⑤ 1년 이상
(3) 총 학습시간	(계산법 예시) 2개월×3주씩×1주당 3일×1일 4시간
(4) 1일 학습시간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④ 4시간 ⑤ 5시간 이상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참조] 프로그램 영역 및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① 기초문해교육	일상생활의 문해 활용능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한글교실, 산수교실, 장애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컴퓨터문해교육반 등)
② 학력보완교육	학교이외의 교육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초·중·고등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독학사강좌, 대학비학점강좌, 방송대 등)
③ 직업능력교육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택하여 그것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판단, 습관 등을 개발하고 이런 능력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의식교육, 직업탐색교육, 자격증 취득/인증, 취업준비/재취업 교육, 컴퓨터 자격취득과정, 지도자양성과정, 점역교정사양성과정, 직장예절교육, 현장교육 및 직무연수 등)
④ 문화예술교육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활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 하고 문화예술을 활용한 치료 및 숙련시키는 평생교육 (레저 스포츠, 건강스포츠, 음악, 미술, 공연, 사진, 염색, 공예, 건강관리,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
⑤ 인문교양교육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보건/장애인 성교육, 시낭송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인문학, 철학강좌 등)
⑥ 시민참여교육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평생교육 (장애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주권교육, 장애인기자단, 수화교실, 휠체어 지키미 교육, 지역나눔활동, 장애인활동가 양성과정, 수화통역사 양성과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봉사활동 동아리 등)
⑦ 자립생활교육	중증 또는 발달장애 성인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활동과 기능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신변자립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 보조기기 활용교육, 재활교육, 중도실명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성인재활(심리, 언어, 인지, 음악, 미술치료 등) 등)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문8.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장애인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기초문제교육(한글교실, 산수교실, 장애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컴퓨터 문제교육반 등)
- ② 학력보완교육(초·중·고등 학력인정, 학점은행제, 독학사강좌, 대학비학점강좌, 방송대 등)
- ③ 직업능력교육(직업의식교육, 직업탐색교육, 자격증 취득/인증, 취업준비/채취업 교육, 자격취득과정, 지도자양성과정, 점역교정사양성과정, 직장예절 및 적용교육, 직무연수 등)
- ④ 문화예술교육(레저스포츠, 음악, 미술, 공연, 사진, 염색, 공예, 건강관리,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
- ⑤ 인문교양교육(보건/장애인 성교육, 시낭송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인문학, 철학강좌 등)
- ⑥ 시민참여교육(장애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주권교육, 장애인기자단, 수화교실, 휠체어지킴이교육, 지역나눔활동, 장애인활동가 양성과정, 수화통역사 양성과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등)
- ⑦ 자립생활교육(신변자립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 보조기기 활용교육, 재활교육, 중도失明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성인재활(심리, 언어, 인지, 음악, 미술치료 등) 등)

문9.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응답)

- 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 ② 직업(취업)을 얻기 위해서
- ③ 직무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④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 ⑤ 일상생활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⑥ 동아리 모임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 ⑦ 개인적인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 ⑧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⑨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 ⑩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⑪ 기초문자해득 교육을 위해서
- ⑫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 그 자체가 즐거워서
- ⑬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위해서
- ⑭ 일상생활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⑮ 기타()

문10. 귀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의 전반적인 의견을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홍보가 잘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프로그램 운영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장애인에게 도움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장애인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장애인의 학습참여를 위해 교통편 제공 및 편의시설(보조인력, 보조장치, 통역 등) 제공이 잘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강사 및 직원은 평생학습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장애인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장애성인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귀하의 통계적 배경에 관한 문항입니다.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DQ2.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DQ3.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이상

DQ4.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 ① 사원 ② 관리자 ③ 중간관리자 ④ 최고관리자

DQ5. 귀하가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개		2개		3개	
----	--	----	--	----	--

- ① 평생교육사 ② 사회복지사 ③ 특수교육 교사
 ④ 상담사(심리 및 직업 등) ⑤ 치료사 ⑥ 청소년지도사
 ⑦ 직업재활사 ⑧ 기타()

DQ6. 귀하의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설문조사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제주지역 장애인 기관 및 시설 현황

〈제주지역 장애인 유관기관 및 시설 현황〉

(2016년 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수	합 계	비고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2	30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4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14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6	4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8		
	장애인 활동지원시설	6		
	기타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		
	장애인 생상품 판매시설	1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9		
장애인 단체		1	17	
기타 복지시설		9	9	
총 계			103	

1 장애인복지관 6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		1일 이용 인원	종사자 수		연락처 (팩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장 애 인 복 지 관	6개소 (제주시5, 서귀포1)					2,284	151	213		
제 주 도 장 애 인 총 합 복 지 관	제주시 516로 3120 (아라일동)	윤보철	'89. 11.24	3,037	2,434	481	34	46	702-0295 (702-0294)	○
제 주 도 장 애 인 총 합 복 지 관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6길 27-18	김군택	'99. 12.14	702	111.97	37	3	4	782-0295 (728-0296)	○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		1일 이용 인원	종사자 수		연락처 (팩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광양4길 30-1 (이도일동)	양예홍	'00. 2. 2	4,541	7,166	761	32	57	710-9801 (710-9999)	○
제주시장애인복지관	제주시 아봉로 433 (월평동)	양예홍	'03. 10.31	3,838	2,205	448	26	29	710-1200 (710-1240)	○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 (외도일동)	문성은	'05. 7.1	2,043	2,015	93	25	29	711-9094 (711-9097)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토평동)	임태봉	'99. 7.27	3,356	2,037.91	464	31	48	732-2353 (732-2355)	○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8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용인원 (이용인원)		종사자 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이용 인원)	정원	현원		
주보시	18개소 (제주시13, 서귀포5)					312	266	101	73		
유진주간보호센터	제주시 해안마을2길 7-10 (해안동)	최은미	'00. 6.1	666	130.2	20	21	6	5	747-1371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주간보호시설	제주시 광양4길 30-1 (이도일동)	양예홍	'02. 3.26	4,102	140	15	14	6	4	710-9911	X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용인원 (이용인원)		종사자 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이용 인원)	정원	현원		
한울주간 활동센터	제주시 지석4길 7 (삼양이동)	문상익	'02. 12.26		186	20	17	6	5	723-1791	X
서부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14	안원식	'99. 4.23	940	171.3	20	17	9	5	796-8161	O
제주가톨릭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제주시 기와5길 87 (화북이동)	김정숙	'10. 11.2		255	20	19	6	5	724-0999	X
창암교육 활동센터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566-4	박영재	'08. 06.19	임대	138	15	17	6	6	748-5544	O
청어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제주시 계명길50 (외도일동)	좌용동	'08. 07.1	661	148	15	10	6	3	712-1633	O
제주시각장애 주간 보호시설	제주시 아봉로433 (월평동)	양예홍	'07. 03.2	3,838	61	15	20	6	5	721-4440	X
신장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제주시 고마로31 (일도이동)	이두범	'09. 2.23	임대	147	15	15	6	4	751-1197	O
행복한 센터	제주시 수덕로 81, 4층 (노형동)	김영미	'11. 9.15		185.2	15	12	6	4	702-2321	O
한솔	제주시 노연로 119(연동)	윤은희	'14. 4.15	임대	275	20	17	6	3	070-4115 -3305	X
희망나래 활동센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로 226-58	박인향	'15. 11.19	840	188	20	12	6	2	752-5151	X
한라 주간 보호센터	제주시 아연로 113-22(오 라2동)	이철우	'16. 9.1	815	191	20	12	6	3	744-0653	O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용인원 (이용인원)		종사자 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이용 인원)	정원	현원		
도시적장애인 복지협회 서귀포시 지부부설 주거간 보호시설	서귀포시 동홍로 12번길 3 (서귀동)	전재순	'97. 8.20	658	133	18	18	5	5	732-3306	X
서귀포 시각장애인 주거간 보호시설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35(중문동)	이승기	'09. 3.6	963	268.4 1	18	18	5	5	738-1111	O
행복나눔	서귀포시 동홍동로 26번길 26(동홍동)	백인협	'09. 12.9	310. 6	166	18	15	5	5	733-6799	X
희망모아 주거간 활동센터	서귀포시 1100로34, 103동102호	강은정	'16. 9.20		82.98	10	4	2	1	739-3085	O
청각·언어 장애인 주거간 보호시설 돌담·정남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94 (호근동)	민태희	'16. 12.9	임대	90.26	18	8	3	3	733-6810	O

3 기타 이용시설 4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		수용 인원 (이용 인원)		종사자 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기 타	4개소 (제주시 4)						184	35	35		
수 통 역 센 터	제주시 무근성 7길 17 3층 (삼도이동)	박춘근	'97. 7.26		65		122	13	13	743-3922 757-2120	X
장 애 인 생 활 이 동 지 원 센 터	제주시 광양4길32 (이도일동)	양예홍	'95. 3.1		116		27	13	13	751-1135	X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		수용 인원 (이용 인원)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제주도 문화정보 도서관	제주시 동광로 37, 6층 (이도일동, 아남빌딩)	김세희	'00. 3.28	임대	232.69		16	5	5	723-7777	○
장애 자원센터	제주시 광양4길 32, 3층 (이도일동)	문상익	'04. 3.6		99.22		19	3	3	752-3306	○

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		수용 인원 (이용인 원)		종사자 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의재 의료 재활 시설	1 개소 (제주시1)						120	10	24		
제 촌 의 주 강 연	제주시 월구1길 73 (오라삼동)	최종철	'94. 4.29	2,709	2,784		120	10	24	745-8800	X
길 정 건 센 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 88-17									796-7003	○
제 정 재 활 센 터	제주시 동광로1길 11									742-9500	○

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		수용 인원 (이용 인원)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 개소 (제주시1)							4	4		
제주특별 자치도장 애인생산 품 판매시설	제주시 임항로 294 (건입동)	양창오	'96. 3. 8	임차	119.2			4	4	702-1459	○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용 인원 (이용 인원)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직 재 시 업 활 설	9 개소 (제주시6, 서귀포3)					36 0	35 3	100	88		
춘 장 애 인 근 로 센 터	제주시 516로 3120-1 (아라1동)	이규봉	'90. 11.24	14,35 3	4,383	50	60	14	14	702-7851	○
일 배 움 터	제주시 기와5길 83 (화북2동)	정춘진	'05. 11.21	3,972	387	40	40	10	9	723-9104	○
혜 정 원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67-5	이민숙	'00. 12.27	5,325	565	30	35	10	8	783-9920	X
한 라 원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47-23	박상현	'04. 3.30	2,184	856	40	30	10	8	799-9225	○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인원용 (이용 인원)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길 직 재 센 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 길 88-17	양은심	'05. 8. 4	1,897	954	40	37	10	8	796-5777	X
엘 린	제주시 은남1길 4 (연동)	한봉금	'12. 3.30	431.1	1,628	50	50	14	13	752-2299	X
어울림터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6 (토평동)	조인석	'02. 7. 3	3,163	610	30	30	10	8	732-0295	O
에코소랑	서귀포시 토평서로 44번길 143	박경숙	'09. 12.24	4,191	1,167	40	40	12	11	732-2288	O
평화의 마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 로 2195-12	이귀경	'01. 9.1	2,966	819	40	31	10	9	794-6277	X

7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지정일	연락처	제공 인력 수 (12월)	비고	비고 (조사 응답 기관)
계	9개소 (제주시 5, 서귀포시 4)						
제 주 장 애 인 자 립 생 활 센 터	제주시 천수동로 30 (일도이동)	고현수	'11. 10.5	751-9100	170	활동 보조	O
힘 찬 노 인 복 지 센 터	제주시 진동로 21(화북일동)	박용언	'11. 10.5	721-0691	4	방문 목욕	X
참 장 기 요 양 기 관	제주시 서광로 209(삼도일동)	이상범	'11. 10.5	723-1324	2	방문 간호	X
서 귀 포 시 장 애 인 자 립 생 활 센 터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62-3(서흥동)	김성완	'11. 10.5	762-1700	37	활동 보조	O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지정일	연락처	제인공역수 (12월)	비고	비고 (조사응답기관)
효원재가장 장기요양기관	서귀포시 효돈로 199 (하효동)	오영자	'14. 3.27	767-3373	2	방문교육	X
효방문요양기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704, 2층(서효동)	이현옥	'11. 10.5	767-8200	1	방문교육	X

8 기타복지시설 9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		수용인원 (이용인원)		종사자 수		연락처 (팩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1일이용인원)	정원	현원		
계	9개소 (제주시7, 서귀포2)					130	232	74	74		
제장태 주인조 해공 서비 지원 센터	제주시 아봉로 433(월평 동)	양예홍	'12. 4.26		232		6	5	5	726-9669 726-9559	○
서귀포시 장애인 자생 센터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62-3 (서효동)	김성완	'07. 03.14	임 대	430		20	5	5	762-1700 762-1701	○
서귀포시 장애 인 주 거 대 여 센터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62-3 (서효동)	김성완	'13. 11.15				5	3	3	762-1703 762-1701	○
우리 아 이 발 달 지 원 센터	제주시 달마루길 203, 2층 (노형동)	송문심	'14. 12. 08		25	80	30	2	2	748-8113	○
언어심리 학습클리닉 마음더하기	제주시 중앙로 291, 4층 (이도이동)	고매향	'15. 11. 25		211	50	0	5	5	752-5055	X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 규모 (㎡)		수용인 원(이 용인원)		종사자 수		연락처 (팩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1일 이용 현원)	정원	현원		
제 장 애 화 예 주 인 주 선	제주시 신산로 82									751-8095	○
제 트 아 아 별 아	제주시									010-2393 -9655	X
제 베 데 스 애 동	제주시 아연로 113-22									742-0653	○
다 발 장 자 애 원 선	제주시 간월동로 14-1									758-0877	○

9 장애인 거주시설 12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 규모 (㎡)		수용인 원(이 용인원)		종사자 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장애인 거주시설	12개소 (제주시8, 서귀포시4)					479	451	349	329		
송 죽 원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47-23	김금자	'01. 3.10	14,991	1,169	50	42	35	26	799-8555	X
제 장 애 양 주 인 원	제주시 첨단로 202 (영평동)	정석왕	'02. 3.18	2,091	1,093	40	38	31	31	702-2321	○
제 애 덕 의 주 집	제주시 기와5길 87 (화북이동)	현성훈	'03. 3.14	3,948	1,926	50	52	35	35	724-8101	○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일 개원일	시설규모 (㎡)		수용인원 (이용인원)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응답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가롤로의 집	제주시 기와5길87 (화북이동)	서영숙	'05. 1.19	9,270	826	36	35	27	27	723-0245	○
창재활 안원	제주시 애월읍 산록서로 482-34	정은경	'05. 3.29	66,579	9,091	50	48	36	36	799-1555	○
사랑의 집	제주시 기와5길 115 (화북이동)	김호성	'06. 2. 2	1,847	1,595	40	40	30	30	725-9931	○
벤 엘	제주시 한림읍 명월남길 58-1	임주리	'06. 3.31	4,217	1,552	50	40	30	25	796-6086	○
케 하 우 스	제주시 첨단로 202 (영평동)	홍영진	'07. 3.28	917	902	30	28	27	27	702-9423	○
서귀포 작은예수 의 집	서귀포시 속골로 24 (호근동)	윤주영	'05. 7.29	610	354	12	12	10	10	739-3633	○
정재 활 혜 원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1 (토평동)	이흥기	'05. 11.29	7,190	1,361	51	51	34	34	732-5004	○
자 광 원	서귀포시 이어도로 343번길 101 (대포동)	김정국	'09. 12.23	3,888	1,373	40	38	31	27	738-5055	○
성 자 현	서귀포시 남원읍 남위남성로 111	진유신	14. 1.13	1,626	1,465	30	27	23	21	764-7977	○

1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4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용 (이용인 인원)		종사자 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단기 거주시설	4개소 (제주시4)					54	48	23	18		
유진 단기 거주시설	제주시 해안마을2길 7-10 (해안동)	최은미	'04. 5.11	666	130. 2	10	10	6	5	747-1371	O
마리아의집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77	허정자	'00. 5.26	660	175	20	14	6	5	713-8877	X
하나원	제주시 조천읍 와선로 4-4	김화옥	'09. 11. 5	1,50 1	214. 4	15	15	6	6	783-6662	X
믿음의 집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 190-7	윤기예	'05. 3.21	888	259	9	9	5	2	796-7312	O

11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14개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용 (이용인 인원)		종사자 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공동 생활가정	14개소 (제주시8, 서귀포6)					64	59	15	14		
다 공 동 생 활 가 정	제주시 아란4길89-4 승준하이빌라 나 502	문상익	'99. 3.5	임대	57.9	5	5	1	1	070-8900 -3308 753-3358	X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용 인원 (이용인 원)		종사자 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또바기 공동생활 가	제주시 오등1길 140, B/205 (오등동, 영도그린빌라)	문상익	'98. 3.18	임대	70	5	6	1	1	757-3359	X
작은 예수의 집	제주시 비룡길 23 (용담일동)	조효례	'93. 3.21	268	207	9	8	2	2	758-6260	X
서장애 인 공동생활 가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14	선춘이	'99. 5.27	940	107. 9	5	5	1	1	796-8163	X
남성 중 자립생활 터	제주시 금산1길4, 101호 (화북일동)	고현수	'11. 4.6	임대	111. 27	4	3	1	1	751-9100	X
여성 중 자립생활 터	제주시 천수동로 16-1, 101호 (일도이동)	고현수	'11. 4.6	임대	48. 96	4	1			751-9100	X
로사의 집	제주시 조천읍 조와로7길 9-2	고하라	'11. 4.8		66. 11	4	2	1	1	782-9686	X
사랑터 울	제주시 천수로6길 2-9,2층 (이도2동 407-4)	문상익	'14. 3.26		81.9	4	4	1	0	726-3305	X
공동 생활가 정 우리 집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남시영	'04. 4.6	2,966	208	4	4	1	1	794-6277	X
공동 생활가 정 행복이 네	서귀포시 비행장로 35번길 13-1	남시영	'09. 10.23	임대	86	4	4	1	1	794-6277	X
공동 생활가 정 동지 (여)	서귀포시 지세못로29 나동106호 (하원동 서진아파트)	전재순	'09. 10.22	임대	50	4	3	1	1	732-9397	X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용 인원 (이용인 원)		종사자 수		연락처 (사무실)	비고 (조사 응답 기관)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공생 활가 남자 공동 생활 정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66 103동301호 (삼주연립)	전재순	'12. 2.28	임대	55	4	4	1	1	739-0760	X
반석이네집	서귀포시 홍중로 75 301호 (서홍동, 세림빌라)	이흥기	'13. 9.16	3,313	55	4	4	1	1	732-5004	X
살레시오의 집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63	노명수	'92. 3.8	750	165	4	6	2	2	764-4419	X

12 장애인단체 (17개단체)

단체명 (설립일시)	대표자	사무국원	소재지	회원수	직원수	연락처	비고 (조사 응답 기관)
계		15개 단체	11,541명		45명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1996.11.20)	부형중	임상배 사무처장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10개 단체	3	753-3225	X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1987. 2.15)	박춘근	부현철 사무국장	제주시 무근성7길 17 (삼도이동)	1,285	3	743-3922	O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1984. 2.15)	부형중	배태환 사무처장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3,500	12	756-4980	O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 협회 (1989.10.11)	문상익	김남고 사무국장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517	1	752-3306	O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제주도지부 (1994.12.19)	양예홍	좌미라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635	1	751-1135	X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단체명 (설립일시)	대표자	사무국원	소재지	회원수	직원수	연락처	비고 (조사 응답 기관)
(사)한국신장장애인 협회 제주협회 (2000. 4.27)	이두범	김명숙	제주시 고마로 106 (일도이동) 청우빌딩 5층	380	1	724-1197	○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2000. 7. 9)	박영재	강경균 사무국장	제주시 청사로 75 (4층)	554 가정	11	725-1370	○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 P I (1986. 8.15)	양용석	김정훈 사무처장	제주시 광양4길 32 (이도일동)	1,295	2	757-9897	○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 (2002. 7.19)	고현수	고은호 사무처장	제주시 천수동로 30 201호 (일도2동)	651	3	751-8096	○
(사)한국척수 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2010. 10.15)	양문숙	박재석 사무국장	제주시 도련2길 12 (도련일동)	157	2	070-744 -4984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2008.2.12)	고관용	고경희 사무국장	제주시 516로 3120 (아라1동)	660	1	702-0295	X
(사)한국자폐인 사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 부 (2011. 2.11)	김부찬	이 승	제주시 중앙로 245, 5층 (이도이동)	116	1	751-7588	○
(사)제주신체 장애인복지회 (2011. 3. 25)	한정효	강경미 사무국장	제주시 삼성로 28 (이도1동)	1,230	1	721-0060	X
(사)한국발달 장애인협회 (2014. 3. 11)	문성탁	김덕홍	제주시 간월동로 14-1 (아라2동)	316	2	758-0877	○
(사)제주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2014. 3.22)	천선자	김병찬 사무국장	제주시 관덕로8길 13 (이도일동)	245	1	725-1911	○
(사)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1974. 6월)	김두홍	고명효	제주시 서사로 149-1 (삼도1동2층)	123	4	723-0505	○
서귀포장애인부모회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37			733-0568	○

【부록 3】 개인 및 기관 실태조사 영향요인 및 효율성 분석결과(요약)

1. 개인 단위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1)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설계

○ 변수의 선정

- 개인응답 469명을 통해 수집된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수행함
- 독립변수로는 과거에 이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 2018년 현재 이용 프로그램 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을 설정함
- 통제변수는 개인적 특성인 응답자의 성별, 결혼여부, 연령대, 거주지역(제주시/서귀포시), 월소득 수준, 생활수준을 설정함
- 이 중에서 장애유형, 응답자 성별, 결혼여부, 거주지역, 생활수준은 가변수(dummy)로 변환하여 분석모형에 진입함
- 보다 정확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그밖에 변수변환기법이나 가중치 부여는 실시하지 않음

2)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 수강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분석 결과

구 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p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4.076	.376		.000		
과거참여프로그램수	-.021	.026	-.075	.430	.373	2.680
현재참여프로그램수	.004	.031	.012	.897	.370	2.700
성별#1	.193	.126	.099	.125	.821	1.218
결혼여부#2	.145	.167	.074	.386	.467	2.140
연령대	.023	.062	.031	.716	.453	2.209
제주시거주#3	-.710	.238	-.191	.003	.829	1.207
장애등급	.086	.063	.087	.170	.850	1.176
월소득수준	-.047	.039	-.077	.230	.817	1.224
장애유형_지체#4	.139	.204	.060	.496	.430	2.327
장애유형_시각#4	.860	.262	.246	.001	.600	1.667
장애유형_청각#4	.271	.238	.086	.256	.591	1.691
장애유형_언어#4	.869	.693	.076	.211	.909	1.101
장애유형_지적#4	.406	.233	.140	.082	.527	1.899
장애유형_뇌병변#4	.126	.211	.053	.551	.420	2.380
장애유형_자폐#4	.705	.285	.180	.014	.634	1.577
생활_기초#5	-.387	.154	-.160	.012	.839	1.192
생활_차상위#5	-.144	.227	-.039	.527	.869	1.150

종속변수: 수강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문10-9)

R2= .157, Adjusted R2= .099, F= 2.731, 유의확률=.000

#:모조변수임. 기준 변수: #1(여성), #2(미혼), #3(서귀포거주),

#4(정신장애 및 기타), #5(해당없음)

○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종합 분석결과

구 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1.469	.988		.138		
과거참여프로그램수	.474	.093	.274	.000	.306	3.263
현재참여프로그램수	.922	.111	.448	.000	.307	3.261
성별#1	-.711	.339	-.066	.036	.895	1.117
결혼여부#2	-.468	.454	-.044	.303	.496	2.015
연령대	-.015	.168	-.004	.929	.465	2.151
제주시거주#3	1.021	.563	.056	.070	.921	1.085
장애등급	.124	.177	.022	.483	.874	1.144
월소득수준	-.266	.103	-.084	.010	.827	1.209
장애유형_지체#4	1.084	.517	.083	.037	.569	1.757
장애유형_시각#4	.732	.727	.036	.315	.712	1.405
장애유형_청각#4	.438	.574	.028	.446	.661	1.514
장애유형_언어#4	-1.344	1.601	-.026	.402	.935	1.069
장애유형_지적#4	.576	.580	.039	.321	.574	1.743
장애유형_뇌병변#4	2.228	.601	.149	.000	.552	1.811
장애유형_자폐#4	.286	.817	.012	.726	.751	1.332
생활_기초#5	-.671	.421	-.053	.112	.797	1.255
생활_차상위#5	-1.918	.638	-.094	.003	.902	1.109

종속변수: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종합(문4)

R2= .603, Adjusted R2= .588, F= 40.008, 유의확률=.000

#:모조변수임. 기준 변수: #1(여성), #2(미혼), #3(서귀포거주),
#4(정신장애 및 기타), #5(해당없음)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변화 분석결과

구 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p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3.880	.238		.000		
과거참여프로그램수	.026	.017	.145	.123	.372	2.685
현재참여프로그램수	.005	.020	.023	.803	.369	2.708
성별#1	.124	.080	.097	.122	.827	1.209
결혼여부#2	.011	.106	.008	.921	.474	2.112
연령대	.021	.039	.045	.593	.462	2.163
제주시거주#3	-.475	.151	-.198	.002	.825	1.212
장애등급	.036	.040	.056	.364	.848	1.179
월소득수준	-.057	.025	-.145	.023	.821	1.218
장애유형_지체#4	.215	.130	.144	.101	.426	2.345
장애유형_시각#4	.401	.167	.178	.017	.589	1.698
장애유형_청각#4	.249	.151	.123	.101	.586	1.707
장애유형_언어#4	1.270	.438	.174	.004	.907	1.102
장애유형_지적#4	.266	.149	.140	.075	.530	1.888
장애유형_뇌병변#4	-.063	.135	-.041	.643	.419	2.384
장애유형_자폐#4	.251	.183	.097	.173	.648	1.543
생활_기초#5	-.397	.098	-.254	.000	.835	1.198
생활_차상위#5	-.048	.150	-.020	.750	.871	1.148

종속변수: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의한 긍정적 변화(문11)
R2= .205, Adjusted R2= .150, F= 3.700, 유의확률=.000
#:모조변수임. 기준 변수: #1(여성), #2(미혼), #3(서귀포거주),
#4(정신장애 및 기타), #5(해당없음)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구 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p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β		공차	VIF
(상수)	.833	.268		.002		
접근성	.022	.058	.024	.705	.537	1.861
시설이용편리성	.199	.074	.195	.008	.407	2.456
직원친절	-.013	.068	-.014	.853	.403	2.484
비용지원	.067	.060	.080	.264	.421	2.378
수강료적절	.026	.065	.029	.684	.411	2.431
강의실력	.468	.069	.454	.000	.479	2.089
장애유형_지체#1	.073	.152	.032	.633	.471	2.124
장애유형_시각#1	.172	.207	.049	.406	.603	1.658
장애유형_청각#1	.092	.185	.029	.619	.607	1.648
장애유형_언어#1	.366	.528	.033	.489	.942	1.062
장애유형_지적#1	.082	.175	.029	.639	.557	1.794
장애유형_뇌병변#1	.137	.158	.059	.385	.457	2.186
장애유형_자폐#1	.271	.212	.073	.203	.657	1.522
생활_기초#2	-.325	.114	-.138	.005	.905	1.105
생활_차상위#2	-.033	.170	-.009	.847	.928	1.077

종속변수: 수강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문10-9)

R²= .474, Adjusted R²= .442, F= 14.872, 유의확률=.000

#:모조변수임. 기준 변수: #1(정신장애 및 기타), #2(해당없음)

2. 기관(시설)별 상대적 효율성 분석

1) 분석모형 설계

○ 분석모형 설계

- DEA 분석 모형 설계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²²⁾
- 첫째는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s to Scale)을 어떻게 가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성(Constant Returns to Scale)과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성(Variable Returns to Scale)의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둘째는 효율성 프론티어를 직선으로 할 것인지 곡선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임
- 마지막으로 모형이 투입지향적인지 산출지향적인지의 여부임
- 이상의 논의에서 본 연구는 기술적 효율성(CCR-CRS)만을 판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DEA 분석에 있어서 주로 활용되는 예산 관련 자료가 수집되지 못했기 때문임
- 이에 규모의 효율성을 측정, 비교/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편 효율성 프론티어는 직선으로 가정하는데, 이는 분석 및 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함임
-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이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인 한정된 자원, 동일한 서비스의 질 유지, 지역 내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투입 지향적 모형을 활용함

○ 변수의 선정

- 설문에 응답한 총 61개 기관 중에서 DEA 분석이 가능한 응답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상대적 효율성 분석은 제주지역 내에 위치한 37개 기관으로 한정함²³⁾
- 투입변수는 직원 수, 강의실 개수, 총 수용규모이며 산출변수는 개설된 평생 학습 프로그램 수, 수강인원임

22) 조임곤(2001),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청소조직의 효율성 분석,” 「도시행정학회」, 14(2), 한국도시행정학회.

23) DEA분석은 산출/투입이라는 분수형태의 함수관계를 통해 그 값을 산출하므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중 하나라도 0(zero value)를 가지는 DMU는 분석에서 제외됨.

2) 상대적 효율성 분석결과

DMU	기관명	효율성지수	벤치마킹 대상 DMU
9	-	100	9
32	-	100	32
26	-	73.74	9
4	-	62.14	9
56	-	61.45	9
11	-	61.45	9
38	-	60.46	9
37	-	51.06	32
47	-	49.16	9
28	-	45.4	9
39	-	42.55	32
2	-	42.53	9
15	-	33.68	9
40	-	32.32	9
3	-	31.23	9
46	-	22.04	9
54	-	21.62	9
8	-	21.28	32
25	-	20.45	9
5	-	19.69	9
24	-	18.92	9
16	-	16.79	9
50	-	16.25	9
59	-	16.22	9
18	-	15.91	9
52	-	15.36	9
10	-	15.36	9
19	-	14.99	9
58	-	13.67	9
30	-	12.68	9
49	-	8.58	9
44	-	8.18	9
34	-	7.95	9
45	-	4.88	9
35	-	4.33	9
60	-	3.99	32
57	-	3.42	9

【부록 4】 제주지역 장애인 기관(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례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기간	인원	비 고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	켈트교실 '누비라'	5월~6월	10명	문화예술
	꿈꾸는 소리 기타교실2	5월~11월	10명	문화예술
	여성장애인 성스러운 날개달기2	6월~10월	30명	인문교양
	인권의식 향상 및 공감교육2	7월~11월	30~40명	시민참여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축구교실	10월	15명	문화예술
	기초볼링	11월	5명	문화예술
	오름등반	7~8월	15명	문화예술
	식생활과 건강	9월	10명	인문교양
다솜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생활자립교육	종일제, 주5회	14명	자립생활
	연극과 미술	주1회	5명	문화예술
	줄넘기, 배드민턴	매주 토요일	10명	문화예술
	엑슬라이더	매주 일요일	20명	문화예술
자폐인사랑협회	미술교실	4월~12월	20명	문화예술
	방송댄스교실	4월~12월	15명	문화예술
	수영교실	4월~12월	15명	문화예술
	난타	6월~12월	17명	문화예술
제주장애인 요양원	음악교실	3월~12월	청소년8명, 성인10명	문화예술
	미술교실	3월~12월	청소년8명, 성인10명	문화예술
	쿠킹클래스	3월~12월	청소년8명, 성인10명	문화예술
	공예토탈	3월~12월	청소년8명, 성인10명	문화예술
	DIY가구교실	3월~12월	청소년8명, 성인10명	문화예술
척수장애인협회 제주지부	냅킨아트공예(초급)	4월~5월	중증장애인 14명	문화예술
	냅킨아트공예(중급)	6월~9월	중증장애인 12명	문화예술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기간	인원	비 고
일배움터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4월~12월, 연45회	20명	문화예술
	원예체험교실	분기별 1회성	5~15명	문화예술
	도자기체험교실	분기별 1회성	5~10명	문화예술
길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	상반기 3개월	10명	자립생활
	좋은대인관계교육	상반기 3개월	10명	자립생활
	약물증상관리교육	상반기 6개월	10명	자립생활
	사회적응훈련	연중상시, 주1회	10명	자립생활
	운동요법	연중상시	10명	문화예술
제주시각장애인 복지관	점자단말기교육	연중상시, 주2~3회	10명	자립생활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실	연중상시, 주2~3회	10명	자립생활
	캘리그래피	3월~12월, 연20회	10명	문화예술
	플로리스트	3월~12월, 연20회	10명	문화예술
지적장애인자립 지원센터	생활요리교육	6월~, 연10회	11명	자립생활
	자립지원세미나	연1회	50명 (보호자, 사회복지사)	시민참여
	한글교실	4월~12월, 연10회	10명	기초문해
	난타	5월~12월, 연23회	12명	문화예술
	공예	5월~12월, 연20회	12~15명	문화예술
	자조모임(관광지체험)	연20회	15명	문화예술
에코소랑	성폭력 예방교육	연5~6회	32명~42명	시민참여
	인권교육	연5~6회	32명~42명	시민참여
	기프트데이 환경교육	연5~6회	32명~42명	자립생활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기간	인원	비 고
유진주간보호센터	인권·성교육	연4회	20명	시민참여
	재난 교육	매월1회	20명	시민참여
	수영, 라인댄스	3월~11월, 주1회	10명	문화예술
	난타, 바리스타	3월~11월, 주1회	10명	문화예술
	사진동아리 (문예재단)	3월~11월, 주1회	12명	문화예술
	세상속으로 (탐방교육)	3월~11월, 주1회	20명	자립생활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적응훈련	연중상시	10명 내외	직업능력
	'걸으멍 놀멍'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7월~9월	20~30명	시민참여
	재가장애인 대상 '제주를 누리다'	3월~12월	10~20명	문화예술
	장애아동청소년 생활체육교실	3월~11월 여름, 겨울방학	30명 내외	문화예술
	성인장애인 뉴스교실	4월~11월	10~15명	문화예술
	여성장애인 대상 녹색생활실천가 심화과정	4월~5월	10명 내외	시민참여
	어울림 카페테리아 운영 및 직업교육 (카페 하모니)	연중상시	10명 내외	직업능력
	성인장애인 서예, 캘리그래피	연중	10~15명	문화예술
한라주간보호 시설	원예프로그램	3월~12월	20명	문화예술
	특수 체육교실	3월~12월	20명	문화예술
서귀포시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	3월~12월, 주1회	12명	문화예술
	직업재활프로그램	5월~12월, 주5회	6~7명	직업능력
춘강장애인근 로센터	염색교실	4월~5월, 8월~9월 주2회	10명	문화예술
	퀼트교실	6월~7월, 주1회	10명	문화예술

【부록 5】 관련 법령 발취 내용

장애인복지법(일부 발취)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발췌)

[시행 2018.6.20.] [법률 제15272호, 2017.12.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장 총 칙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17.9.1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교 육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7.12.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2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시설 :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나.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 특수교육법) (일부 발췌)

[시행 2018. 5. 22] [법률 제15367호, 2018. 2. 21, 일부개정]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 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발달장애인법) (일부 발췌)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가.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 발췌)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160호, 2016. 5. 29,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중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 5. 29.>]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12. 3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6. 6. 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31호, 2016. 6. 2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여기관 및 연구진]

총괄관리	이 안 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연구책임	홍 정 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략기획부장
연구자문 (가나다 순)	김 민 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교수
	김 주 영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회장
	박 해 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센터 연구사
	양 복 만	제주영지학교 교감
	이 정 미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부연구위원
	양 진 철	미래리서치 소장
	윤 지 수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전략기획팀장
	최 현 목	신라대학교 대학원 연구교수(공공정책)
	홍 숙 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교육지원부장
제주특별 자치도	양 원 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장
	이 성 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담당 사무관
	현 성 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담당 주무관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국 윤 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특수교육과 장학사
연구보조	김 동 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략기획부

2018년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발행인 이 안 열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2동) 2층

Tel) 064-726-9850 Fax) 064-726-7439

Home Page : www.jiles.or.kr
